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748-10

www.mogef.go.kr

2022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여성가족부

차 례

1 Chapter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제1절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3

1. 기본계획의 의의 ····· 3
2. 주요 내용 ····· 4

제2절 2022년도 양성평등정책 주요 성과 ····· 11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11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12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13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14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16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19

제3절 법령의 변화 ····· 21

1.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21
2.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 23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 24
4.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25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26
6.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27
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 29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30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31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32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35

1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36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37
1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 38
15. 「교육기본법」 개정 … 39

2 Chapter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제1절 현황 및 정책협력 체계 … 43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 43
2.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 53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60

제2절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 61

1. 성별영향평가 연혁 및 추진체계 … 61
2.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 63
3.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 66

제3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 70

1. 여성단체 협력·지원 … 70
2.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 71

제4절 양성평등기금 운용 … 81

1. 기금 조성 및 자산 운용 … 81
2. 사업추진 현황 … 82
3. 2022년 기금사업의 특징 … 84

제5절 양성평등 문화·의식 확산 … 85

1. 양성평등 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 85
2. 양성평등주간 운영 … 93
3.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 … 95

제6절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97
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성과 ····· 97
2. 여성공무원 현황 ····· 100
3.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 108
4.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 111

3 Chapter
일·생활 균형 확산

제1절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 115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 115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 118
3.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 123

제2절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 127
1. 모부성보호 제도 강화 ····· 127
2.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132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137

4 Chapter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제1절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 141
1.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경과 ····· 141
2. 주요 내용 ····· 142
3. 2022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 143

제2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및 경력개발 지원 ··· 146
1.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146

제3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 148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148
2.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152

제4절 분야별 여성의 창업·취업영역 및 여성기업 활동 확대 …… 156
1.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 …… 156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160
3. 여성농어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 164

제5절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171
1. 일자리에서 성차별 관행 개선 …… 171
2.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173

5 Chapter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1절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 177
1.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활성화 …… 177
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 187
3.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협의체 운영 …… 201

제2절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활동 강화 …… 203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 203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 신고의무 …… 204
3. 청소년 성보호 예방 활동 …… 207

제3절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213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 …… 213
2. 성매매 예방 및 국민 의식 개선 …… 215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 217

제4절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실효성 강화 및 인식제고 … 222
1. 여성·아동 폭력예방 내실화 …… 222
2.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교육 …… 224
3.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 226

Chapter 6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

제1절 결혼이민자 지원 ····· 231

1.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 231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 239

제2절 여성장애인 지원 ····· 242

1.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242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243

제3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245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 ····· 245
2. 생활안정 지원 강화 ····· 246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정책 만족도 ····· 249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등 수행 ····· 250

제4절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 255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립 지원 ····· 255
2. 한부모 자립 지원 ····· 259
3.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 262
4. 북한이탈여성 지원 ····· 264

제5절 여성의 건강·안전 지원 강화 ····· 267

1.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 267
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270

표 차 례

표 1-②-1 공공부문별 여성 대표성 추진실적(2021~2022년) ····· 13

표 2-①-1 성불평등지수(GII)의 영역과 지표 ····· 44
표 2-①-2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 45
표 2-①-3 성개발지수(GDI) 영역과 지표 ····· 46
표 2-①-4 우리나라의 성개발지수(GDI) 현황 ····· 47
표 2-①-5 성격차지수(GGI) 영역과 지표 ····· 48
표 2-①-6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현황 ····· 49
표 2-①-7 OECD 국가 성격차지수 현황 ····· 50
표 2-①-8 국가성평등지수 부문별 지표 현황 ····· 51
표 2-①-9 2022년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주요 추진실적 ····· 55
표 2-①-10 2022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 60

표 2-②-1 성별영향평가 연도별 추진 현황 ····· 63
표 2-②-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세부 현황 ····· 63
표 2-②-3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주요 내용(2023.8월 기준, 2023년 중 지속 권고 예정) ····· 64
표 2-②-4 2022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및 예결산 교육 기관별 실적 ····· 65
표 2-②-5 2022년 성인지 교육 실시 현황 ····· 65
표 2-②-6 최근 4년간 성인지 예산 및 집행현황 ····· 68
표 2-②-7 2023년 국가 성인지 예산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 69

표 2-③-1 여성가족부-유엔여성기구 간 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 ····· 76

표 2-④-1 양성평등기금 조성현황 ····· 81
표 2-④-2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운용수익률 ····· 82
표 2-④-3 2022년 양성평등기금 주요사업실적 ····· 83
표 2-④-4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당기순이익 현황 ····· 84

표 2-⑤-1 2022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원 현황 ····· 86
표 2-⑤-2 2022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 86
표 2-⑤-3 2022년 교육별 집합교육사업 추진실적 ····· 88
표 2-⑤-4 역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 94
표 2-⑤-5 2022년 양성평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 94

표 2-⑥-1 공공부문별 여성 대표성 추진실적(2021~2022년) ····· 97
표 2-⑥-2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 100
표 2-⑥-3 2022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 현황 ····· 101
표 2-⑥-4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 102
표 2-⑥-5 중앙행정기관 여성 고위공무원단 현황 ····· 103
표 2-⑥-6 2022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 103
표 2-⑥-7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 104
표 2-⑥-8 2022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가합격자 현황 ····· 105
표 2-⑥-9 중앙행정기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 106
표 2-⑥-10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 107
표 2-⑥-11 여성교장·교감 현황 ····· 107
표 2-⑥-12 4년제 대학/대학원 교수 성별 구성비 변화 ····· 108
표 2-⑥-13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 110
표 2-⑥-14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 110
표 2-⑥-15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 111
표 2-⑥-16 여성임원 증감현황 ····· 112

표 3-①-1 2022년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 ····· 115
표 3-①-2 연도별 어린이집 지원예산 현황 ····· 116
표 3-①-3 보육료 지원대상 추이 ····· 117
표 3-①-4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시간 당 10,550원) ····· 122
표 3-①-5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현황 ····· 123
표 3-①-6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기준 ····· 124
표 3-①-7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 125

표 3-②-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 128
표 3-②-2 육아휴직제도 연도별 개정사항 ····· 129
표 3-②-3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 131
표 3-②-4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지급현황 ····· 132

표차례 | CONTENTS

표 3-②-5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개선 현황 ····· 134
표 3-②-6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개선 현황 ····· 135
표 3-②-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 136
표 3-②-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136

표 4-②-1 주요 여성 고용지표 현황 ····· 146
표 4-②-2 OECD 주요 회원국의 여성 고용지표 현황('21년) ····· 147

표 4-③-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 149
표 4-③-2 새일센터 연도별 운영실적 ····· 151
표 4-③-3 2022년 새일센터 취업자의 직종형태별 현황 ····· 151
표 4-③-4 2022년 새일센터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현황 ····· 151
표 4-③-5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종류 ····· 153
표 4-③-6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 154
표 4-③-7 새일여성인턴 사업 실적 ····· 154

표 4-④-1 여성기업 현황 ····· 156
표 4-④-2 여성창업 현황 ····· 157
표 4-④-3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 158
표 4-④-4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 158
표 4-④-5 과학기술 R&D 분야의 성별 연구원 수 추이 ····· 160
표 4-④-6 2021년도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현황(1) ····· 161
표 4-④-7 2021년도 연구수행주체별 여성연구원 현황(2) ····· 161
표 4-④-8 2021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정규직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현황 ····· 162
표 4-④-9 연도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165
표 4-④-10 연도별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실적 ····· 166
표 4-④-11 연도별 결혼이민여성 대상 주요교육과정 및 참여인원 ····· 167

표 4-⑤-1 202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적용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비율 ···· 172
표 4-⑤-2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 173
표 4-⑤-3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 174

표 5-①-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 180
표 5-①-2 2016년 성폭력 근절 추진대책 ····· 184
표 5-①-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시설현황 ····· 187
표 5-①-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 188

표 5-①-5 2022년 해바라기센터 운영현황 ····· 189
표 5-①-6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전체 피해자) ····· 190
표 5-①-7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이용현황 ····· 191
표 5-①-8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지원 실적 ····· 192
표 5-①-9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 192
표 5-①-10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 193
표 5-①-11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 현황 ····· 193
표 5-①-12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 194
표 5-①-13 주거지원시설 운영 현황 ····· 196
표 5-①-14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여성가족부) ····· 197
표 5-①-15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법무부) ····· 197
표 5-①-1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98
표 5-①-17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현황 ····· 198
표 5-①-18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 건수 ····· 199
표 5-①-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 ····· 200

표 5-②-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현황 ····· 209

표 5-③-1 연도별 성매매방지법령 주요개정사항 ····· 214
표 5-③-2 2022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 ····· 218
표 5-③-3 2022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 ····· 218
표 5-③-4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218
표 5-③-5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 현황 ····· 218
표 5-③-6 2022년 자활지원센터 설치현황 ····· 219
표 5-③-7 2022년 자활지원센터 운영실적 ····· 219
표 5-③-8 2022년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현황 ····· 221

표 6-①-1 2021년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 232
표 6-①-2 2022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 232
표 6-①-3 2022년 언어권별 통번역 전문인력 현황 ····· 233
표 6-①-4 통번역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 234
표 6-①-5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연도별 상담실적 ····· 237
표 6-①-6 2022년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상담실적 ····· 237
표 6-①-7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38
표 6-①-8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지원 현황 ····· 239

표차례 | CONTENTS

표 6-①-9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지원 현황 ····· 240
표 6-①-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지원 현황 ····· 240
표 6-①-11 이주여성 상담소 상담실적 ····· 241

표 6-②-1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추진실적 ····· 243
표 6-②-2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추진실적 ····· 244

표 6-③-1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 현황 ····· 245
표 6-③-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생존자 현황 ····· 246
표 6-③-3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현황(1인당) ····· 247
표 6-③-4 최근 5년간 간병비 지원 현황(1인당) ····· 248
표 6-③-5 최근 5년간 건강치료 지원 현황(1인당) ····· 248
표 6-③-6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연령별 현황 ····· 250
표 6-③-7 최근 5년간 여성가족부 지원 전반에 대한 만족도 ····· 250

표 6-④-1 이혼 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 ····· 255
표 6-④-2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현황 ····· 256
표 6-④-3 2022년 정부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현황 ····· 256
표 6-④-4 연도별 아동양육비 등 지원 현황 ····· 257
표 6-④-5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259
표 6-④-6 2022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261
표 6-④-7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 263
표 6-④-8 북한이탈여성 연도별 입국 현황 ····· 264
표 6-④-9 연도별 교육 운영 실적 ····· 265
표 6-④-10 연도별 동료상담원 양성 교육 현황 ····· 266

표 6-⑤-1 사업장 규모별 여성근로자 점유율 ····· 267
표 6-⑤-2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23개소) 설치 현황 ····· 268
표 6-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조정 ····· 271

그림차례

그림 2-①-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 52
그림 2-①-2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 53
그림 2-②-1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 62
그림 4-①-1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추진체계 ····· 142
그림 4-③-1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이용 흐름도 ····· 155
그림 5-①-1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 ····· 183
그림 6-①-1 2022년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 231
그림 6-②-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절차 ····· 243
그림 6-③-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 251
그림 6-③-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 ····· 252
그림 6-③-3 2022년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 253
그림 6-③-4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 ····· 254
그림 6-④-1 양육비이행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 ····· 26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HAPTER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제1절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3
1. 기본계획의 의의 3
2. 주요 내용 4

제2절 2022년도 양성평등정책 주요 성과 11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1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2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3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4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6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9

제3절 법령의 변화 21
1.「양성평등기본법」 개정 21
2.「성별영향평가법」 개정 23
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24
4.「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5
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6
6.「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27
7.「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9
8.「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0
9.「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1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32
1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5
12.「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36
1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7
1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38
15.「교육기본법」 개정 39

제 1 절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1. 기본계획의 의의

정부는 제1차(1998~2002년), 제2차(2003~2007년), 제3차(2008~2012년) 및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통해 호주제 폐지, 고용차별 금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여성폭력 방지, 경력단절여성 지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등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15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2015.7.1. 시행)됨에 따라,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정·보완하여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을 수립하였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17년에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이 종료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였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은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분야별 핵심정책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처음 포함하였다.

’22년에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체계

비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목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정책과제

대과제(6개)	중과제(22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나. 관련 부처 및 추진 과제(6대 대과제, 22개 중과제 및 70개 소과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과 제 명	추진기관
1-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1-1-1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가부, 방통위
1-1-2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여가부
1-1-3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 마련	방통위, 인권위, 여가부
1-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1-2-1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교육부, 여가부
1-2-2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교육부
1-2-3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여가부, 교육부
1-2-4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교육부, 여가부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1-3-1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여가부
1-3-2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여가부, 문체부
1-3-3 여성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	여가부
1-3-4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여가부
1-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1-4-1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문체부, 고용부
1-4-2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활성화	여가부
1-4-3 양성평등 교육 제공기관의 확대 및 역량 강화	여가부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과 제 명	추진기관
2-1.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2-1-1 다양한 분야의 여성일자리 확대	과기정통부, 산자부, 교육부, 농식품부, 해수부, 여가부
2-1-2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고용부, 경찰청, 여가부
2-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2-2-1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고용부, 기재부, 여가부
2-2-2 고용 상 성차별 감독 및 구제 강화	고용부, 여가부
2-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2-3-1 성별임금격차 해소	고용부, 여가부
2-3-2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2-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2-4-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고용부, 여가부, 과기정통부
2-4-2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	여가부, 고용부, 기재부, 중소벤처부, 과기정통부
2-4-3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여가부, 중소벤처부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과 제 명	추진기관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1-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여가부
3-1-2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행안부, 인사처, 기재부, 여가부, 각부처
3-1-3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및 처우개선	국방부, 경찰청
3-1-4 교육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교육부
3-2. 민간기업 등 여성 대표성 제고	
3-2-1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여가부, 고용부
3-2-2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여가부, 고용부, 기재부, 금융위
3-2-3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여가부, 관계부처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3-3-1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여가부
3-3-2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여가부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과 제 명	추진기관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4-1-1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여가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4-1-2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	여가부, 고용부, 국토부, 복지부
4-1-3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여가부, 복지부, 고용부
4-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4-2-1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고용부, 기재부
4-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고용부
4-2-3 법정 근로시간 준수	고용부
4-2-4 유연한 근무형태 및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	고용부, 문체부
4-2-5 남성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고용부, 여가부
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4-3-1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여가부
4-3-2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지도 강화	여가부, 고용부
4-3-3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여가부, 고용부
4-3-4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여가부, 교육부

5) 여성 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과 제 명	추진기관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5-1-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인사처
5-1-2 여성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경찰청, 법무부
5-1-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여가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고용부, 경찰청, 지자체
5-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5-2-1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5-2-2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5-2-3 조직 내 여성폭력 대응 강화	국방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5-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5-3-1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업 강화	여가부, 보건부, 경찰청, 법무부
5-3-2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고용부
5-3-3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여가부, 검찰청, 법무부
5-3-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활성화	외교부, 여가부
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5-4-1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여가부,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지자체
5-4-2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식약처
5-4-3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5-4-4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복지부, 여가부, 지자체
5-4-5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복지부, 국토부, 지자체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과 제 명	추진기관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6-1-1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조직적 기반 마련	여가부, 행안부, 각부처, 지자체
6-1-2 정부 부처 양성평등정책 책무성 강화	여가부, 국조실, 각부처
6-1-3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인지적 통계 관리	여가부, 통계청
6-1-4 성인지적 정책 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성 제고	여가부, 기재부, 각부처
6-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6-2-1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여가부, 인사처, 행안부
6-2-2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역량 강화	여가부
6-2-3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관리	여가부
6-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6-3-1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여가부
6-3-2 다각적 협력체계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여가부
6-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6-4-1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활성화	여가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6-4-2 국제협약 이행 내실화 및 협력사업 활성화	외교부, 여가부, 각부처

제 2 절

2022년도 양성평등정책 주요 성과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초·중등 학교 교과용도서의 내용 및 삽화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의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및 지역·마을·전국단위 학교스포츠클럽의 여학생 참여 확대를 장려하였고, 교원·비교원 대상 연수에는 양성평등 역량 향상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대학의 양성평등한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한 각 대학들의 예방교육, 사안처리 및 양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교육분야 전반의 양성평등 인식 향상을 통한 문화 확산 및 공감대 조성에 기여하였다.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양성평등 내용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웹툰, 유튜브 섬네일 등의 뉴미디어에 대한 내용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아울러 언론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시민참여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한편,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 상으로 유포되는 차별·비하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조장, 차별 표현 등의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09년 184개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을 시작해 '22년 718개 과정으로 운영과정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2년에는 농촌사회 양성평등 동영상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을 통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진출률이 낮은 이공계 여성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을 지원하고(52명),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87명)과 채용 박람회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22년 503개 과제)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R&D 여성인력의 경력 유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22년 기준 159개소)하였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재직 여성 대상 고충·노무 상담, 기업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17년 15개소에서 '19년 35개소, '22년 75개소까지 확대하였다.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직, 교직, 군·경찰,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18~'22년)」을 수립('17.11)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주요 분야에서 당초 수립한 목표 대비 최종목표가 상승하였다.

특히 '19년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이 20%를 상회한 데 이어, '22년에는 지방직 과장급이 27.4%까지 증가하는 등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성과가 확산되었다. 한편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의 경우, '21년 역대 최초로 두 자릿수(10.0%)에 진입한 데 이어 '22년에는 11.2%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②-1| 공공부문별 여성 대표성 추진실적(2021~2022년)

(단위 : %, 각연도 12.31일 기준)

부 문	2021년	2022년
고위공무원단	10.0	11.2
본부 과장급(4급 이상)	24.4	26.4
지방 과장급(5급 이상)	24.3	27.4
공공기관 임원	22.5	23.6
공공기관 관리자	27.8	28.8
지방공기업 관리자	11.8	12.9
국립대 교수	18.9	20.2
교장 교감	45.8	46.4
군인 간부	8.2	9.0
일반경찰	14.2	15.1
해양경찰	14.5	16.6
정부위원회	42.4	41.4

민간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22년 기업별 성별균형 컨설팅 지원(40개 기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 내 다양성 제고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고, 공공부문의 여성인재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재풀을 15만 2천여명으로 확충하였다.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2020년 1월, 질병·사고·노령 및 자녀양육을 위한 연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였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2020년 및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원하였다.

지역별 대체인력채용협의체(고용센터, 대체인력뱅크, 새일센터 등)를 운영하고 ’22년 민간 취업지원 전문기관 2개소를 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2년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인원은 5,437명이다.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시행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부문이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22년에는 의무화 대상 800개 기관 중 781개 기관(97.6%)이 인증을 수여받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2년에 찾아가는 전국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233개사 대상으로 5회 개최하였으며 414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2년에는 직장어린이집 43개소를 신규로 확충하였으며 설치비 무상지원, 컨설팅 등 사업장별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였고(’22.5.31.),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개정 '22.6.10., 시행 '22.12.11.)하는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22년 4월 시도제출자료 기준 8,150개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였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아침·저녁·온종일 방과후 과정 돌봄을 통해 지역 내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였다.

아울러 온종일 돌봄 정책('18.4월)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을 매년 700실 확충('22년까지 5년간 3,500실) 중이며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협력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20.12.29)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고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21.12.14)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영양 순회 지원 확대를 통해 급식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수 : ('20) 228개소 → ('21) 234개소 → ('22) 236개소
- 소규모 급식소 지원율 : ('20) 90.1% → ('21) 98.6% → ('22) 100%
- 급식관리 위생·영양 식습관 개선도 : ('20) 82.1% → ('21) 84.1% → ('22) 85.9%

* 식사전 손씻기 실천, 편식감소, 음식남김 감소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20년 2월 마련된 최초의 중장기 법정계획인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1년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제정하도록 한데 이어, '22년에는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도 제정 협조를 요청하여 공공부문 내 2차 피해 예방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스토킹,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22년에 공표하였고, 여성폭력의 발생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범죄자 처분까지의 통계를 총망라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발간하는 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였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및 전문가 자문·컨설팅 제공, 유학생 대상의 맞춤형 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점점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 확대 등 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신속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22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을 확대('21년 7개소 → '22년 10개소)하여 피해자 접근성 제고 및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22.9월)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부처 협업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유형별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 임시보호, 자립·자활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운영 및

확대하였다. 특히, ’22년 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토킹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취학지원, 피해자지원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성폭력 피해 상담소(국비지원) : (’21) 104개소 → (’22) 105개소
-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 (’20) 344호 → (’21) 354호 → (’22) 356호
- 국비지원 가정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 포함) : (’18) 103개소 → (’19～’22) 128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 (’19) 5개소 → (’20) 7개소 → (’21～’22) 9개소

저출산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산모·신생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왔으며, 2022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한부모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도입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22.10월) → 60% 이하(’23.1월)) 또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하였으며(양육비 채무액 5,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양육비 3기 이상 미지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5% 이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22.8.16.).

- 아동양육비 : (’21) 188,361명 → (’22) 203,816명
- 양육비 이행률 : (’21) 38.3% → (’22) 40.3%
- 양육비 이행금액 : (’21) 273억원 → (’22) 283억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생활필수품인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하고 유해한 대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19년부터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때에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20년에는 국내 대형 유통점, 편의점, 모바일 앱 등 접근성이 높은 구매처를 적극 확보하고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다. ’22년에는 저소득층 만 11~18세에서 저소득층 만 9~24세로 지원 연령을 확대하였고, 하반기부터 지원금액을 월 13,000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였다.

외모 중심의 사회 인식이 팽배함에 따라 체중감량(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 등 기능성을 표방한 국내 유통 및 해외 직구 제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검사·관리의 강화를 위해 해외 직구 제품 중 갱년기 치료 관련 17개 성분 및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34개 성분에 대한 동시 분석법을 개선하였다(’22.11.). 또한 새로운 제형의 화장품(타투립스틱, 헤어틴트 등) 중 사용금지 색소 11개 성분에 대한 동시 분석법을 확립하여(’22.11.) 분석 영역을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접근성 보장·강화를 위해 임신·출산 종합 상담·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브플랜 사이트(loveplan.kr)를 통해 임신의 유지·종결 등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에 대해 의료전문가(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의학정보(시술방법, 합병증 등) 및 성·생식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성·피임 지식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산과의사·성교육전문 강사의 찾아가는 성교육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성·생식건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1. 9. 24. 제정, '22. 9. 25. 시행)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예술인들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권리 침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예술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도 제도화하였으며,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교육을 실시하고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미투운동 이후 부처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계·직장 등 정책영역과 현장이 큰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19.5.7)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전담부서가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8개 부처 담당관이 참여하는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2년까지 총 23회의 협의체를 운영하였다.

공공부문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을 지원하여,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21년에 시·도 광역자치단체 15개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5개를 시작으로 조직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22년에는 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0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2년에는 행정통계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조직의 구성원이 체감 및 실현 가능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이행보고서 작성 및 제출('22.3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수립('21.2월)에 따른 민·관 합동 이행점검 실시('22.12) 등 국제협약 및 결의안 이행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UN Women에 대한 기여금 지원, 인도네시아 여성 역량강화 지원, 몽골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여성 관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추진하여 개도국의 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였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해 대국민 양성평등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관련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 3 절

법령의 변화

1.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14.5.28. 공포)을 시행하였다. '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15년에는 성평등지수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성평등 지수를 활용하고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개선 방안을 요청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외에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고등교육에서 성희롱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하였다.

'16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시 임금차별을 받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장관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년에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여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18년에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8년 초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 남성을 관리직위에 균형 있게 임용하기 위한 관리직 목표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로 하여금 여성이 인사 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고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였다. ’18년 말에는 성인지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체 공무원에게 의무화하였으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화하였다. 이밖에 민간재단 형태로 운영되던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공(公)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인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심의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하여 각 지역의 정책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해당일에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1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이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는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를 강화하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다.

2.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성별영향평가법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하고자 '11년 9월 제정되어 '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다양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내고 있다.

'17년에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대상 기관을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개선사항의 반영결과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내실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8년에는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업무담당자와 국민이 제도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08.12.6. 시행)하였다.

’10년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개정(’10.2.4. 시행)하였다.

’17년에는 경력단절 사유에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포함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역할에 경력단절예방 지원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17.9.22. 시행)하였다.

'19년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을 개정('20.5.27. 시행)하였다.

'21년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21.12.7.)하고 '22년 시행('22.6.8.)하여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의규정 신설 및 예방사업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및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신설·강화하였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89년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고, '03년에 모자가정외에 부자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08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원대상 범위를 조손가족까지 확대하였고, 이후 개정을 통해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규정하는 등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 확대하였다.

'16년 3월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이 시설을 폐지 혹은 운영 중단 시 입소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장의 입소자 권익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16년 12월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

’17년 12월에는 청소년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가정형편과 불규칙한 생활패턴 등으로 인해 건강 위협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18년 12월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모·부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산전·분만·산후 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등)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의료비 추가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0년 10월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네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첫 번째는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 절차를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변경함으로써 절차를 개선하였으며('18.3.27. 개정, '18.9.28. 시행), 두 번째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와 이행관리원에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18.12.24. 개정, '19.6.25. 시행). 세 번째는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후 양육비 채무자가 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20.6.9. 개정, '21.6.10. 시행). 네 번째는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21.1.12. 개정, '21.7.13. 시행).

6.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11년에는 귀화 및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으로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3년에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다국어 상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한층 더 보호하도록 하였다.

’15년에는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방문교육비용 차등 지원 근거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16년에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정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였다.

’17년에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년에는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정보 제공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로써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18.12.24. 제정, '19.12.25. 시행)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년 법에 규정된 정책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개 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최초의 중장기 법정 계획인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을 통해 주요 과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환류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피해' 개념을 최초로 법제화 하고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의무화 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2차 피해 방지지침 제정 의무를 규정하는 등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 하였다. 한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 수립 및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교제(데이트) 폭력', '온라인그루밍'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 제정(’11.1.1. 시행)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13년에는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로 확대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예방교육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정부 위탁·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교육환경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대상)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14년에는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실적 점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 평가 반영 요구, 점검 결과 언론 공표 의무화 등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였다.

’15년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하여 지정되는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16년에는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등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조직 내 성폭력 방지를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시 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에 관한 의무조항을 신설

하였다.

'17년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18년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나, 개인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행위자에 대해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년에는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자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1년에는 조직 내 사건 은폐 방지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대응 체계를 정비하였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로의 통보 및 재발 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시 수사기관 신고의무도 신설하였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14년에는 전면개정을 통하여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추방주간 운영,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제고 및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보호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16년에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폐지 또는 폐쇄 시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의 대화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과 범죄단체가 개입된 성매매 등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토록 하였으며,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숙박업 등 성매매(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8년에는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하여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00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00.7.1. 시행)하고, ’09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10.1.1. 시행)하였다.

'05년에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06.6.30. 시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09년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기존의 온라인을 통한 공개 외에도 아동·청소년 보호세대·기관 등에 우편으로 고지('10.4.15. 시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우편고지는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이웃뿐만 아니라 경계를 같이하는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하였다.

'12년('13.6.19. 시행)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한 자에게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처벌을 강화하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강간 살인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음화반포 등의 일부 죄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음주로 인해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18년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편('18.7.17. 시행, '18.9.14. 시행)하였다.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간 부과하던 기존과 달리,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의료인(2012년), 경비업·일반 PC방·청소년 노래연습장 등(2013년), 위탁교육기관 및 학습교사 사업장(2016년)에 이어 대학·학생상담지원시설·공공시설 등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19년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19.7.16. 시행)이 이루어졌다. 또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고,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하였다(’19.11.26. 개정, ’20.5.27. 시행).

’20년에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20.5.19. 개정 ’20.11.20. 시행). 또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꾸며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20.6.2. 개정·시행).

’21년에는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하는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21.3.23. 개정, ’21.9.24. 시행).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여 근절을 도모하고, 피해자 보호체계 확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11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가해자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을 신설하였다.

'12년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조사권을 신설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 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13년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고 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권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14년에는 예방교육 실적 점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 평가 반영 요구, 점검 결과 언론 공표 의무화 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거나 자녀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할 경우 신변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신변 보호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15년에는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피해자의 임시보호 기능을 추가하였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문화 확산을 위해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신설하였다.

’16년에는 가정폭력 관련 시설 중단·폐지 시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17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기본이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책무를 신설하였다. 또한 외국인·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근거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 금지 원칙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였다.

’18년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일시적인 중단·폐지신고 내용이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였고,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20년에는 그동안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한정되었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 입소를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입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1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

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21년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2년에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취학 지원, 지원시설의 설치 및 업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벌칙 등을 규정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2년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87.12.4. 제정되어 '88.4.1.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출발한다. 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상 평등 이념 및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을 구체화한 법이다. 제정 당시에는 '여성 차별 금지 및 근로여성복지증진'을 규정하였으나, '01년 전부개정('01.8.14. 개정, '01.11.1. 시행)을 통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지향하는 법으로 변화시켰다.

'07년에는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자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① 남성근로자에게 3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 부여, ② 육아휴직 분할 사용 제도 개선,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17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도 두었다.

’19년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도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기본 1년 및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근로자의 가족돌봄 또는 은퇴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인정하였다.

’21년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용상 성차별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제도를 도입하였다.

1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을 기여하고자 ’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02.7.1. 시행)하였다.

’21년에는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사업 추진,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22.6.1. 시행)하였다.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 주요내용
• 법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정목적 및 국가·지자체 책무에 농어촌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농업인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 추가 (제1조·제2조·제3조·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 추가(제3조)
• 여성농업인의 날(10월 15일)과 여성어업인의 날(10월 10일)을 지정하고 기념행사 개최 근거 마련(제3조의2)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제7조)
• 귀농·귀어·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정착 및 전문인력화 지원 근거 마련(제9조)
• 농어업·농어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 추가(제10조)
•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 시책에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과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추가(제11조)

15.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모든 교육관계법의 기본법으로 '97년 제정('98.3.1. 시행)하였다.

'00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육시책 수립·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설치 조항을 신설('00.1.28.)하였다.

'21년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기존의 "남녀평등교육"을 "양성평등의식"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22.3.25. 시행)하였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HAPTER
2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제1절 현황 및 정책협력 체계 43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43
2.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53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0

제2절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61
1. 성별영향평가 연혁 및 추진체계 61
2.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63
3.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66

제3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70
1. 여성단체 협력·지원 70
2.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71

제4절 양성평등기금 운용 81
1. 기금 조성 및 자산 운용 81
2. 사업추진 현황 82
3. 2022년 기금사업의 특징 84

제5절 양성평등 문화·의식 확산 85
1. 양성평등 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85
2. 양성평등주간 운영 93
3.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 95

제6절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97
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성과 97
2. 여성공무원 현황 100
3.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108
4.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111

제 1 절

현황 및 정책협력 체계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가. 주요 국제지수 현황

1) 성불평등지수(GII : Gender Inequality Index)

성불평등지수(GII)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인간개발보고서(HDR : 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2010년부터 발표하는 지수이다. 1995년 이래 발표했던 여성개발지수(GDI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와 여성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대체하는 지수로, GDI, GEM 지수가 선진국 위주, 도시 엘리트 중심의 강한 편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을 수용하여 개발되었다.

성불평등지수(GII)는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권한(Empowerment), 노동참여(Labour market)의 3개 부문 5개 지표로 구성된다. GII는 성평등한 상황에서 인간 개발이 최적화될 수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인간 개발의 손실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한다.

|표 2-①-1| 성불평등지수(GII)의 영역과 지표

영역(차원)	지 표
생식건강	• 모성 사망비 * 여성의 임신, 출산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 청소년 출산율 *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여성권한	• 여성의원비율
	•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노동참여	• 경제활동참가율

UNDP에서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거의 매년 GII를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1/2022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는 0.067점으로 세계 191개국 중 15위로 '20년 대비 4단계 하락하였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순위는 싱가포르 7위, 일본 22위, 중국 48위이며, 상위권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덴마크 1위, 노르웨이 2위, 스위스 3위, 스웨덴 4위, 네덜란드 5위로 유럽 국가의 순위가 높았다.

성불평등지수(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인간 개발에서의 성불평등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성불평등지수(GII)를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식건강 영역의 모성사망비는 11명으로 '20년과 동일하나, 청소년 출산율이 2.2명으로 '20년 1.4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여성권한 영역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9%, 중등교육 이상 받은 여성 인구는 83.1%로 '20년 발표 대비 상승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53.4%로 '20년 대비 0.5%p 상승, 남성 72.4%로 '20년 대비 0.7%p 하락하여 남녀 격차는 1.2%p 감소하였다.

|표 2-①-2|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 산출된 점수는 0~1의 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성 불평등한 상태,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발표 연도	순위/ 대상	점수*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2년	15/191	0.067	11	2.2	19.0	83.1	93.1	53.4	72.4
'20년	11/189	0.064	11	1.4	16.7	80.4	95.5	52.9	73.1
'19년	10/189	0.058	11	1.4	17.0	89.8	95.6	52.8	73.3
'18년	10/189	0.063	11	1.6	17.0	89.8	95.6	52.2	73.2
'17년	10/188	0.067	11	1.6	16.3	88.8	94.6	50.0	71.8

※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 년도

건강, 교육 등 인간 개발에서의 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지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의 성평등 지표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가 성평등 전략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정치·경제 권한 확대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을 지속 추진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성개발지수(GDI : Gender Development Index)

유엔개발계획(UNDP)은 성개발지수(GDI)를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발표한다. GDI는 '95년 제4차 여성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이래로 '09년까지 약 10여 년간 발표되었으나, 여러 한계로 인해 '09년 폐기되었다. 현재 발표되는 GDI는 '14년도에 일부 지표와 산정방식을 개편한 것이다.

개선된 성개발지수(GDI)는 인간개발지수(HDI : Human Development Index)를 남녀 집단 각각에 대해 계산한 후 성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HDI 절대 격차를 국가별, 지역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다. 현재 발표되는 GDI는 인간 개발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건강, 교육, 경제(적절한 표준 삶) 세 가지 차원에서의 4개 지표로 산출하고 있다.

|표 2-①-3| 성개발지수(GDI) 영역과 지표

영 역	지 표
건 강	• 출생시 기대수명
교 육	•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 • 기대 교육 연수
경 제	• GNI에 기반한 1인당 추정소득

UNDP에서 발표한 '22년도 성개발지수(GDI)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총 점수 0.944로 5개 그룹 중 3번째 그룹[1]에 해당하여 인간개발지수의 성별 격차는 비교적 큰 편이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출생 시 기대수명은 여성 86.8년으로 남성 80.4년 보다 높으나, 평균 교육 연수는 여성 16.1년, 남성 16.9년, 기대 교육 연수는 여성 11.9년, 남성 13.2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소득이 여성은 $29,300, 남성은 $59,737로 남녀의 소득수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GDI가 낮아지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성불평등지수(GII)(15위/191개국)와 성개발지수(GDI)(3그룹/5그룹)의 순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두 지수의 지표 구성과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1) UNDP는 2015년부터 점수 분포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발표함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점수	0.975 이상	0.950~0.975	0.925~0.950	0.900~0.925	0.900 미만

성불평등지수(GII)는 5개 지표로 구성되어 성별 수준과 격차를 함께 고려하여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반면, 성개발지수(GDI)는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성별 격차로만 측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지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표 2-①-4| 우리나라의 성개발지수(GDI) 현황

발표 연도	그룹	HDI 성비	HDI 점수		건강한 삶		교육(지식)				적절한 표준 삶	
					출생 시 기대여명(세)		평균 교육년수(년)		기대 교육년수(년)		1인당 GNI (PPP$)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2년	3그룹	0.944	0.894	0.947	86.8	80.4	16.1	16.9	11.9	13.2	29,300	59,737
’20년	3그룹	0.936	0.881	0.941	86.0	79.9	15.9	17.0	11.4	12.9	27,734	58,309
’19년	3그룹	0.934	0.870	0.932	85.8	79.7	15.8	16.9	11.5	12.9	23.228	50.241

※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 년도

주요 국가의 ’22년 성개발지수(GDI) 점수를 살펴보면, 리투아니아 1.030점, 라트비아 1.025점, 에스토니아 1.021점 순으로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0.984점, 일본 0.97점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3) 성격차지수(GGI : Gender Gap Index)

성격차지수(GGI)는 ’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경제, 교육, 건강, 정치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를 측정하여 국가별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GII는 성별 차이에 주목하여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더 높은 성평등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성격차지수(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부여의 4개 영역과 14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표 2-①-5| 성격차지수(GGI) 영역과 지표

영 역	지 표
경제참여와 기회	• 경제활동참가율
	• 유사업무 임금수준
	• 추정소득
	• 관리직 비율
	• 전문직 비율
교육적 성취	• 문해율
	• 초등교육 취학률
	• 중등교육 취학률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건강과 생존	• 출생 성비
	• 건강기대수명
정치적 권한 부여	• 국회의원 비율
	• 장관 비율
	• 국가수장 재직기간

우리나라는 ’22년 0.689점으로 ’21년 대비 0.002점 상승하며 전체 146개국 중 99위를 기록하여 순위가 3단계 상승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경제참여 및 기회 분야는 0.592점으로 ’21년 대비 순위가 8단계 상승하였고, 교육적 성취 분야는 0.976점으로 ’21년 대비 순위가 7단계 상승하였다. 건강과 생존 분야는 0.976점으로 ’21년과 점수는 동일하나 순위는 2단계 상승하였다. 정치적 권한 분야는 0.212점으로 ’21년 대비 0.002점 하락하며 순위도 4단계 하락하였다.

|표 2-①-6|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현황

발표연도	GGI(순위)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22년	0.689(99위)	0.592(115위)	0.976(97위)	0.976(52위)	0.212(72위)
’21년	0.687(102위)	0.586(123위)	0.973(104위)	0.976(54위)	0.214(68위)
’20년	0.672(108위)	0.555(127위)	0.973(101위)	0.980(1위)	0.179(79위)
’18년	0.657(115위)	0.549(124위)	0.973(100위)	0.973(87위)	0.134(92위)
’17년	0.650(118위)	0.533(121위)	0.960(105위)	0.973(84위)	0.134(90위)

※ 출처 : WEF,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각 년도

성격차지수(GGI)는 성불평등지수(GII)와 달리 해당 국가의 수준(level)은 고려하지 않고 남녀 격차(gap)만 측정하므로 선진국가가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위 국가는 아이슬란드 1위, 핀란드 2위, 노르웨이 3위로 OECD 국가들이 순위가 높다.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이 19위로 가장 높고 중국이 102위, 일본이 116위로 한국과 함께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세계 하위권으로 우리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표 2-①-7| OECD 국가 성격차지수 현황

연번	국가명	순위	점수	연번	국가명	순위	점수
1	아이슬란드	1	0.908	20	포르투갈	29	0.766
2	핀란드	2	0.860	21	멕시코	31	0.764
3	노르웨이	3	0.845	22	덴마크	31	0.764
4	뉴질랜드	4	0.841	23	슬로베니아	39	0.744
5	스웨덴	5	0.822	24	호주	43	0.738
6	아일랜드	9	0.804	25	룩셈부르크	46	0.736
7	독일	10	0.801	26	칠레	47	0.736
8	리투아니아	11	0.799	27	에스토니아	52	0.733
9	코스타리카	12	0.796	28	이스라엘	60	0.727
10	스위스	13	0.795	29	이탈리아	63	0.720
11	벨기에	14	0.793	30	슬로바키아	67	0.717
12	프랑스	15	0.791	31	콜롬비아	75	0.710
13	스페인	17	0.788	32	체코	76	0.710
14	오스트리아	21	0.781	33	폴란드	77	0.709
15	영국	22	0.780	34	헝가리	88	0.699
16	캐나다	25	0.772	35	한국	99	0.689
17	라트비아	26	0.771	36	그리스	100	0.689
18	미국	27	0.769	37	일본	116	0.650
19	네덜란드	28	0.767	38	터키	124	0.639

나. 국가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는 '09년 국가 성평등 수준의 다각적인 파악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가 성평등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10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조사·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성평등지수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값으로 성평등한 사회 참여의 정도, 여성의 인권·복지 및 성평등 의식·문화 등으로 구성된 지표를 통해 산출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영역에 대해 관계 부처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남녀 격차를 측정기준으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개 부문 25개 대표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①-8| 국가성평등지수 부문별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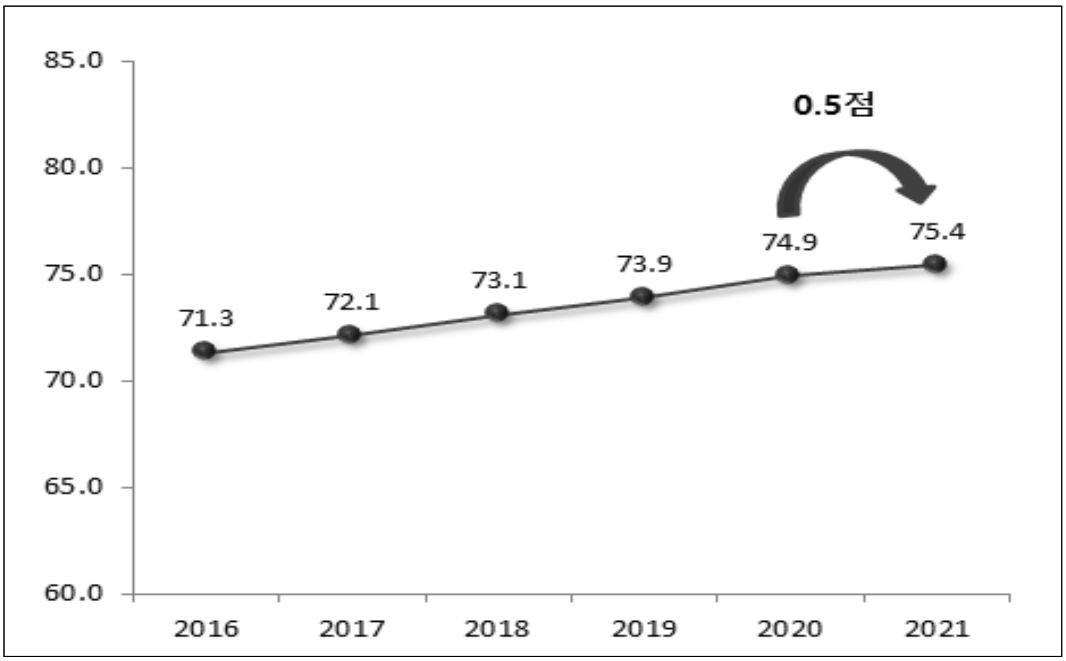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연수 격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 빈곤 인구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고용률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의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 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비율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 지표 값은 성비로 계산

우리나라의 '21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전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평등 수준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단위 : 완전 성평등 = 100.0)

〈 연도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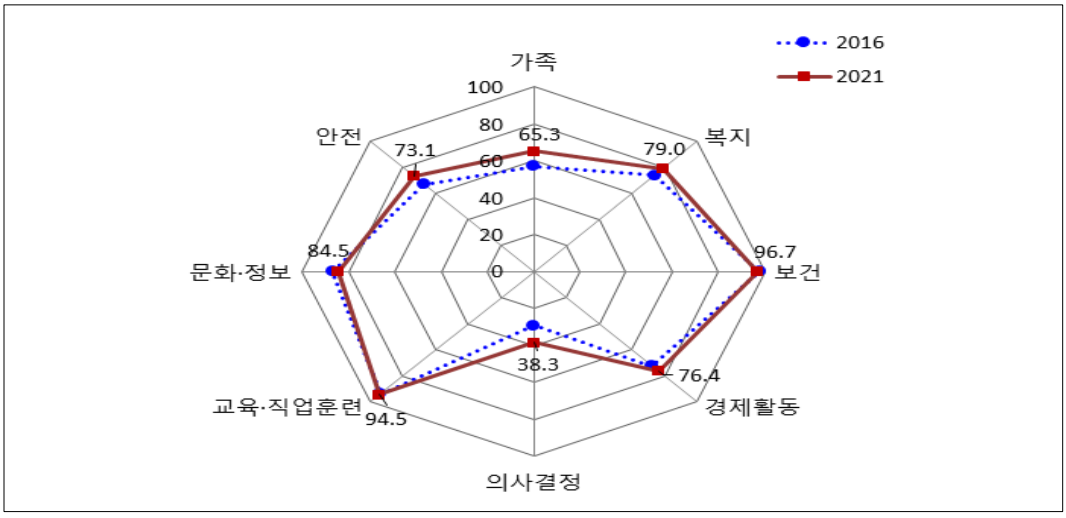
주 :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2-①-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 분야(96.7)이며 교육·직업훈련 분야(94.5), 문화·정보 분야(84.5), 복지 분야(79.0), 경제활동 분야(76.4), 안전 분야(73.1), 가족 분야(65.3), 의사결정 분야(38.3) 순이다.

2021년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20년과 비교해 보면 의사결정 분야가 1.9점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으나 여전히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단위 : 완전 성평등=100.0)



|그림 2-①-2|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의 시계열적 변동 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등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지속 활용할 계획이다.

2.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가.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확대 개편되어 이전 여성정책조정회의 내 5명에 불과하던 민간위원을 1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15년 7월 처음 개최된 양성평등위원회는 ’22년 현재까지 총 14회 개최되었고, ’22년 2월말에 개최된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결과 및 개편(안), UN안보리 결의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 2021년 이행 점검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 현안에 대한 보다 전문성 있는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산하에 양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양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는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분과와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운영

’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기존 여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개편하고, 배치 범위도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의 경우도 기존의 4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 지정되어 운영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양성평등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총 4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 지정되어 운용하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은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대상 성인지 교육에 참여 하였다.

다.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추진실적 및 협의체 운영

미투 등 영역별 성희롱·성차별 문제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대응과 양성평등 조직체계 구축 및 정책의 양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 정책영역과 현장이 큰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가 신설('19.5.7)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전담부서가 제대로 안착하여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 양성평등정책 추진 우수사례, 성인지 예결산 현황,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과제 연구 주요내용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전담부서가 설치된 부처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간위원들과 고위공무원들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22년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①-9| 2022년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주요 추진실적

부처명	주요 추진내용
교육부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1)] 1) 사안 접수-분류-처리-답변-사후관리 등 체계적 관리 - 초·중등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및 사안처리 역량 향상 1)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및 「교육분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지속 추진 * 초·중등 사안처리 직무연수 추진 및 사안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등 2)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책무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조직 확대 및 기능 강화 지원 * ('19년) 5개 → ('20년) 10개 → ('21년) 15개 → ('22년) 16개 교육청 3) 교원징계기준 강화 * 성범죄 처벌자의 교원 자격 취득 제한,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일정 기간 담임 배제 4)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지원을 위한 점검 안내서 배포 및 점검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체계 강화 ※ 점검 안내서 배포('22.2), 전문 위탁점검 지원, 경찰청과 협의회 실시 등 점검 내실화 및 모니터링 -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강화 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지원하는 중앙센터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학 사안 대응 체계 안정화 2) 유학생·외국인 교원을 위한 외국어 교육자료 및 전공 특화 교육자료(의료·보건 계열) 등 현장 활용성 높인 예방교육자료 개발·보급 3) 현장의 담당자를 위한 수준별 직무연수를 다양하게(온·오프라인) 제공하고, 맞춤형(개별·소그룹) 전문가 자문·컨설팅 지원

부처명	주요 추진내용
	4) 전담기구(인권센터) 설치 의무화('22.3.24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담기구 현황 파악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5) 예방교육, 사안처리 및 양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공감대 조성 -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연계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양성평등교육심의회 통합 및 기능 강화 ※ (3개 분과) 양성평등 교육정책 /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 /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1)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교과별 성취기준·해설 등에 내용 요소를 반영하여 학교 양성평등교육 내실화 2) 학생·교원 및 학부모 대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자료 개발 및 현장 보급 3) 양성평등 전문교원 연수를 통한 학교 현장 교원들의 양성평등 전문 역량 강화 4) 국립학교 양성평등 상설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양성평등교육 모델화 및 확산 도모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교원 임용 및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참여에서의 성별 다양성 확대
법무부	- '23년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1] 수립·추진,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실시[2],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3], 훈령·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 점검[4], 법무부 자체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5] 1) 4개 대과제(직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 13개 세부과제(교육대상별 양성평등교육 내실화, 훈령·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 개선 추진, 폭력예방교육 다양화 등) 2) 집합교육,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소속기관 교육 등 총 191회, 4,823명 교육 실시 3)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총 4회 회의 개최, 제2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4) 법무부 홍보물 제작 양성평등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홍보물 시안 확정 전 점검 체계 구축, 법무부 소관 행정규칙 314개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여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 5)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실태연구」('21) 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주요 판례 등을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총 5차시)
국방부	- 「'18~'22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2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연도별 목표에 따른 여군 인력 비율 확대[1] 추진 1) '22. 12월 여군인력 9.0%로 목표 달성 -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1] 1)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 등 5개 조직 - 성폭력 예방 활동 강화1) 및 관련 전문인력(성고충전문상담관 등) 증원·역량강화 1) 하절기/연말연시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 운영(7~8월, 12월~'23.1월) 운영, 디지털 성범죄 특별 예방교육 시행, 야전부대 이행실태 현장점검 강화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령 개정1) 및 제도 개선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22.7월), 부대관리훈령('22.5월), 국방 양성평등지원에 관한 훈령('22.11월) 등 - 맞춤형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교관 및 양성평등 업무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1] 1) 맞춤형 표준교안(5종) 개발, 동영상 콘텐츠(7종) 및 국방TV 특집 프로그램 제작, 위탁교육 실시(969명) - 성별영향평가 시행(법령 72건, 사업 7건) 및 자체 성별영향평가1) 이행 강화 1) 국방부 소관 77개 행정규칙 성별영향평가 시행 - 국방 성인지 통계 생산(4개 분야 35개 지표)으로 국방 제 분야에 대한 성별 비교 실시 -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 개선 및 보육여건 개선[1] 1) 난임치료 시술휴가 확대, 부부군인의 비상시 또는 자녀돌봄 필요시 출퇴근시간 조정, 군어린이집 운영(159개소) 등

부처명	주요 추진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 정책개발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1) 문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2회) 및 분과위원회(2회), 양성평등협의회(1회) 운영 2)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 운영'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정책 실행 지원 (성주류화정책 연구 3건, 현안대응 및 홍보확산 추진 사업 4건) 3) 문화체육관광분야 근현대 주요 여성인물 연구(14명) 및 구술채록 영상(10명) 제작 4) 문화콘텐츠 제작 인력 대상 성인지 교육콘텐츠 제작(4개 분야, 10편) 5) 학교체육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역 네트워크 포럼 개최(8회) 6)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6개 분야 10점) 개최 및 온라인 홍보 추진 7) 우수 양성평등 콘텐츠 선정(영화 10편, 시리즈 5편) 및 홍보를 위한 2022 벡델데이 행사 개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 1) 우리부 소관 86개 소속·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점검('22.12), 시정조치 요구 및 경영평가 연계 2) 고위직 별도 맞춤형 및 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및 소속·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 추진('22년 122명 이수)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컨설팅 지원(13개 기관) 및 워크숍 진행('22.11) 4) 부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모의연습 실시('22.11), 직원 사건 대응능력 제고 및 예방 강화 5) 콘텐츠산업(게임·음악산업)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22.12) 6)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개발·보급(5종) 및 확산 포럼 개최('22.11) 7) 문화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센터(4개소) 간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 공유 등 연계 강화('22.3, 11) 8) 민간보조사업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예방교육 의무 등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개정판 배포('22.5), 소관 공공기관 등에 이행 점검('22.11~12) 9)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상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문 명문화(9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분야 성평등 정책개발 및 성인지 역량강화[1) 2)] 1) 보건복지 분야 성인지적 정책개발 및 젠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성평등자문위원회' 및 '성평등정책 포럼' 운영(각 분기별 1회, 총 4회 실시) 2) 성평등한 정책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및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홍보 등 추진 • 부내 직원 대상 성평등 인식 및 성인지 역량진단 설문조사 실시('22.7.~8. 1,161명 참여) * 4개 영역 총 15개 문항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통한 실천방안 제시 •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주제별 행동요령', '성별분리통계' 주제로 카드뉴스 제작 – 보건복지분야 정책추진 성인지적 개선 지원[1) 2) 3) 4)] 1)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성인지적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 현황과 특성, 종사자 교육 문제점 및 수요 분석, 성인지적 교육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모색함 2) 「성인지적 관점으로 본 보건복지 통계 연구」 보건복지 분야 통계의 성별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 정책추진 3) 홍보물 분기별 자체점검 및 비차별적 홍보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성인지 관점 홍보물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및 포상('22.12.) 4) 성인지적 정책개선 지원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운영 내실화, 행정규칙 및 통계 모니터링 등 추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근절을 통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1) 2) 3) 4)] 1)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대응 추진계획 수립·시행('22.4.)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훈령 제209호 '22.12.) 2)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리플렛 제작·배포, 성희롱·성폭력 예방 연속 캠페인 실시, '23년 달력 '나는 내 동료의 근무환경입니다' 제작 3) 소속(산하)기관(45개소)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점검실시(반기별 1회, 총 2회) 4) 사회복지시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향상 지원 위한 방지조치 및 조직문화 개선 지원사업 매뉴얼 개발 실시

부처명	주요 추진내용
고용노동부	-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1], 민간 고용평등상담실(21개소) 운영[2], 고용부-산하기관(12개소)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회' 개최(분기 1회) 1) 익명신고센터 운영실적('22) : (성희롱) 694건, (성차별) 184건 2)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적('22) : (상담건수) 13,198건, (심리치유 프로그램) 171명, 968회, (사업장 교육) 306개소, 9,795명 -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과제 발굴[1], 가이드라인에 따른 콘텐츠 제작 및 교육[2], 고용노동부 홍보물 및 행정규칙 점검[3] 1)「고용노동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등 정책연구(2건),「성평등한 일터의 조건」·「일터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이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포럼(4건) 2)「고용노동부 성평등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및「고용노동분야 성평등 행정규칙 제·개정 가이드라인」 기반, 홍보물 396건, 행정규칙 131건, 행정규칙 위원회 38건을 전수 점검 3)「고용노동부 성평등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및「고용노동부 성평등 행정규칙 제·개정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성평등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총 2,270명 이수 - 고용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및 운영(분기 1회)[1], 고용부-산하기관(12개소)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체 운영(분기 1회)[2], 5급 신규 임용자 성인지 정책 교육 및 신규 고충상담원·근로감독관 전문교육과정·노동위원회 조사관 성인지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1)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주간 운영계획(고용노동부 최초),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고용노동부 최초) 등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운영을 통한 성과 확산(연간 4회) 2)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별 중점 추진현황 공유, 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전파,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 점검, 업무 담당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통해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12개 산하기관 대상, 연간 4회) 3) 본부 신규 임용 사무관 대상 성인지 정책 교육 실시(12월 11명), 신규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4회, 121명 이수),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과정(4회, 207명 이수), 근로감독 기본과정(6회, 77명 이수), 근로감독관 성인지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7회, 125명 이수) 실시
대검찰청	- '배려와 존중,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검찰'을 목표로「2023년도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1],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2] 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확립,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인지적 형사 절차 기반 강화, 양성평등한 검찰 문화 조성('22.12.) 2)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등('22. 6. / 12.) - 성비위 사건 엄정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전국 청 간담회' 확대 실시 등 1) 전국 검찰청(66개) 청을 직접 방문하여 직급별 면담, 고충신고 안내, 성비위 예방 등 양성평등정책 이행 상황 점검 및 관리, 검찰구성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세미나 실시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 강화('22. 3.~) 2) 대검찰청 '톡톡 차담회' 실시하여 신규 직원 및 전입 직원 대상 성희롱 등 처리절차 안내('22. 7.~9.) - 대검찰청 홍보물 성차별 요소 지속 점검 및 외부위원 자문 시행 1) 대검 각 소관부서(약 20건) 홍보물 성차별 요소 등 점검(성별영향평가) 실시(~'22.12.) 2) 대검찰청 청사 체험관 체험지, 갑질행위근절 홍보물 등 대상 외부위원 자문 시행(~'22.6.) - 검찰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개선 등을 위해 '양성평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강연회 지속 실시 1) 박상영 작가를 초청하여 양성평등, 직장 내 소통을 주제로 강연회 개최('22.10.) 2) 영화「경아의 딸」 상영회를 개최하여 검찰구성원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계기 마련('22.11.)

부처명	주요 추진내용
경찰청	- 경찰 정책의 성평등한 추진체계 확립[1) 2) 3)] 1) '18. 4. 17.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발족, '22.12월까지 정기회의 19회 개최 2) 중장기적 전망 하에 수립된 「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4)」 의거, '22년 시행계획(48개 과제) 추진 3) 성평등 정책의 자율적 추진기반 마련 및 경찰 전반의 성평등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한 「경찰청 기능·기관별 성평등 목표 종합계획('21~'24)」 추진 및 '22년도 이행점검 실시 - 경찰 주요 정책·홍보물 등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제도 운영 지원[1) 2) 3)] 1) 전국 경찰관서 제작 콘텐츠 대상 성별영향평가 실시(3,080건 검토, 1,270건 개선, 개선율 94.3%) 2) 경찰 성인지 통계 교육안 제작 및 워크숍 실시('22.8월) 3) 경찰 보도자료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배포('22.10월) - 경찰 성평등 교육체계 설계 및 저변 확대[1) 2) 3)] 1) ▵숲 직원 대상 생애주기별·직급별 성평등 교육체계 설계 ▵성평등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확충 2) ▵경찰 맞춤형 성평등 표준교육안 제작·활용하여 성평등 교육(1h) 실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표준교육안 제작·활용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2h) 실시 3) 경찰인재개발원·양성평등교육원진흥원 협업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운영 - 경찰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실질화[1) 2)] 1)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젠더뉴스레터 발간(2회), ▵양성평등 주간 기념 성평등 문화대전 추진 및 성평등 경찰 선언 영상 제작,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1회) 2) ▵세대·성별·계급을 아우르는 성평등문화혁신네트워크 '성평등 같이가치' 발족 및 간담회 실시(3회), ▵본청 주관 전국 순회 신임 여성 근무자 간담회 실시 ▵소속기관 주관 여성근무자 간담회 실시(208회) - 경찰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체계 강화[1) 2) 3)] 1)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및 성범죄 예방 상시협의체 지속 운영 2) 「경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22.9월) 3) ▵성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경찰관서 현장점검 실시(37회) ▵조직 내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라.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분야인 여성, 청소년, 가족, 권익증진 분과 외에도 홍보 및 조직, 법률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혁신·적극행정전략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수립부터 사업 추진, 대국민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류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였다.

'22년에는 '23년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의 안건으로 제12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임기) 제12기 : 2022. 8. 12. ~ 2023. 8. 11.(74명)

|표 2-①-10| 2022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분과(개최일)	참 석	주요내용
전체회의 (2022. 10. 17)	• 정책자문위원 45명	• '23년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관련 국별 정책제언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공공부문 대상 조직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선제적으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은 '20년부터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으로 꾸준히 대상 범위를 확대해왔다('21년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5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특히 '22년은 중앙행정기관 4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109개 기관에 대하여 인사·권한, 직무배치, 일·생활균형, 기관의 양성평등 노력 등에 대한 조직현황과 구성원의 인식을 조사하는 양성평등 문화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 특성에 맞는 개선계획 수립 등 이행관리를 추진하였다. 사업 결과, 조직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이 3년 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였으며(3.46점),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4.08점)', '조직문화 개선 노력(4.01점) 등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제 2 절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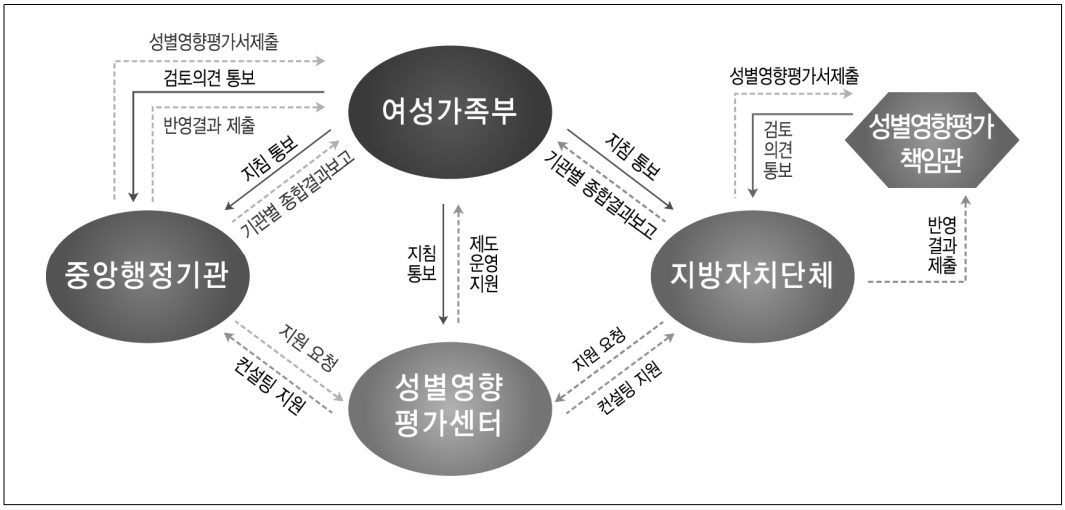
1. 성별영향평가 연혁 및 추진체계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1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12.3.16.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범위가 제·개정되는 모든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14년에는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공표하여 국민이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15년에는 제도 운영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권고 외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7년에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개선사항의 반영결과 제출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18년에는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정책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하였다. ’19년부터는 과제 선정에서부터 정책환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해 개선권고 과제 이행률을 제고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내실화하였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제도 운영의 세부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①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서 작성·제출(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②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통보(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③ 검토의견서에서 ‘개선의견’을 받은 각 기관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④ 각 기관의 담당부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⑤ 여성가족부는 종합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한다.



|그림 2-②-1|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2.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이 사업에서 제·개정 법령, 부처의 주요 사업과 중장기 계획으로 확대되었다.

'22년도에는 총 27,109건의 성별영향평가가 추진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는 총 1,743건으로 그 중 법령이 1,595건, 사업 148건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총 25,366건으로 그 중 법령이 17,999건, 계획 127건, 사업 7,240건의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표 2-②-1| 성별영향평가 연도별 추진 현황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3,195건	29,395건	29,906건	30,659건	27,109건
중앙	1,867건	1,921건	2,332건	2,181건	1,743건
지자체	30,699건	26,733건	26,789건	27,677건	24,612건
교육청	629건	741건	785건	801건	754건

|표 2-②-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세부 현황

2022년	중 앙	지자체(교육청 포함)	합 계
합계	1,743	25,366	27,109
법령	1,595	17,999	19,594
계획	-	127	127
사업	148	7,240	7,388

한편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22년에는 「생활체육 지원정책」, 「노숙인 지원정책」 등 9개 과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기관에 개선을 통보하게 된다.

표 2-②-3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주요 내용(2023.8월 기준, 2023년 중 지속 권고 예정)

연번	정책명	정책개선(안) 주요내용	소관기관명
1	생활체육 지원정책	• 생활체육 미참여자의 참여 증진 방안 마련 • 대회형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 방안 마련 •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2	노숙인 지원정책	• 노숙인 지원 정책의 성별 관점 반영 기반 조성 • 노숙인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
3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 성별 차이와 노동 특성을 고려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개선안 마련 • 여성 집중 업종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지원 방안 마련 • 모·부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 등 기존 제도 적용 및 확대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등
4	국민취업지원 제도	• 성별 수요를 고려한 취업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 국민취업 지원제도 전달체계 기능 강화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5	지역사회 통합돌봄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수혜자 유형 및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체계 마련 • 사업을 통한 돌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운영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등
6	귀농귀촌 지원정책	• 귀농·귀촌인 특성을 고려한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안 마련 • 성별 욕구에 맞는 농촌 일자리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등
7	정신건강 증진사업	• 연령별·성별 활동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방안 모색 • 성별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위해 요인 관리 및 대응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8	사회보장 기본계획	• 성인지 관점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추진 전략 및 방향, 정책 과제 제시 • 사회보장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사회보장 영역별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등
9	생활체감형 정책	• 우체국 편의시설 개선 • 성·재생산 건강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한편 공무원들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및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교육을 적극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집합교육과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총 51회(6,638명) 운영하였으며, 각 기관에서는 연중 별도의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22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 교육실적은 교육 유형별로 보면 비대면교육* 총 40회(2,543명)*, 희망하는 기관에 교육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교육은 총 11회(4,095명) 실시하였다.

* 공무원 대상 2097명, 컨설턴트 등 446명

|표 2-②-4| 2022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및 예결산 교육 기관별 실적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일 반 직						특 정 직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경찰, 소방	교육, 연구직	기타
전 체	2,097	1,808	43	154	349	652	610	289	31	125	133
중앙	245	190	14	48	61	38	29	55	29	6	20
지자체	1,483	1,349	20	68	248	476	537	134	2	24	108
교육청	369	269	9	38	40	138	44	100	-	95	5

또한 양성평등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연극형, 토크 콘서트, 사이버)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②-5| 2022년 성인지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형식	개요 및 대상	내용	인원
1	문화형 콘텐츠 교육 (연극, 토크콘서트)	중앙·지자체 공무원	음악, 미술, 문학, 대중문화 속의 양성평등, 생활 속 성차별 사례	11,629
2	사이버 교육	중앙·지자체 공무원	양성평등·성주류화 패러다임 등	115,400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심층 분석을 거쳐 내실 있는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처별 성평등 목표 사례 】

- (교육부) ①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②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광고에서 양성평등 콘텐츠 확산
- (고용노동부) 일자리 진입과 경력 유지 과정에서 성차별 해소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 포함

3.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키는 제도로,「국가재정법[2]」에 근거하여 2010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10년 5월「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는 기금에 대해서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상사업 및 추진일정 등의 차이로 인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에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두 제도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5년 2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3]되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 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2011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3년도 예산부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기재부 훈령, '20.10월 제정· '21.1월 시행)하여 그 동안 운영되었던 '성인지 예·결산 상설 협의체'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로 확대·개편하고,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內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2021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했던 성과평가를 2022년부터 평가 추진 체계로 실시하였다.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정부는 2009년에 29개 중앙행정기관의 195개 사업, 7.5조원 규모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정기회) 제출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284개 사업, 31.7조원 규모의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0년에는 304개 사업 35.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1년에는 341개 사업 27.3조원 규모의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2년에는 302개 사업 33.2조원 규모의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법(현,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표 2-②-6| 최근 4년간 성인지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수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사업수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사업수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사업수	예산액
예산	210	181,543	180,033	99.2	225	182,558	178,942	98.0	244	109,461	101,051	92.3	214	92,122
기금	74	170,538	166,016	97.3	79	190,260	183,821	96.6	97	162,104	158,575	97.8	88	239,696
합계	284	352,081	346,049	98.3	304	372,818	362,763	97.3	341	271,565	259,626	95.6	302	331,818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주요 특징은 고용위기 상황에서의 취업취약계층인 여성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유지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4]」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주류화 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이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한 사업을 별도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을 변경하였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의 사전관리 기능도 강화하였다.

기존	변경
■ 사업유형 • 성인지 사업유형 : (직접/간목)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여부 •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 사업유형 • 성인지 사업유형 : (직접/간목) • 성별영향평가 사업여부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여부 •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4)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2. 3. 22.]

|표 2-②-7| 2023년 국가 성인지 예산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업수	예산액
계	302	331,818
① 직접목적 사업	96	150,902
② 간접목적 사업	206	180,916

* 직접목적 사업 :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기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등)
* 간접목적 사업 :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2011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제도[5]가 도입됨에 따라, 2012년도에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하였다.

2017년도부터는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대상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에 따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5)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 3 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1. 여성단체 협력·지원

여성정책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01년부터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하였다. 주요 여성정책 사안에 대해 민간단체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13년까지 추진되었던 공동협력사업은 사업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과의 정책연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4년부터 각 국(관)별로 예산을 분리 편성하였다.

’22년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은 43개 신청단체 중 15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 유형은 ①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6개 사업), ②여성사회참여 확대(7개 사업), ③여성폭력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2개 사업) 3개 분야로, 선정단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22년도에는 참여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컨설팅 등의 맞춤형 지원과 투명한 예산 집행 및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단체별 사업내용과 결과 등을 담은 ’2022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사례집’을 제작하였으며, 사업 진행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 공모사업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 비영리단체가 성평등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유관 행사를 개최하여 국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2개의 비영리단체가 성평등 관련 국제 행사를 개최하여, 성평등 거버넌스를 확장하고 국제 역량을 강화하였다.

2.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가. 국제회의 참가

1) 제6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제6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선출한 이사국 및 기타 옵저버 국가, 국제기구 및 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환경 및 재난 위험 감소 관련 정책·프로그램 맥락에서의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and disaster risk reduction policies and programmes)'를 의제로 '22년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대표단과 국제기구는 주요 의제 관련 각국 정부의 주요 정책을 교류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은 6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부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바, 우리 수석대표(여성가족부 장관)는 3월 15일 오전에 실시한 장관급 원탁회의에서 선택 주제인 '기후변화, 환경 및 재난 위험 감소 정책·프로그램 : 글로벌 수준에서 지역 수준까지 통합적 행동을 통한 성평등 촉진'을 의제로 이루어지는 각국의 장관급 패널 간 발표 및 토론을 주재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15일 오후에 실시한 고위급 일반토의 연설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연대를 재차 강조하고 여성과 여아에게 미칠 폭력의 여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간계획을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정부 정책과 예산 과정에서 성주류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와 의사결정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이 수립·추진되었음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우리정부는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 2022 APEC 여성경제회의(APEC Women and the Economy Forum)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며 APEC 여성경제회의(APEC Women and the Economy Forum) 등 주요 국제회의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국제기구 등에서 주최하는 화상회의 참여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의 성평등 진전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교류하고 국제사회의 공조과정에 동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22.9.7.에는 APEC 21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 APEC 여성경제회의(화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2년 회의는 ‘BCG(바이오·순환·녹색)경제를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라는 의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 수석대표(여성가족부 장관)는 동 회의에서 BCG 경제로 대표되는 새로운 노동환경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등을 공유하였다.

3) 2022 G20 여성장관회의(G20 Ministerial Conference on Women's Empowerment)

'22년 G20 여성장관회의는 "젠더 격차 해소를 위한 함께 회복, 견고한 회복"을 주제로 '22년 8월 2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장관급 고위인사 및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 경제, 디지털 젠더 격차 해소, 여성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 등이 의논되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대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목표 아래 새일센터 신기술·고부가가치 분야 직업 훈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산업 기술 현장 참여 지원 등 여성의 미래 산업 진출 강화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나. 여성 관련 국제협약 이행 평가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정부는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 제출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동 보고서에서는 제8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18.2월) 이후 협약의 조항별로 정책 사례와 정책 성과 등을 수집·분석하였으며, 이전 국가이행보고서 심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2)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이행을 위한 제1기 국가행동계획('14~'17)과 제2기 국가행동계획('18~'20)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행점검회의(연 2회) 개최를 통해 그 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하였다.

특히 ’20년에는 제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재점검·보완하고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4월~11월)’, ‘공청회(11월)’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은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회복(Relief and Recovery), 이행점검(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5개 분야의 11개 목표,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분쟁예방, 평화, 활동, 국제개발협력 관련 종사자 여성·평화·안보 역량제고 △ 국방·외교·평화·통일·치안 분야에 여성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 확산 △ 군 관련 및 분쟁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처벌강화 △ 북한이탈 여성 및 난민 여성 지원 △ 분쟁 관련 피해자 회복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3기 국가행동계획의 신규 이행 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추가되어 총 10개 부처·기관이 국가행동계획 이행에 참여 중 이며, 기존 민·관 합동 이행점검(연 2회) 방식을 기관별 자체 이행점검(연 1회, 민간전문가 참여), 민·관 합동 이행점검(연 1회)으로 변경하여 이행기관별 과제 담당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이에, 분야별 이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행점검회의(연 2회)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양성평등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하였다.

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유엔여성기구(UN Women :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는 유엔 내 여성 이슈를 전담하는 유일한 기구로 ’11년 1월 공식 출범하였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있어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도적 역할 수행을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1년부터 매년 470만불 상당의 기여금을 동 기구에 제공하여 유엔 여성기구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유엔여성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12년) 및 부의장국(’18년) 활동 등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유엔위민 기여 순위 14위권(’21년 기준) 유지, 인력파견 등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이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정부는 유엔여성기구와 협의를 통해 「네팔 지진 피해여성 지원」, 「장애 여성·여아의 역량강화 지원」, 「코로나19 대응 성인지적 재정정책 및 회복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여아 대상 다양한 형태의 폭력 근절 및 포스트 코로나19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서울에 ‘UN Women 성평등 센터’(’22년)를 설립하였다. 동 센터는 교육훈련, 데이터 및 연구, 파트너십 구축 등 사업을 실시하며 아태지역의 맞춤형 성평등 의제를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 선도적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표 2-③-1| 여성가족부 – 유엔여성기구 간 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

분 류	주 요 내 용
목 적	• 유엔여성기구와 동 기구의 활동 수행 지원 • 당사자 간 협력체계 규정 및 공동 협력 업무 촉진
협력분야	•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 확대 • 여성, 특히 가장 소외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 • 평화, 안보, 구호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리더십 증대 • 계획 및 예산 편성의 모든 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대응성 강화
협력유형	• 공동 관심 분야의 세미나, 워크숍 및 기술연수 합동 개최 • 대한민국은 법과 규정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유엔여성기구의 사업이나 다른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및 비지정 기여금을 공여하고, 유엔 여성기구는 기구의 재정규칙과 규정에 따라 기여금 수령 및 집행 •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인적 자원 교류 • 기타 당사자 간의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된 유형의 협력
효력발생	• 2011.12.14.(당사자 대표가 서명한 날)
효력종료	•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 통보(3개월 후)

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2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KOWIN) 대회가 '22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세계 한인여성의 힘으로 열어갑니다.'를 주제로 22개국 347명의 재외 한인여성과 10여명의 국내 한인여성 및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기조강연에서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박은정 교수가 '디지털 전환 시대, 흐름을 따라가고 길목을 지켜라'를 주제로 대회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에서는 ▲경제·경영, ▲문화·예술, ▲과학·기술 세션을 통해 한인여성의 시각에서 디지털 전환시대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제활동 참여·소프트파워 확대·첨단분야 역량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활동분야별 네트워킹'에서는 세션별 전문가와 대회 참가자들이 함께 참가하여 각 분야(경제·경영, 문화·예술, 과학·기술)의 세계적 흐름을 살피고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지역담당관 회의에서는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지역사례를 공유하며, 재외 한인여성 간 연대·교류 및 지역본부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 여성 관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1)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개발도상국 여성·고용 분야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를 추진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2년도에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초청연수가 진행되었으며, 22개국 68명이 참가하였다. 한국의 여성정책 및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 강의, 관련 기관 학습, 액션 플랜 실습 등을 통해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개도국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하였다.

2) 인도네시아 여성 역량강화 지원

개도국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인도네시아에서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20~'24)'을 추진하였다.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

아동보호부(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지역의 여성 대상 전자상거래, IT, 봉제, 미용, 요리 과목의 직업훈련 교육 및 취·창업 연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인도네시아 공동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여성 역량강화 관련 정책 교류를 실시하였다.

3) 개도국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가 심각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여 개도국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경제적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개도국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13년~'18년 캄보디아에서 실시하였고, '19년~'23년 몽골에서 실시하고 있다.

'22년도에는 울란바토르(수도지역), 자민우드(국경지역), 우므느고비(광산지역)와 '19년 사전 조사를 통해 성매매 등 여성폭력이 많은 지역으로 조사 된 도르노고비, 더른너드 아이막 총 5개 지역의 학생, 학부모, 여성폭력 고위험 지역 마을주민, 취약계층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권,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 성착취 인신매매와 안전한 이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2,221명)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기술 교육(운전, 피부미용, 네일아트, 치위생사 등 15명)과 자립·자활 프로그램(40명) 등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몽골 현지 국민을 대상으로 몽골 내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5회, 언론, SNS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으며,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근절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몽골노동사회보호부, 몽골범죄예방조정위원회 등 몽골 정부, 언론 등 몽골 내 여론주도층이 참여한 정책 워크숍(1회, '22. 10월)을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의 ODA사업 종료 이후에도 몽골 내에서 독립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몽골 성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가이드라인'이 몽골노동사회보호부의 승인('22. 4월)을 얻어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및 전문가 124명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후속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4) 개도국 여성 대상 ODA 지원 사업

2022년도 기준 KOICA에서 시행한 성평등 사업(국별협력, 다자기구협력, 민관협력 등)은 총 317건(2,618.5억원/집행액 기준)이며, 이중 당해연도 신규발굴 사업은 70건이다. 이는 2022년 KOICA에서 시행한 사업 692건 중 건수 기준 45.81%, 집행액 기준 51.8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규모 기준으로 볼 때 분야별 투입은 여성경제자립 20.03%, 여성리더십 30.44%, 재난대응 22.06%, 디지털 격차 해소 5.61%, 젠더기반폭력 4.29% 순으로 이루어졌다.

바.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20년과 '21년에 이어 국제사회와 양성평등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외 여성 지위 향상 노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을 개최하였다.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지속 가능 발전 사회와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열린 양성평등 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의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각국 청년, 정부, 시민사회, 학계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과 돌봄의 사회적 분담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조연설에서는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 수석부총재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여성경제활동 확대'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세션 1은 각국의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세션 2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돌봄에 대해, 세션 3은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분야 여성 참여 제고에 대해, 세션 4는 사회가치경영(ESG)과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 4 절

양성평등기금 운용

1. 기금 조성 및 자산 운용

가. 기금 조성 등

'22년도에는 복권기금 전입금 5,956억원, 이자 및 기타수익 201억원 등 총 6,157억원의 수입과, 사업비 및 기타경비로 6,066억원이 지출되어 '22년도 말 현재 양성평등기금 조성액 누계는 약 448억원이다. 이는 전년 말 대비 91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표 2-④-1| 양성평등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조성내역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입	• 복권기금전입금	361,972	403,736	467,339	595,576
	• 일반회계전입금	47,233	7,064	-	-
	• 민간출연금	-	-	-	-
	• 운용수익	4,093	10,550	14,857	20,128
	소 계	413,298	421,350	482,196	615,704
지출	• 사업비 및 기타 기금관리비 등	414,314	417,518	474,240	606,626
순조성액		(1,016)	3,832	7,956	9,078
조성액 누계		23,948	27,780	35,736	44,814

※ 조성액 누계는 해당년도까지의 조성액으로 전년도 조성액 누계에서 해당년도 순 조성액을 합한 금액임

나. 자산 운용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하여 매년 자산운용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연기금투자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2년도 자산운용수익률은 2.33%로 기준수익률(2.21%) 대비 0.12%p 초과수익을 달성하였으며 '21년도 자산운용수익률(0.81%) 보다 1.52%p 증가하였다.

|표 2-④-2|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운용수익률

구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운용수익률(%)	1.73	1.02	0.81	2.33

2. 사업추진 현황

가. 총괄

'22년에는 여성·아동인권보호 프로그램에 629억 원,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프로그램에 5,321억원을 지출하였다. 이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에 따른 복권기금 전입금 5,956억원을 재원으로 하였다. '22년도 총 지출액은 5,949억원(복권기금 반납액, 여유자금 예치금 제외)이며 이는 '20년도 총 지출액 4,667억원에 비해 1,282억원(27.5%)이 증가한 규모다.

나. 주요 사업내용

'22년에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4,212억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61억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사업 55억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992억원을 투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와 자녀 성장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 178억원,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13억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358억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사업 75억원,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사업 5억원을 투입하여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확대 등 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④-3| 2022년 양성평등기금 주요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비고
합 계		595,620	596,081	594,946	-
기금관리비		3	3	3	-
사업비 총계		595,617	596,078	594,943	-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소 계	532,306	532,767	532,066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21,275	421,275	421,229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6,323	6,323	6,141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5,516	5,516	5,500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99,192	99,653	99,196	-
여성·아동 인권보호	소 계	63,311	63,311	62,877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7,758	17,758	17,758	-
	•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329	1,329	1,329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36,176	36,176	35,787	-
	•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7,548	7,548	7,528	-
	•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500	500	475	-

3. 2022년 기금사업의 특징

’22년도 재정 운용 결과, 총 수익은 6,157억원이 발생한 반면 사업비 등 총 비용은 6,066억원이 발생하여 91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22년도 총 수익과 총 비용은 전년도 대비 각각 27.7%, 27.9% 증가하였으며, 수익은 ’22년도 기금 전입금이 ’21년도에 비해 1,282억원, 지출은 사업비가 1,315억원 증가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2-④-4|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익	413,298	421,350	482,196	615,704
비용 (사업비 등)	414,314	417,518	474,240	606,626
당기순이익	(1,016)	3,832	7,956	9,078

제 5 절

양성평등 문화·의식 확산

1. 양성평등 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 및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정책의 수립은 물론 이를 확산·정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수행·지원하고 있다.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주요연혁은 아래와 같다.

- 2003. 3.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 2003. 8~9. 중앙·지방공무원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행정자치부)
- 2006.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특수법인 전환
- 2010. 7. 원격교육연수원 설립 승인(교육과학기술부)
- 2013. 1.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4. 6. 고양캠퍼스 개원

다. 운영현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원장, 정규직 59명, 공무직 65명으로 총 125명의 정원으로, 3본부, 1실, 1센터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⑤-1| 2022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원 현황

(단위 : 명)

직급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직	총계
정원	1	2	7	12	17	21	65	12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22년 예산 현황을 보면 총 수입 예산 12,618백만원 중 정부출연금(일반회계)이 81.8%, 자체재원이 18.2%이며, 총 지출예산은 인건비 46.2%, 경상운영비 6.1%, 사업비 46.3%, 예비비 1.4%를 포함하여 12,61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표 2-⑤-2| 2022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12,618	계	12,618
정부출연금* (일반회계)	10,326	인건비	5,828
		경상운영비	767
자체재원	2,292	사업비	5,839
		예비비	184

* 위탁금(320-02)「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제외

라. 주요 사업실적

1) 집합교육사업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22년 교육실적을 보면 성인지 정책, 전문인력 양성 등 2개 분야에서 자체교육 인원이 총 17,576명이었다. 교육별로는 성인지 정책 9,072명, 전문인력양성 8,504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276명(35.7%), 여성은 11,300명(64.3%)으로 여성 교육생이 남성 교육생에 비해 5,024명 더 많았다.

성인지 정책 교육인원은 9,072명(남성 3,467명(38.2%), 여성 5,605명(61.8%))으로, 이 중 3급 이상 및 4~9급 등 일반 공무원 6,631명, 군인 및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 1,407명, 별정·계약직 등 기타 공무원 344명,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 등 6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앙·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과 정책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및 성주류화제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사회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과 정책 기획·집행 과정의 양성평등 실천역량 제고에 기여하였다.

전문인력양성 중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의 교육인원은 3,130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교육인원이 각각 남성 330명(10.5%), 여성 2,800명(89.5%)으로 여성교육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전문강사 역량 기반 교육과정 재구조화로 신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총 959명의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가 활동 중이다('23년 1월 기준). 또한 고위직 대상 별도 예방교육 역량강화 등 특화 교육과정 기획·운영을 통해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의 양적·질적 확대에 집중하였다.

전문인력양성 중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은 5,374명(남성 2,480명(46.1%), 여성 2,894명(53.9%)이 참여하였으며, 고충상담원 업무 중요도 강화에 따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기획-운영, 단계별 고충처리 업무 매뉴얼·Q&A 사례집 개선·배포 등으로 고충상담원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였다.

|표 2-⑤-3| 2022년 교육별 집합교육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

구 분		교육 목표	교 육 실 적									달성률 (%)
			공무원			일반인			총 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성인지 정책		6,000	2,779	3,506	6,285	16	228	244	2,795	3,734	6,529	108.8
업무담당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교육		2,300	638	1,459	2,097	33	413	446	671	1,872	2,543	110.6
전문 인력 양성	전문강사 양성과정	3,100	149	469	618	181	2,331	2,512	330	2,800	3,130	101.0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4,460	1,112	1,494	2,606	1,368	1,400	2,768	2,480	2,894	5,374	120.5
합계		15,860	4,678	6,928	11,606	1,598	4,372	5,970	6,276	11,300	17,576	110.8

’22년도는 목표 인원(15,860명)을 1,716명 초과한 총 17,576명을 교육하여 110.8%의 달성률을 보였다. 한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품질 및 효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결과지표인 ‘양성평등 인식변화 수준*’을 ’18년 개발 후 적용하여 ’22년에는 3점 만점에 2.10점의 결과를 보였다.

* 양성평등 인식 변화 수준(점) : 교육생에 대한 양성평등 인식변화를 7단계(-3점~+3점) 척도로 조사한 평균값

2) 사이버교육사업

사이버교육은 공공기관 종사자, 교원, 대학교직원, 공무원, 일반인 대상의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교육(141,222명)을 실시하였다.

학교부문에 대한 폭력예방 사이버교육의 무료화 정책 시행과 양성평등 열린 교육의 상시연수 체제 확대 운영을 통하여 교육접근성을 제고하였다.

교원 대상 원격교육연수원은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연수(7,064명)를 추진하였고, 선진적·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22년 교육부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결과 공공 원격교육연수원 최초 5회 연속 '최고등급'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학습경험의 제공, 학습의 몰입도와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의성 있는 주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이러닝 특강을 운영하였다.

3) 모바일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VR, 3D 기법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인스타툰 협업을 통한 웹툰, 국민의 아이디어 기반 콘텐츠, 양성평등 변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입문 콘텐츠 영상, 시의성 있는 카드뉴스 등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모바일 교육콘텐츠 총 60건을 개발하였다.

또한 콘텐츠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가·수요자 감수단 운영 의무화와 3년 경과 콘텐츠 품질관리, 콘텐츠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민 맞춤형 플랫폼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언론매체 협업, SNS 활용 광고, 월간 뉴스레터 발송 등 효율적인 콘텐츠 확산을 도모하고, 기관과 단체에 콘텐츠 활용 지원을 통해 홍보 영역을 다각화하는 등 전 국민 대상의 콘텐츠 배포·확산을 추진하였다.

4) 양성평등교육 맥락적 표준화 및 질 제고

아동·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대상의 일상 맥락에 기반한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양성평등교육 생애주기별,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추진하였다. 대상의 특성에 맞춘 교육내용 구성과 대면과 비대면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교육환경에 맞춘 영상 및 연계 활동지 개발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형식 다변화로 콘텐츠 실효성과 공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22년에는 학교 공동체 중심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유·초·중등 교사가 수업에 활용 가능한 양성평등 교육 수업자료, 양성평등 교육의 주요 전달 주체인 교사, 양육자 대상 콘텐츠, 영화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등 총 14종의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또한 교사 등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전달자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콘텐츠를 보급하고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5)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 지원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및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운영·지원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22년에는 양성평등 연구학교 사업 대상으로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 학교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례를 발굴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정 연구·중점·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와 컨설팅 프로그램 등 학교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지원을 시행하여 각 학교의 교육활성화 및 운영성과가 향상되는데 기여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양성평등한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2022년 제13회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전은 여성가족부·

교육부·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의 후원을 받아 아동·청소년 대상 글과 그림을 공모하였다. 접수작품 1,822점 중 여성가족부 장관상 등 총 100점을 시상하여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또한, 전년도 수상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활용한 공모전 홍보 및 간담회에 주요 수상자를 참여시키는 등 공모전의 운영 전반에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상작을 양성평등 교육 자료, 행사, 캠페인에 활용토록 지원하여, 일상 속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6)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비춰주는 대중매체 속 재현은 파급력이 높아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 장르, 주제별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성평등 미디어 교육, 캠페인 등 미디어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2년에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메타버스 게임기반 2차 저작 영상, 모바일 게임 광고 등 유튜브, 뉴미디어 채널과 같이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 콘텐츠 등 이용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다양한 콘텐츠에 자동적으로 노출되고,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양성평등 내용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길었던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 삶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기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양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성평등 미디어 포럼을 개최하여 국민들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실시간 댓글 참여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도 가졌다.

한편, 방송·언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언론인과 방송·통신 심의 모니터단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성평등 미디어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뉴미디어 채널과 협업하여 대중 친화적인 양성평등 미디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 매체, 접근을 고려한 인식개선 활동 다각화로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수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7)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전국 단위 양성평등교육·진흥사업의 협력모델인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정책기관, 정책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년 현재 17개 시도,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 및 실무 협의회 각 2회(총 4회) 개최를 통해 회원기관 간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운영하였다. 10개 기관이 참여한 공동협력사업은 교육사업 및 워크숍,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며, 전국적인 사업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협력·연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회원기관 간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관련 프로그램과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정보 및 동향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국적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한편, 국외 양성평등정책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으로는 '아시아 젠더전문가 양성평등 및 협력(AGenT)'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축적된 전문 강사 훈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양성평등 트레이너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역량강화 사업이다. 학습자 수준 및 교육 목적별 맞춤형 과정 운영을 계속하였으며 체계적 M&E(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질적 관리에도 힘썼다. 국외공무원 양성평등 정책 교육사업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양성평등 역량 강화 및 정책

과정을 실행하는 한편 국내 양성평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육 대상을 다각화하였다. 한편 정치 및 선거 관련 법 개정으로 여성과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강화하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주제 : 청년(청소년) 및 여성의 정치적 참여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개최하여 국내외 양성평등 교육 및 진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2. 양성평등주간 운영

양성평등주간(9. 1.~9. 7.)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기간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근거로 지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15. 7월)에 따라 '96년부터 운영되던 여성주간이 '15년부터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되었고, '19년 여권통문의날(9.1.)이 제정되며 이를 함께 기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주간이 변경(7월 첫째주 → 9월 첫째주) 되었다.

가.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22년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9.1.)은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을 슬로건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양성평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의 주제영상 상영 및 유공자 포상 등의 온라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기념행사를 통해 일상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노력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고취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표 2-⑤-4| 역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구 분	2019년 양성평등주간	2020년 양성평등주간	2021년 양성평등주간	2022년 양성평등주간
일시	2019. 7. 4.(목)	2020.9.2.(수)	2021.9.1.(수)	2022.9.1.(목)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온라인 기념식	온라인 기념식
주최 (주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참석인원	500여명	10여명*	300여명*	170여명*
주요인사	국무총리 및 수상자 등	장관 및 수상자 등	국무총리, 국회부의장 등(영상)	장관 및 수상자 등(영상)
주제	평등을 일상으로 – 함께 한 100년, 함께 할 100년	성평등을 향한 지금, 여기서의 한 발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사규모 축소('20) 및 온라인 기념식 개최('21, '22)

나. 유공자 포상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하여 훈장 2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35명 등 총 명을 대상으로 시상하였다.

|표 2-⑤-5| 2022년 양성평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2022년 양성평등주간	51	2	2	6	6	35

다. 양성평등주간 홍보

주제영상 및 슬로건 제작·배포와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별 기념행사 운영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각종 통계발표 및 국립여성사전시관 특별기획전 개막 등 연계행사 홍보 등을 통해 양성평등주간에 대한 의미 확산과 가치를 공유하였다.

3.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공헌한 대중매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남녀평등상'은 '99년 제정된 이래, '22년 24회를 맞이하였다. '12년 상명이 '양성평등상'으로 변경되었으며 '13년에는 시상분야를 보도부문으로 확대하였다. '15년 '양성평등 미디어상'으로 상명을 바꾸었으며, 방송부문과 보도부문에 대한 시상을 현재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

가. 방송부문

방송부문은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방영된 지상파 및 유선 방송사(라디오 방송 포함) 등에서 제작 편성한 프로그램 중 양성평등 문화 실천과 의식 제고에 기여한 작품을 시상하였다.

수상작은 각 방송사에서 출품한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심사(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14편을 선정하였다. 대상(대통령상)은 KBS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 특집 2부 '테티아나의 일기'〉가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은 SBS 〈골 때리는 그녀들〉외 6편이 수상하였다.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은 JTBC 〈구경이〉 외 5편이 수상했다.

나. 보도부문

보도부문은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보도된 신문, 주간지 등 보도 매체의 기사 중 양성평등 문화 실천과 의식 제고에 기여한 작품을 시상하였다.

수상작은 각 언론사에서 출품한 보도물 가운데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심사(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7편을 선정하였다. 대상(국무총리상)은 경향신문 〈[젠더기획]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은 부산일보 〈부산숨비-부산 해녀 숨비소리 기록 프로젝트〉 외 2편이 수상하였다.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은 중도일보 〈대전역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 ‘도시재생리포트 2021’ 등 12편〉 외 2편이 수상했다.

제 6 절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성과

정부는 ’17년도에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18~’22년)」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17.11월)하였다. 동 계획에서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과장급 임용 확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가 추진과제로 최초 포함되었으며, 각 부문별 ’22년까지 달성 목표를 확정하였다. 이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이행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⑥-1| 공공부문별 여성 대표성 추진실적(2021~2022년)

(단위 : %, 각연도 12.31일 기준)

부 문	2021년	2022년
고위공무원단	10.0	11.2
본부 과장급(4급 이상)	24.4	26.4
지방 과장급(5급 이상)	24.3	27.4
공공기관 임원	22.5	23.6
공공기관 관리자	27.8	28.8
지방공기업 관리자	11.8	12.9
국립대 교수	18.9	20.2
교장 교감	45.8	46.4
군인 간부	8.2	9.0
일반경찰	14.2	15.1
해양경찰	14.5	16.6
정부위원회	42.4	41.4

2022년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주요분야에서 당초 수립한 목표 대비 최종 목표가 대폭 상승하였다. 특히 '19년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이 20%를 상회한 데 이어, 지방과장급(27.4%)은 2022년 목표까지 조기에 달성하여 전년도(24.3%)에 비해 3.1%p 증가하는 등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성과가 확산되었다. '22년에는 후보자풀 확충, 인사교류 등 적극적 임용 노력으로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이 11.2%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그간 여성의 진출이 저조하였던 군·경찰 분야에서도 '20년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인사·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다수 이루어졌다. 우선, 균형인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균형인사 성과 공유대회('22.11.)'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여성·장애인·이공계·사회통합형 인재 등 균형인사 통계를 총망라한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22.9.)하고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를 제도화('20.1)하는 등 균형인사 확대 추진기반을 강화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인사 확대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19.6.18, '19.11.5)」,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19.6.18)」,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19.11.5)」 등 개정을 통해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 40%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6.18)으로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가 전면 시행('19.7.1)됨에 따라 각 기관별(공기업·준정부기관) 5개년('21~'25)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의 이행력 제고와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지속 추진('21.151개→'22.158개)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한 조직과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양성평등 및 균형 인사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지방공기업 평가 항목으로 추가('22.12.)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7단계(2022~2024) 추진계획에 따라 국립대학 학부·학과별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 대학 구성원의 양성평등 관심도 제고 및 인식 확산을 도모하였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따라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이 '22년 46.4%로 증가하였다. 한편, 4대 과학기술원법 개정('19.8)을 통해 "양성평등 교원 임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2020년에 처음 수립한 이래 2021년에도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별 여성교원 신규임용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수립('21.3월)하였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19.5.27)과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2년)」 수립('20.1) 등을 통해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 군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과 여군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하는 한편, 여군 필수시설 설치 및 군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보육시설 확충으로 군 내 일·가정 균형을 위한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여건을 조성하였다.

경찰 분야에서는 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주요 직위에 여성 임용을 확대하였고, 경찰 역사상 최초 여성 경찰대학장이 임명되는 등 여성경찰과 여성 해양경찰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났다. 일반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남아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을 시행('20)하고, 경찰 공무원 채용 시 남녀통합선발을 위한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근거를 마련('21년)하였다.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정('20.2)으로 인사

위원회 구성 시 여성경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 경찰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성평등 조직 기반 조성과 해양치안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해양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21.3)하였다.

2. 여성공무원 현황

가. 전체 여성공무원 현황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년 말 현재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을 통틀어 여성공무원은 576,632명으로 전체 공무원 1,173,022명의 4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1년 562,018명과 비교하여 볼 때 14,614명이 증가한 것이다.

|표 2-⑥-2|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9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인원	978,087 (+9,251)		1,113,873 (+28,024)	1,134,995 (+21,122)	1,156,326 (+21,331)	1,173,022 (+16,696)
여성	400,571 (+5,107)		526,700 (+19,673)	543,151 (+16,451)	562,018 (+18,867)	576,632 (+14,614)
비율	41.0		47.3	47.9	48.6	49.2

※ 출처 : 인사혁신처, 2022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나. 직종별 및 계급별 여성공무원

1)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765,090명 중 여성은 370,758명으로 48.5%를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직이 180,024명 중에서 여성이 70,369명으로 39.1%, 특정직은 584,413명 중에서 300,184명으로 51.4%, 별정직은 523명 중 190명으로 36.3%를 차지하였다.

|표 2-⑥-3| 2022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 명, %)

구 분	현 원		
	전 체	여 성	여성비율(%)
합 계	765,090	370,758	48.5%
정무직 계	130	15	11.5%
일반직 계	180,024	70,369	39.1%
고위공무원	1,131	122	10.8%
3급	855	137	16.0%
4급	6,576	1,589	24.2%
5급	16,432	4,762	29.0%
6급	34,972	12,755	36.5%
7급	45,434	21,487	47.3%
8급	22,575	11,172	49.5%
9급	16,126	7,744	48.0%
전문직	218	52	23.9%
연구직	6,155	2,865	46.5%
지도직	125	46	36.8%
우정직	23,417	4,403	18.8%

구 분	현 원		
	전 체	여 성	여성비율(%)
전문경력관	1,156	452	39.1%
시간선택제	1,511	1,278	84.6%
일반임기제	2,062	891	43.2%
전문임기제	952	355	37.3%
한시임기제	327	259	79.2%
특정직 계	584,413	300,184	51.4%
외 무	2,186	931	42.6%
경 찰	144,697	20,982	14.5%
소 방	64,498	6,642	10.3%
검 사	2,163	727	33.6%
교 육	370,869	270,902	73.0%
별정직 계	523	190	36.3%

※ 출처 : 인사혁신처, 2022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국가공무원 중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356명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1년 2,165명(전체의 21.5%)와 비교하여 볼 때 191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의 여성공무원도 175명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표 2-⑥-4|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 성	1,380	1,531	1,735	1,903	2,165	2,356
비 율	14.8	16.2	18.0	19.5	21.5	23.2

※ 출처 : 인사혁신처, 행정부 국가공무원 2022년 인사통계

※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 기준, 일반(연구·지도직, 일반임기제포함)·외무·별정직

|표 2-⑥-5| 중앙행정기관 여성 고위공무원단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 성	98	102	122	132	160	175
비 율	6.5	6.7	7.9	8.5	10.0	11.2

※ 출처 : 인사혁신처, 행정부 국가공무원 2022년 인사통계
※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원 제외, 지자체 근무 국가공무원 포함

2)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308,879명 중 여성공무원은 152,509명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 여성공무원 수와 비율은 일반직 152,089명(49.5%), 특정직 256명(27.3%), 별정직 156명(23.2%), 정무직 8명(2.8%)이다.

|표 2-⑥-6| 2022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지방자치단체		
		전 체	여 성	비 율
계		308,879	152,509	49.4%
일반직	소 계	306,989	152,089	49.5%
	고위공무원	39	2	5.1%
	1급	5	1	20.0%
	2급	92	3	3.3%
	3급	418	39	9.3%
	4급	3,315	548	16.5%
	5급	19,525	5,681	29.1%
	6급	83,888	38,499	45.9%
	7급	81,472	41,458	50.9%
	8급	55,398	32,353	58.4%
	9급	43,896	24,368	55.5%
	연구관	725	229	31.6%

구 분		지방자치단체		
		전 체	여 성	비 율
	연구사	3,557	1,975	55.5%
	지도관	472	191	40.5%
	지도사	3,984	1,780	44.7%
	시간선택제(채용)	2,099	1,567	74.7%
	전문경력관	583	71	12.2%
	전담직위	39	5	12.8%
	일반임기제	7,351	3,300	44.9%
	전문임기제	131	19	14.5%
특정직	소 계	937	256	27.3%
	교육직	777	232	29.9%
	자치경찰	160	24	15.0%
정무직		281	8	2.8%
별정직		672	156	23.2%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직공무원 포함

지방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7,109명으로 전체 5급 이상 공무원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21년 6,171명 대비 938명 증가하였다.

|표 2-⑥-7|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 성	3,137	3,631	4,325	5,165	6,171	7,109
비 율	13.9	15.6	17.8	20.8	24.3	27.4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일반(연구·지도직, 일반임기제포함)·별정직 공무원 대상

다.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및 육성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

'03년부터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하한 성적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인사혁신처 주관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행정안전부 주관 7·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선발단위에 적용된다(단,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2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211명으로, 5급 3명, 7급 18명, 9급 190명이다. 이중 여성은 5급 3명, 7급 13명, 9급 150명으로 총 166명이고 남성은 5급 0명, 7급 5명, 9급 40명으로 총 45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2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394명으로 '21년 290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 중 남성이 323명으로 82.0%를 차지해 남성의 추가합격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표 2-⑥-8| 2022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가합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5급			7급			9급(지방 8·9급)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국가직	211 (100)	45 (21.3)	166 (78.7)	3 (100)	0 (0)	3 (100)	18 (100)	5 (27.8)	13 (72.2)	190 (100)	40 (21.1)	150 (78.9)
지방직	394 (100)	323 (82.0)	71 (18.0)	-	-	-	10 (100)	4 (40)	6 (60)	384 (100)	319 (83.1)	65 (16.9)

※ 출처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내부자료

2)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정부가 여성공무원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전체적인 여성공무원 비율은 높아졌으나, 여성관리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공직 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1차 '07~'11, 2차 '12~'17)에 이어 2018년부터는 대상을 고위공무원단과 본부과장급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은 '21년 10.0%로 역대 최초로 두 자릿수에 진입하는 동시에 당초 '22년 임용 목표비율까지 조기 달성하여 '22년 임용 목표비율을 상향하였다. 본부과장급 여성비율도 '19년 20.8%로 당초 '21년 임용 목표비율 19.8%를 조기 달성하여 향후 3개년('20~'22년) 임용 목표비율을 도전적으로 재수립한 바 있다.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의 경우 '22년 11.2%로 '18년 6.7% 대비 4.5%p 증가하였고, 본부과장급 여성비율의 경우 '22년 26.4%로 '18년 17.5% 대비 8.9%p 증가하는 등 4년 연속 임용목표 비율을 초과달성하면서 공직 내 여성관리자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2-⑥-9| 중앙행정기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단위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위공무원단 목표	6.8	7.2	8.2	9.6	10.2
고위공무원단 실적	6.7	7.9	8.5	10.0	11.2
본부과장급 목표	15.7	18.4	21.0	23.0	25.0
본부과장급 실적	17.5	20.8	22.8	24.4	26.4

※ 출처 :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 또한 여성공무원이 성평등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당초 ’22년까지의 21%였던 임용 목표비율을 24.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17~’22년)」을 변경하는 등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한편, 그간의 노력으로 ’17년 말 13.9%였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22년 말 기준 27.4%까지 확대되었다.

|표 2-⑥-10|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단위 : %)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13.0	13.9	15.9	18.6	21.5	24.5
실적	13.9	15.6	17.8	20.8	24.3	27.4

라. 여성교원의 지위 향상

시·도 교육청에서는 여성 교장·교감 임용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추진하여 ’22년 4월말 기준, 초·중등학교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전체의 46.4%(교장 44.0%, 교감 48.8%)까지 확대되었다.

|표 2-⑥-11| 여성교장·교감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교 장			교 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2013. 4.	9,499	1,671	17.6	9,586	3,517	36.7	19,085	5,188	27.2
2014. 4.	10,116	2,020	20.0	10,162	3,940	38.8	20,278	5,960	29.4
2015. 4.	9,590	2,378	24.8	9,602	4,195	43.7	19,192	6,573	34.2
2016. 4	9,641	2,768	28.7	9,616	4,436	46.1	19,257	7,204	37.4
2017. 4.	9,693	3,178	32.8	9,648	4,674	48.4	19,341	7,852	40.6
2018. 4.	9,723	3,516	36.2	9,672	4,772	49.3	19,395	8,288	42.7
2019. 4.	9,763	3,804	39.0	9,718	4,792	49.3	19,481	8,596	44.1
2021. 4.	9,979	4,195	42.0	9,922	4,914	49.5	19,901	9,109	45.8
2022. 4.	10,026	4,409	44.0	9,981	4,866	48.8	20,007	9,275	46.4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 해당연도

’22년 기준 4년제 대학에서의 여성 교수의 비율은 ’21년 25.5%에서 ’22년 26.1%로 0.6%p 상승하였으며, 국·공립 대학 여성 교수 비율은 ’21년 18.4%에서 ’22년 19.3%로 0.9%p 상승하였다.

|표 2-⑥-12| 4년제 대학/대학원 교수 성별 구성비 변화

(해당연도 4.1.기준, 단위 :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제 대학 교수	계	74,277	73,389	73,683	74,781	73,905
	남성	56,882	55,837	55,517	55,730	54,626
	여성	17,395	17,552	18,166	19,051	19,279
	여성비율	23.4	23.9	24.7	25.5	26.1
국공립대 교수	계	19,775	19,868	20,021	20,239	20,446
	남성	16,550	16,510	16,487	16,505	16,509
	여성	3,225	3,358	3,534	3,734	3,937
	여성비율	16.3	16.9	17.7	18.4	19.3
사립대 교수	계	54,502	53,521	53,662	54,542	53,459
	남성	40,332	39,327	39,030	39,225	38,117
	여성	14,170	14,194	14,632	15,317	15,342
	여성비율	26.0	26.5	27.3	28.1	28.7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 해당연도(상반기) 학교/학과별 데이터셋(4년제 일반대학 + 교육대학 + 산업대학 + 방송통신대학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설치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3.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마련하였다(舊 여성발전기본법, ’13년 개정).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이하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참여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는 성별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년 기준 조사부터 기초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 심의를 광역지자체에 부여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법률·법령에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와 함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양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자치법규(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까지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개선권고 기준을 여성비율 20% 미만인 위원회에서 '18년도 실적 기준 조사부터 40% 미달성 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 '20년 실적 기준 조사부터 남성 위원 40% 미달성 위원회에도 개선권고를 함으로써 위원회 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22년도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531개의 위촉직 위원 9,398명 중 여성은 3,586명으로 여성참여율은 41.4%이며, '21년도 여성참여율 42.4% 대비 1.0%p 감소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22년도 이행 상황 점검 후 성별참여 확대가 필요한 91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확대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1년도 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20년도 41.8% 대비 0.7%p 상승한 42.5%를 기록하였다.

|표 2-⑥-13|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위원회 수 (개)	위촉직 위원 수(명)			여성참여율 (%)
		전체인원	남 성	여 성	
2017년	436	7,901	4,873	3,028	40.2
2018년	503	9,060	5,512	3,548	41.9
2019년	516	8,700	5,178	3,522	43.0
2020년	536	9,129	5,522	3,607	43.2
2021년	565	9,450	5,685	3,765	42.4
2022년	531	9,398	5,812	3,586	41.4

※ 출처 : 여성가족부·중앙행정기관, 각 당해연도 12월말 기준
※ 여성참여율 :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중앙부처는 2016년부터 지자체는 2017년부터 적용)

|표 2-⑥-14|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위원회 수 (개)	위촉직 위원 수(명)			여성참여율 (%)
		전체인원	남 성	여 성	
2016년	16,321	165,701	112,124	53,577	32.3
2017년	16,015	167,985	108,471	59,514	36.4
2018년	16,319	168,611	104,514	64,097	39.8
2019년	17,746	182,800	110,829	71,971	41.4
2020년	18,589	193,831	116,541	77,290	41.8
2021년	19,340	201,243	119,998	81,245	42.5
2022년	20,523	210,176	125,359	84,817	42.7

※ 출처 :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각 당해연도 12월말 기준
※ 여성참여율 :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중앙부처는 2016년부터 지자체는 2017년부터 적용)

4.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으로 설립한 기관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공공 및 민간에서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13년 5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이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2018년부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확대(300인 이상 기관, ’19년 전체 기관)되었다.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비율은 ’16년 37.31%에서 ’22년 43.61%로, 여성관리자 비율은 ’16년 16.44%에서 ’22년 22.40%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표 2-⑥-15|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근로자	37.31	38.27	38.55	39.92	41.71	42.70	43.61
여성관리자	16.44	16.47	17.28	18.79	20.69	21.53	22.40

※ 출처 :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황자료

아울러, 민간부문 의사결정직위의 성별균형 수준 개선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상장법인의 성별임원 현황을 연구하였고, 기업별 맞춤형 성별균형 포용성장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였으며(2022년 40개 기업 지원),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비율은 ’19년 4.0%에서 ’20년 4.5%, ’21년 5.2%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⑥-16| 여성임원 증감현황

(단위: 명, 개社, (괄호%, %p)) (증감은 전년대비('21~'20))

구분	연도	성별 임원 현황(사람)			여성 임원 선임 여부(기업)		
		계	남	여	계	선임	비선임
상장 법인	'19년	29,794	28,595	1,199	2,072	665	1,407
		(100)	(96.0)	(4.0)	(100)	(32.1)	(67.9)
	'20년	30,797	29,402	1,395	2,148	720	1,428
		(100)	(95.5)	(4.5)	(100)	(33.5)	(66.5)
	'21년	32,005	30,337	1,668	2,246	815	1,431
		(100)	(94.8)	(5.2)	(100)	(36.3)	(63.7)
	증감	1,208	935	273	98	95	3
		(0.0)	(-0.7)	(0.7)	(0.0)	(2.8)	(-2.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HAPTER

3

일·생활 균형 확산

제1절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115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115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118
3.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123

제2절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127
1. 모부성보호 제도 강화 127
2.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132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37

제 1 절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보육료 지원

1)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데 비해 '22년 말 현재 전체 시설 중 차지하는 비중은 18.8%이고, 이용 아동 비율은 25.3%이다.

|표 3-①-1| 2022년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시설수	30,923 (100.0)	5,801 (18.8)	1,254 (4.1)	610 (2.0)	9,726 (31.5)	12,109 (39.2)	132 (0.4)	1,291 (4.2)
아동수	1,095,450 (100.0)	276,670 (25.3)	64,503 (5.9)	27,743 (2.5)	477,628 (43.6)	184,053 (16.8)	3,203 (0.3)	61,650 (5.6)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기존 신축 방식 이외 매입,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하였으며, 2022년 목표 550개소 대비 493개소를 확충하였다.

아울러 오래되고 협소한 어린이집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된 어린이집 537개소에 대한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기능보강비 등 국고 기준 9,615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3-①-2| 연도별 어린이집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17,849	9,064	8,785	17,594	8,937	8,657	18,927	9,615	9,312
종사자 인건비	17,075	8,674	8,401	17,075	8,674	8,401	18,468	9,382	9,086
시설기능보강비	396	198	198	138	69	69	78	39	39
교재교구비	185	94	91	185	94	91	185	94	91
차량운영비	193	98	95	196	100	96	196	100	96

※ 국비는 예산(추경 및 예비비 포함), 지방비는 확정내시 기준

2) 보육료 지원

’12년 3월부터 만 0~2세 및 만 5세 아동에 대하여 소득 계층에 구분 없이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한 데 이어, 만 3~4세 유아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도입 확대에 따라 ’13년 3월부터는 소득 계층에 구분 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더불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장애아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적정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보육의 질 제고

및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지원체계를 개편('20년 3월)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시간을 기본보육(09:00~16:00)과 연장보육(16:00~19:30)으로 나누고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하여 '22년 12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74.1%가 운영하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095천명 중 565천명(재원 아동 중 51.6% 수준)이 연장보육을 이용하였다.

|표 3-①-3| 보육료 지원대상 추이

구 분	2011년 3월	2012년 3월	2013년 3월~
만 0세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全 계층	全 계층
만 1세		全 계층	
만 2세		全 계층	
만 3세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만 4세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만 5세		全 계층	

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이에 과거에 비해 장시간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의 정서 발달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22년 4월 시도제출자료 기준 4,898개의 국·공립 유치원과 3,266개의 사립 유치원 총 8,164개원 중 8,150개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전체 유치원 대비 99.8%)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 492천여명에게 방과후 과정비(약 3,462억원)를 지원하였다. 특히 방과후 과정 중 유아의

놀이와 휴식을 보장하는 방과후 놀이쉼터 운영('22년 600개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저해된 유아 행복감 회복 및 언어·정서·신체발달 등을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 학부모 대상으로 맞춤형 놀이코칭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추가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아침·저녁·온종일 돌봄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안전한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맞벌이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을 통한 양육기능이 약화되고 아동연령, 삶의 방식 등에 따라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시설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영아나 방과 후 홀로 집에 있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중장년 여성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13년도에는 「아이돌봄지원법」에 '서비스 우선 제공'과 '서비스 유형 다양화' 근거가 신설되어 취약계층 돌봄 지원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돌봄 제공을 추진하였으며, '14년도에는 영아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한 가정 내 1:1 개별 양육을 활성화하고자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 연령을 0세에서 1세로 확대하였다. '17년에는 2세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이 확대됨과 더불어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출산·보육과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8년에는 예산 확보를 통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크게 인상함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상향(각 5%p)하고, 시간제 정부지원시간을 확대(연 480시간 → 연 600시간)하였다.

그리고, ’19년에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정부지원비율을 최소 5%p 이상 상향하였으며, 시간제 정부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여 이용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보미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하였다.

특히, ’19년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에서의 검증 강화, 교육체계 개선,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에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시설의 휴원/휴교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방역 인력이 자녀의 돌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한시적 특별지원을 실시하였다.

’20년 5월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과 아동학대를 행한 아이돌보미의 제재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적성·인성검사 도입, 이용자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실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1년 → 3년) 등을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하였다.

’21년에는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모바일 앱에 ‘돌봄페이’, ‘돌봄톡톡’ 기능을 도입 등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율 증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돌봄페이는 정부서비스 최초 모바일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로,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료 실시간 결제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이용료 납부에 최소 1~2일의 기간이 소요되던 것이 실시간 결제로 개선되어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또한 돌봄페이 이용 시에는 은행을 통해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일시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돌봄톡톡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모바일앱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1:N 방식의 채팅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돌봄톡톡을 통해 일시연계가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돌봄 참여 의사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돌보미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돌봄페이와 돌봄톡톡 기능 구축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진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가구 및 연계율이 상승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 ('20.1~12월) 89.5% → ('21.1~12월) 91.9%(↑2.4%p)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수 : ('19) 70,485가구 → ('20) 59,663가구 → ('21) 71,789가구

'22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연구 및 교육기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지원센터'와 광역 단위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및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등을 수행하는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시작하는 등 효과적 정책수립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민간 육아도우미 대상으로 시범운영('22.10.~ 11.)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의 양성교육 통합 과정을 계획하는 등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은 크게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되며, 그 밖에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는 종합형,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출장, 야근,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놀이 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의 출산휴가 만료 후 직장 복귀 시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만 2세 이하 아동(생후 3~36개월 이하)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위생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가구는 '17년 63,546가구(시간제 58,489가구, 영아종일제 5,057가구)에서 '18년 64,591가구(시간제 60,053가구, 영아종일제 4,538가구), '19년 70,485가구(시간제 66,783가구, 영아종일제 3,702가구)로 증가하였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9,663가구(시간제 56,525가구, 영아종일제 3,138가구)로 감소하였다. '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의 노력으로 이용 가구 수가 71,789가구(시간제 69,172가구, 영아종일제 2,617가구)로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22년에는 78,212가구(시간제 75,752가구, 영아종일제 2,760가구)로 이용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3-①-4|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시간 당 10,550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취학전		취학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84.1만원)	8,968원 (85%)	1,582원 (15%)	7,913원 (75%)	2,637원 (25%)
나형	120% 이하 (614.5만원)	6,330원 (60%)	4,220원 (40%)	2,110원 (20%)	8,440원 (80%)
다형	150% 이하 (768.2만원)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5%)	8,967원 (85%)
라형	150% 초과	-	10,550원 (100%)	-	10,550원 (100%)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조손·청소년부모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제보육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며 가정에서 영아(6~36개월 미만)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 시간제근로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받은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이다.

2019년 490개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하여 총 37만건, 133만시간의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20년 시간제보육반을 681개 반으로 확대하였으나,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이용되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은 일시적으로 총 14만건, 51만 시간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 857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총 20만 건, 76만 시간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946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서비스 이용이 총 35만 건, 135만 시간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통합반 1차 시범사업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운영하였으며('23년 2월 기준 125개 반), 2차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200개 반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3.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 주택 등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에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내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개·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매입·임차하거나 운영 중인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시설 전환 시 4억원(공동 20억원 한도), 교육교구비 7천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있다. '22년은 시설비와 교재교구비로 110개 사업장에 19,71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3-①-5|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 도	융 자		무 상 지 원	
	사업장수	금 액	사업장수	금 액
2013년	11	3,253	103	23,134
2014년	4	1,308	93	23,676
2015년	5	1,096	114	28,709
2016년	5	1,681	144	36,904
2017년	-	-	153	40,538
2018년	2	350	122	36,125
2019년	4	828	134	48,974
2020년	2	270	120	28,211

※ 설치비 융자는 '20년도부터 신규지원 중단

또한 ’12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건립비(증·개축 등) 및 설치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최고 20억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교육교구 및 장비 구입비 등을 70백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12년 2개소, ’13년 9개소, ’14년 12개소, ’15년 12개소, ’16년 20개소, ’17년 27개소, ’18년 26개소, ’19년 33개소, ’20년 23개소, ’21년 10개소, ’22년 25개소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였다.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5인 이상 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유급 고용일수가 20일이 넘는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의 인건비를 월 6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38만원)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경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2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로 574개소(8,639건) 13,008명에게 77,30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는 133개소, 3,97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3-①-6|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기준

연 도	지원 기준	지원 대상
2014년	보육교사 등의 월 평균 근무시간	대규모 기업 월 80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만
2016년		대규모 기업 월 60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규모 기업 월 60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38만

|표 3-①-7|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사업장수	지원건수	금 액
2013년	299	3,745	34,592
2014년	334	4,476	45,769
2015년	367	4,925	52,376
2016년	437	6,508	55,435
2017년	481	7,393	60,624
2018년	512	7,739	65,517
2019년	519	7,719	67,770
2020년	547	7,982	70,004
2021년	573	8,564	74,330
2022년	574	8,639	77,303

아울러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12년 7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의무 부과대상 사업장 총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1,088개소)하거나, 위탁보육(378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부터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공공 직장보육시설 24개소(안산, 창원, 서울 금천, 인천 서구, 대전, 대구, 동해, 광양, 천안, 청주, 부산, 수원, 정읍, 경주, 부천, 군포, 조치원, 울산, 진해, 포항, 인천 남동구, 제주, 군산, 고양)를 운영하고 있으며, '09년부터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원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공공 직장보육시설은 모두 12시간 종일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규모와 보육 수요에 따라 야간 보육, 방과 후 반 등도 운영하고 있다.

’18년부터는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육지원을 위해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시작하였고, ’18년 3개소, ’19년 10개소를 설치 지역으로 선정하여 ’22년 말 기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제 2 절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1. 모부성보호 제도 강화

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제도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60일의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부여하였으나, '01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9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06년부터는 종전 행정해석으로 인정되던 유산·사산휴가를 법제화하여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여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12년부터는 임신 16주 이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5일에서 10일 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14년에는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14.7.1. 시행)하였고,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다. 2016년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사업장을 300인 이상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2018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019년에는 180만원, 2020년에는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포함)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90일분(다태아 120일), 그 외의 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30일분(다태아 45일)의 통상임금(상한액 월 200만원 한도)이 지급된다. 최근 저출산 기조로 지원인원이 감소 추세이며, 다만 2022년은 2021년 대비 수급자수와 지원금액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에 여성고용율이 증가한 것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②-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인 원	지 급 액	비 고
2014년	88,756	236,845	월 통상임금기준 (우선지원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30일)
2015년	95,259	259,011	
2016년	90,469	248,034	
2017년	81,708	243,399	
2018년	77,062	249,330	
2019년	74,095	269,686	
2020년	71,943	287,145	
2021년	71,330	290,571	
2022년	73,387	302,825	

※ 출처 : 고용보험 DB

또한 ’21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 만료된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나.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시부터 도입되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몇 차례 제도 개선을 거쳐 '10년 2월 4일 법 개정으로 '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확대하였고, '14년 1월 14일부터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하였으며,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②-2| 육아휴직제도 연도별 개정사항

연 도	법률 개정 내용	비 고
1988년	•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자녀가 만 1세까지 육아휴직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1995년	•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여성을 대신해서만 신청 가능)	
2001년	•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남녀 불문)	
2006년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08.1.1.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	
2010년	•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2014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를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150만원)로 지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2016년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지급 기간을 첫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2017년	•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 인상(150 → 200만원)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인상(통상임금의 40 → 80%, 상한액 100 → 150만원, 하한액 50 → 70만원)	

연 도	법률 개정 내용	비 고
2018년	•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 • 육아휴직 거부가능사유 완화(근속기간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첫째 150, 둘째부터 200만원 → 모든 자녀 200만원)	
2019년	•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인상(통상임금의 40 → 50%, 상한액 100 → 120만원, 하한액 50 → 70만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200만원 → 250만원)	
2020년	•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1 → 2회)	
2021년	•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를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300만원)로 지급('22.1월 시행) •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인상(통상임금의 50 → 80%, 상한액 120 → 150만원)('22.1월 시행) • 7개월 이후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인상(통상임금의 50 → 80%, 상한액 120→ 150만원)('22.1월 시행)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최대 1년간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01년부터 정액제(월 20만원)로 지급하여 왔는데 지원수준 상향 조정 요구 등에 따라 '11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를 지급하였다. '17년 9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해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하고, '19년 1월부터는 4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로 인상하였다. 이후 '22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4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22년 1월부터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하였다.

한편, '20년에는 한부모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도입,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하였다. '22년 1월부터는 7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2년에는 131,087명에게 1,657,231백만원을 지급하여 '21년 대비 지원액은 27.7% 증가하였다.

|표 3-②-3|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인 원			지급액	비 고
	계	여 성	남 성		
2013년	69,616	67,323	2,293	420,248	• 월 통상 임금의 40% (50~100만원)
2014년	76,833	73,412	3,421	500,663	
2015년	87,339	82,467	4,872	619,666	
2016년	89,795	82,179	7,616	625,243	
2017년	90,123	78,080	12,043	680,430	•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 이후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40%(50~100만원)
2018년	99,199	81,537	17,662	839,083	
2019년	105,165	82,868	22,297	1,058,853	• 이후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70~120만원)
2020년	112,040	84,617	27,423	1,215,500	
2021년	110,555	81,514	29,041	1,297,525	
2022년	131,087	93,202	37,885	1,657,231	• 월 통상 임금의 80% (70~150만원)

※ 출처 : 고용보험 DB

|표 3-②-4|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인 원			지급액	비 고
	계	여 성	남 성		
2014년	91	9	82	134	월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
2015년	1,345	174	1,171	2,410	
2016년	2,703	307	2,396	9,761	
2017년	4,409	513	3,896	17,538	월 통상 임금의 100% (상한 : 첫째 150, 둘째이상 200만원)
2018년	6,606	869	5,737	29,983	월 통상 임금의 100% (상한 : 모든자녀 200만원〈7월부터〉)
2019년	9,796	1,197	8,599	61,687	월 통상 임금의 100% (상한 : 250만원)
2020년	13,507	1,738	11,769	83,698	
2021년	14,541	1,996	12,545	90,940	
2022년	12,194	928	11,266	82,937	'22년 한시운영 후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

※ 출처 : 고용보험 DB

'22년 평균 육아휴직일수는 여성 289일, 남성 220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69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2년 37,885명으로 전년대비 30.5% 증가하였다.

2.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거나 허용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을 통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였다. '17년부터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액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19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21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인센티브로 각각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22년부터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만 지원토록 하면서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신설하여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부여한 경우 첫 3개월간의 지원액을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대체인력 활용 촉진을 통한 육아휴직 등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통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17년부터는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도 지원하였고, '19년부터는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기간을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에서 2개월간으로 확대하여 지원하였으며, '20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였다. '22년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설하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통합함으로써 육아휴직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지원 수준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은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2년에는 24,265개 사업장 48,895명에 대해 149,521백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다.

|표 3-②-5|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개선 현황

연 도	법률 개정 내용	비 고
1995년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008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 지급 * 명칭 변경 : ‘육아휴직 장려금’ → ‘육아휴직등 장려금’	
2011년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2015년	• 육아휴직 부여금의 경우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원 폐지 • 육아휴직 후 1개월에 대한 금액은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	
2017년	• 우선지원 대상 : 30만,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 추가 지원	
2019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지원	
2020년	• 지급 방식 변경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등의 기간 중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2021년	• 인센티브 확대 : 육아휴직 1~3호 인센티브 지급(2, 3호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지급(신설)	
2022년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신설(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하여 연속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기업 지원 폐지	

|표 3-②-6|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개선 현황

연 도	법률 개정 내용	비 고
2004년	•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한 사업주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고용기간 : 90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006년	• 육아휴직 기간 중 채용 →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채용 • 60일 이상 채용 → 30일 이상 채용 ※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고용기간 : 90일 → 30일	
2014년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2015년	• 채용기간 확대(휴가·휴직 전 30일 이후 → 60일 이후)	
2017년	• 지원기간 확대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 시작 전 2주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2018년	• 지원요건 완화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2019년	•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 확대 : 시작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시작전 최대 2주 → 2개월 지원 ※ 기업규모와 상관 없이 공통 적용	
2020년	• 지원요건 완화 :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금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인상(월 60 → 80만원) • 지급 방식 변경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중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2022년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신설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통합 ※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지속 지원	

|표 3-②-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사업장	인원(근로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
2012년	6,117	19,909	35,444	• 기업규모 무관 월 20만원
2013년	6,178	23,495	42,117	
2014년	6,875	22,577	39,168	•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 그 외 기업 15만원
2015년	8,479	31,977	51,445	•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 대규모 1,000인 이상 5만원, 1,000인 미만 10만원
2016년	9,145	34,536	43,756	
2017년	9,974	37,499	41,243	•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2018년	8,753	26,066	33,014	
2019년	9,305	20,194	35,785	•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2020년	11,272	19,862	43,271	
2021년	15,863	27,081	59,201	
2022년	28,713	42,735	94,660	•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 특례적용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 출처 : 고용보험 DB

|표 3-②-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사업장	인원(근로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
2012년	2,145	3,257	7,968	•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 대규모기업 20만원
2013년	2,315	3,722	9,225	• 우선지원대상기업 40만원 • 대규모기업 20만원
2014년	3,052	5,039	13,627	•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 대규모기업 30만원
2015년	4,214	6,602	25,360	
2016년	4,474	7,133	31,529	
2017년	4,926	7,774	36,155	
2018년	4,098	6,344	31,850	
2019년	4,101	6,290	32,130	
2020년	5,764	8,920	44,705	•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 대규모기업 30만원
2021년	7,111	10,823	57,968	
2022년	6,821	10,086	54,861	•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 출처 : 고용보험 DB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등 사회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근로자 의식 변화로 인해,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삶터인 지역사회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우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08년 6월에 시행되어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지역사회 조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공표, 가족친화인증제 등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천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17년부터는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1년 실시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조사'에서는 가족친화지수가 46.9점으로 나타나 '18년의 40.6점에 비해 6.3점이 상승하였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08년 14개사를 시작으로 '18년 3,328개사, '19년 3,833개사, '20년 4,340개사, '21년 4,918개사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2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총 5,415개사이며 이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68.4%인 3,706개사를 차지하여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증 설명회 개최,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강화, 지역 가족친화 유관기관 협의회 확대,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운영, 인증 기업·기관 사후관리 내실화, 가족친화경영 성과 및 우수사례 확산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아빠들의 돌봄 권리를 향상시키고 가정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육아아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육아 생활 온라인 사진전 (www.koreaswedendads.kr)을 운영하였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HAPTER

4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제1절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141
1.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경과 141
2. 주요 내용 142
3. 2022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143

제2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및 경력개발 지원 146
1.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146

제3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148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48
2.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52

제4절 분야별 여성의 창업·취업영역 및 여성기업 활동 확대 156
1.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 156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160
3. 여성농어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164

제5절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171
1. 일자리에서 성차별 관행 개선 171
2.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직장 내 성희롱 방지 173

제 1 절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1.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경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08.12.6. 시행)에 따라,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4)」(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양성평등위원회('20.2.12.)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10~'14) 기간 동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15~'19)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 여성의 고용유지 측면까지 정책 범위를 넓혀 청년층 여성(15~24세)을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20~'24)은 「2019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과제 개발 회의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2. 주요 내용

제3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과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5대 영역을 설정하고, 13개 중점과제, 102개 세부과제를 담았으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였다.

비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 구현	
목표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	
정책 과제	5대 영역 13개 중점과제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 •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 • 경력단절 예방 대책 내실화 • 능력개발 및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 여성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 •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맞벌이가구·취업모의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 법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 그림 4-①-1 |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추진체계

3차 기본계획은 여성 고용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일하는 환경과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대상별·경제활동 시기별 촘촘한 경력단절 예방정책 추진과 돌봄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일하는 여성의 경력·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과 달리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을 신규영역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과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 정책 등을 포함하였다.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단축, 창업, 플랫폼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 강화와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 중심으로 확충되어 온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 개선 추진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도 제고 및 조직문화 컨설팅 등 경력단절예방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보완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에서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여성 특성을 고려한 창업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3. 2022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경력단절위기를 겪는 재직여성을 위한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서비스 기관을 중점적으로 운영('22년 75개소)한 결과,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수혜자 수는 '21년 6만 8천명에서 '22년 7만 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22년 5,415개사)을 전년대비('21년 4,918개사) 500여개사 증가하였다.

「가족친화 기업 등 인증기준(고시)」을 대폭 개정('22.12월)하여 출산·양육 지원 등 기본제도 외에 청년(2030세대, 1인가구), 중·장년층(자녀성장) 등 생애주기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제도를 신설하여

내실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인증 장기간 유지 기업을 가족친화 최고기업(SFFC; Supreme Family-friendly Company)으로 지정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 가족친화문화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육아 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성보호 법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21년 868개소 → '22년 996개소)하였고,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채용 지원서비스를 확대('21년 5,292건 → '22년 5,437건)하였다.

미래유망직종 분야(빅데이터·3D·IT·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21년 59개 과정 → '22년 66개 과정)하고, 체계적인 자기개발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을 제공(취약계층 우선 선발과정 778명 및 별도 취약계층 과정 8개 운영)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 육성을 위해 여대학원생 150개 공학 연구팀(700명)을 지원하여 공학 분야 여대학원생 자기 주도 연구를 통한 연구 리더십을 함양하였으며, 재직 과학기술인 경력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 및 보완(글로벌 여성 리더십 교육과정 54명, 정보보호인증과정 60명 등 재직자 역량강화 과정 운영)하는 등 신진-중견-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생산성 제고 및 경력성장을 지원하였다.

국공립('22년 493개소)·지역거점형(13개소)·상생형(4개소) 직장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376개소)·협의체 운영 가족센터(7개소) 등 공공보육·지역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과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과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으로 경력단절여성 규모가 140만명으로 감소(통계청, '22년 지역별 고용조사)하였지만,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유무에 따른 임금격차 및 성별임금격차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제 2 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및 경력개발 지원

1.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여성 고용지표는 다소 악화되었으나 점차 회복세로 접어들어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 취업자 수 및 여성 고용률(15~64세)은 전년 대비 각각 43만 6천명, 2.3%p 증가하였고, 2019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여성 취업자는 50만 1천명 증가, 여성 고용률(15~64세)은 2.2%p 상승하며 처음으로 60.0%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도 전년 대비 25만 4천명 감소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②-1| 주요 여성 고용지표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취업자 수	11,450천명	11,660천명	11,523천명	11,725천명	12,161천명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59.4%	60.0%	59.1%	59.9%	61.8%
고용률 (15~64세)	57.2%	57.8%	56.7%	57.7%	60.0%
비경제활동인구	10,590천명	10,521천명	10,743천명	10,696천명	10,442천명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성별 임금격차, 여성임원 비율 등 주요 고용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4-②-2| OECD 주요 회원국의 여성 고용지표 현황('21년)

구분	한국	OECD	일본	프랑스	미국	호주	캐나다
경활률 (15~64세)	59.9%	64.8%	73.3%	70.0%	68.2%	75.1%	75.6%
고용률 (15~64세)	57.7%	60.5%	71.3%	64.5%	64.6%	71.2%	70.1%
성별 임금격차	31.1%	11.9%	22.1%	15.0%	16.9%	10.5%	16.7%
여성임원비율 ('22)	8.7%	28.0%	12.6%	45.3%	29.7%	34.8%	32.9%

※ 출처 : OECD Statistics('21) 〈경활률, 고용률, 임금격차〉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22) 〈여성임원비율〉

여성가족부는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임금의 날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상장법인의 성별 임금 통계 등을 조사·발표(22.9.7.)하였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경력 유지방안 마련을 위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기업인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 및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였다.

또한 성별균형 및 경력단절예방 우수기업을 방문하여 일·생활 균형, 차별 없는 인사관리 등 남녀 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인증전환 ('22년 29개사 신규지정, 7개사 인증 전환)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였다.

제 3 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수급 차질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08년 제정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이 접근하기 쉬우며 취업지원 사업경험이 있는 기존 교육훈련 기관, 여성회관 등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로 지정·운영하였으며, '22년까지 총 159개의 새일센터가 지정되어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해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등의 전공 및 경력,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4년에 유형별 새일센터(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지역산업맞춤형, 자립지원형) 10개소를 시범 운영하였고, '15년에는 센터 유형을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일반형으로 개편하였다.

’16년에는 광역센터 기능 개편을 추진하여, 광역센터가 기존에 수행하던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내 취업지원 기능을 인접 새일센터로 이관하고, 광역센터는 지역 내 새일센터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업추진체계를 조정하였다.

|표 4-③-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일반형센터	131	23	9	5	8	5	1	4	25	6	4	7	7	8	8	8	2	1
경력개발형센터	6	2	1	–	–	–	1	–	2	–	–	–	–	–	–	–	–	–
농어촌형센터	9	–	–	–	–	–	–	–	–	3	1	3	1	–	–	–	1	–
광역센터	13	1	1	–	1	–	1	–	2	1	1	1	1	1	1	1	–	–
총계	159	26	11	5	9	5	3	4	29	10	6	11	9	9	9	9	3	1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 직업 상담 및 집단 상담 : 개인별·단계별 맞춤형 직업·진로 상담, 취업의욕 상실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 유망 직종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인턴십 지원 : 경력단절여성등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
 ※ 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사업장 및 인턴자에게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
- 새일센터 창업 지원 : 창업상담사 배치(’22년 40개소) 및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 중기부 등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자금·공간·패키지 등 연계 우대 지원
- 경력이음 사례관리 : 경력단절여성등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취업지원(’22년 28개소)
 ※ 20~40대 경력단절여성 대상 상담·진단부터 취업 및 사후관리까지 통합적 취업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 구직자-구인처간 취업연계, 새일센터 구직등록여성 및 취업자,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등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환경개선,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경력단절예방지원 : 심리·노무·경력개발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교육 등 재직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22년 75개소)
 ※ (여성) 심리고충·인사·노무·경력개발상담, 멘토링·동아리 등 고용유지 및 직장적응 지원
 ※ (기업) 컨설팅, 교육, 워크숍 등 직장문화개선 지원 등

새일센터는 구직 희망 여성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여성 일자리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경력단절여성등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새일센터를 확충('22년 기준 159개소)하였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력단절 사전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7년 8월부터 새일센터에 창업과 경력단절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였다.

창업수요가 큰 지역의 센터에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창업전담인력 신규 배치('22년 40개소)하고 '창업지원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창업지원 체계 구축·운영('17. 8월~)하였고 창업교육훈련과정('22년 48개 과정)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창업 지원으로 전년대비 창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17년 3월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일부개정하여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년 11월에 추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경제활동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재직여성 대상 고충·노무상담, 기업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17년에 15개 새일센터에서 운영하였으며, '22년에는 75개소로 확대하였다.

또한 '18년에는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하는 30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를 개발하여 '19년 새일센터 10개소에서 시범운영, '22년에는 28개소로 확대하였다.

'22년 6월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면개정·시행되어 사업대상이 확대되고,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

|표 4-③-2| 새일센터 연도별 운영실적

(연도 말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구직건수	483,802	540,396	552,198	572,560	553,590
취업건수	173,064	177,592	176,866	180,610	161,772

'22년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들이 주로 취업한 곳은 보건의료(30.9%), 사무·회계(15.6%)순이며, 근로형태별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50.0%(시간제 포함 시 73.2%)를 차지하였다.

|표 4-③-3| 2022년 새일센터 취업자의 직종형태별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 건)

계	사무, 회계,관리	건설,기계, 화학,운송	영업, 판매	교육, 연구	이미용, 숙박,음식	전기, 전자	보건 의료	경비,청소, 가사도우미	사회, 복지	제조, 생산	기타
161,772	25,240	5,153	4,504	3,902	14,830	3,325	50,027	17,575	15,579	17,052	4,585
(100%)	(15.6%)	(3.2%)	(2.8%)	(2.4%)	(9.2%)	(2.1%)	(30.9%)	(10.9%)	(9.6%)	(10.5%)	(2.8%)

|표 4-③-4| 2022년 새일센터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 명)

취·창업 현황					
계	취 업				창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161,772 (100%)	80,836 (50.0%)	37,505 (23.2%)	27,559 (17.0%)	14,165 (8.8%)	1,707 (1.1%)

2.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가. 경력단절여성 취업서비스 접근성 제고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부처, 민관 협업을 통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 종합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에 적극 참여하고, 협업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및 취업 성과를 제고하였다.

구 분	고용복지+센터 내 새일 참여 현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고용복지+센터	70	98	98	98	98	102	102
새일센터가 참여하는 고용복지+센터	67	89	91	90	91	130	130

한편 새일센터 운영 사업의 실적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구축된 e새일 시스템(saeil.mogef.go.kr)의 기능개선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비대면서비스 확대 등으로 새일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e새일시스템 개선' 주요 내용

■ (비대면 서비스 강화)
-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신청 및 수료증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는 기능 구현
- 새일여성인턴 참여자 및 참여기업의 인턴지원금 온라인 신청 기능 구현

■ (진단검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경력 사전진단 검사도구(재직, 이·전직, 구직) 시스템 탑재 및 활용 기능 구축
- 취업준비도 진단 후 경력이음 사례관리 신청 가능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DB서버 G-클라우드 전환, DBMS 설치, OLAP 툴 재설치, 응용SW 업그레이드
- 종사자를 위한 Help Desk 운영, 용량 증설 등

나. 직업교육훈련 및 새일여성인턴 운영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로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과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새일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는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생애 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 메이킹 등의 내용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직업훈련 등 개개인에게 적절한 취업 지원서비스로 연계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09년 184개 과정 운영을 시작으로 '22년 718개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과정과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특히 유망 직종으로 취업이 가능한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자인전문가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을 '16년 25개 과정에서 '22년 66개 과정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2년에는 집단상담프로그램 매뉴얼을 일부 보완·개편하여 '23년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표 4-③-5|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종류

적용대상	기존 프로그램(~'17년)	개정 프로그램('18년~)
경력단절 여성	• WIN : Women Into New·Career·Life • WIN+ : 직장적응프로그램 • Re-Win : 재복귀프로그램	• 새일스타트 : 경단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기본과정) • 새일플러스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심화과정)
결혼이민 여성	• WIND : Women Immigrant's New Direction	• WiCi : Women Immigrant's Career Identity

|표 4-③-6|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2022.12.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교육인원 (a)	수료인원 (b)	수료율 (b/a)	취업인원 (c)	취업률 (c/b)
2018년	14,796	14,060	95.0%	10,258	73.0%
2019년	14,544	13,924	95.7%	10,008	71.9%
2020년	11,023	10,532	95.5%	7,770	73.8%
2021년	12,573	11,998	95.4%	8,800	73.3%
2022년	12,586	11,919	94.7%	8,892	74.6%

한편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경력단절여성등을 인턴(3개월)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상용직 이상 전환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과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업에게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경력단절여성등에게는 직장체험과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기업은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근무조건과 급여수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표 4-③-7| 새일여성인턴 사업 실적

(2022.12.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새일여성인턴 연계 현황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	
	연계	인턴종료(b)	연계중	취업(a)	취업률(a/b)
2018년	7,410	5,859	1,033	5,618	95.9
2019년	7,351	6,063	809	5,853	96.5
2020년	6,945	5,812	628	5,658	97.4
2021년	11,761 (추경포함)	9,611	1,236	9,312	96.9
2022년	10,145	8,298	1,085	8,027	96.7

다. 온라인 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

새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이 쉽지 않은 지역의 구직여성에 대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의 온라인 경력개발센터(www.dream.go.kr)을 활용하여 온라인 커리어 상담사(EM : Employee Mentor)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리어 상담사는 취업희망 여성에게 온라인으로 취업진단(취업가능성 진단, 직업역량 진단, 창업역량 진단 등), 취업상담(경력개발계획 수립,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고, 새일센터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는 '10년 3개 지역(서울, 경기, 경남)에서 시범 실시되었고, '16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여 운영되었다. '22년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2만여명, 온라인교육을 이용한 인원은 26만 5천여명에 달한다.



|그림 4-③-1|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이용 흐름도

제 4 절

분야별 여성의 창업·취업영역 및 여성기업 활동 확대

1.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

가. 여성기업 일반현황 및 정책 개요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 수는 '20년 기준 약 295만개이며, 전체 기업 수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기술 기반 업종 창업은 '22년 기준 전체 기술 창업의 41.6%이며, 그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4-④-1| 여성기업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기업	6,085,434	6,301,013	6,643,756	6,893,706	7,286,023
여성기업	2,379,182	2,483,970	2,656,359	2,772,509	2,951,346
비 율	(39.1)	(39.4)	(40.0)	(40.2)	(40.5)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표 4-④-2| 여성창업 현황

(단위 : 개, %)

구분	성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산업	합계	1,256,267	1,344,366	1,285,259	1,484,667	1,417,973	1,317,479
	남성	669,872	711,543	689,001	790,241	756,441	711,637
	여성	585,737	632,073	595,484	693,927	660,616	604,425
	여성비율	(46.6)	(47.0)	(46.3)	(46.7)	(46.6)	(45.9)
기술기반 업종	합계	198,911	212,237	220,607	228,949	239,620	229,416
	남성	124,690	129,768	132,782	135,962	140,213	133,648
	여성	73,993	82,199	87,567	92,815	99,162	95,413
	여성비율	(37.2)	(38.7)	(39.7)	(40.5)	(41.4)	(41.6)

*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 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N75),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R9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동향」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성의 원활한 창업 지원과 여성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99년「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여성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여성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여성기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간 매년 수립하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20년 2월「여성기업법」을 개정하였다. 현재「'20~'24년 제1차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매년 초 당해연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나. 여성기업 지원 정책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 기업 판로 및 수출, 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 중이며, 여성기업 관련 조사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1) 여성 창업 활성화 지원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여성 전용 창업보육시설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 입주기업에게 창업보육 공간('22년 총 238개실)을 제공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창업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여성 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2년 대회에는 총 1,233팀이 참여하였으며 최종 34개팀을 선정 및 시상하였다.

2) 여성기업 판로 촉진

'14년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여성기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2년에는 전년 실적 대비 1.1조원(8.6%)이 증가한 13.9조원에 도달하였다.

|표 4-④-3|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116.9	123.4	123.4	135.0	145.8	154.0	157.9
여성	8.34	9.91	10.58	11.9	12.5	12.8	13.9
비율	7.1	8.0	8.6	8.8	8.6	8.3	8.9

|표 4-④-4|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단위 :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청	10,683	11,723	14,409	19,367	23,860	25,160	24,652
발급	9,242	10,450	12,541	16,178	20,650	23,285	22,951
누적	24,337	27,601	31,689	38,549	48,753	58,419	65,138

아울러, 홈쇼핑 입점 지원, SNS 광고 영상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 교육, 수출 컨설팅,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여성기업들이 해외시장에도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여성기업 인력 지원

여성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과 인력을 적시에 매칭하는 플랫폼인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인 여성 CEO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기업들이 경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여성경제인 DESK를 설치하고 경영전략·마케팅·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기업 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여성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7월 초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21년 10월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하여 7월 첫째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22년 4월에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사를 법제화하였다.

4) 실태조사, 조사연구 등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수립 및 통계 자료 발간 등을 위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여성경제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내·외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조사·연구하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 통계인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성기업의 현황 및 경영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21년 4월에는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하여 조사 실시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개편하였으며, ’22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가.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21년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130,055명으로(전체 연구원 586,666명)으로 나타났다.

|표 4-④-5| 과학기술 R&D 분야의 성별 연구원 수 추이

(단위 : 명, %)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연구원(명)		453,262	460,769	482,796	514,170	538,136	558,045	586,666
성별	남성(명)	367,913	370,154	385,754	409,442	424,949	438,494	456,611
	비율(%)	91.1	80.3	79.9	79.6	79.0	78.6	77.8
	여성(명)	85,652	90,615	97,042	104,728	113,187	119,551	130,055
	비율(%)	18.9	19.7	20.1	20.4	21.0	21.4	22.2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연구원은 주로 기업과 대학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전체 여성연구원(130,055명)의 60.9%는 기업체에서 종사하며, 29.8%는 대학에서, 9.3%는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④-6| 2021년도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현황(1)

(단위 : 명, %)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합 계
여성연구원	12,058	38,792	79,205	130,055
분포 비율	9.3	29.8	60.9	100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연구수행주체별 여성연구원 비율은 대학이 33.8%로 가장 높았고, 공공연구기관 28.3%, 기업체 18.4%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모두에서 전년 대비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④-7| 2021년도 연구수행주체별 여성연구원 현황(2)

(단위 : 명, %)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합 계
전체	'20	41,005	115,924	401,116	558,045
	'21	42,566	114,635	429,465	586,666
여성 (비율)	'20	11,079(27)	38,405(33.1)	70,067(17.5)	119,551(21.4)
	'21	12,058(28.3)	38,792(33.8)	79,205(18.4)	130,055(22.2)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특히 '21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의 정규직 연구개발인력은 21,505명으로, 이중 여성은 3,466명(16.1%)으로 여성비중은 전년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정규직 여성연구개발인력 재직비율을 비교해 보면, 연구개발인력의 여성재직비율은 원급 28.8%, 선임급 17.9%, 책임급 이상 10.0%로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원급의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26.7% → 28.8%, 2.1%p)하고, 선임급의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18.1% → 17.9%, △0.2%p), 책임급 이상의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9.7% → 10.0%, 0.3%p)하였다.

|표 4-④-8| 2021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정규직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현황

(단위 : 명, %)

직급	책임급 이상 (과장연구관 이상)			선임급 (연구관)			원 급 (연구사)			기술직 (기술원)			합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10,501	1,054	10.0	6,300	1,127	17.9	2,028	584	28.8	2,676	701	26.2	21,505	3,466	16.1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021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통계표)

나.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현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동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 계획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9년에는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였으며, 매년마다 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과기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4대 추진전략
① 전략적 인력 유입·성장 촉진
② 혁신·글로벌 역량 제고
③ 경력개발·이음확대
④ 젠더혁신 체계 구축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승진목표제」[6] 및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제도」를 운영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확대 및 대표성 제고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공사부설(연) 131개를 대상으로 매년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재직, 승진비율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제도로 여성 재직비율이 30%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 경력이 지연·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12년부터 추진한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은 '22년 총 503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학사 이상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분야 산·학·연 연구기관 간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력단절된 여성연구자의 연구현장 복귀를 지원,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공적 경력 안착('22년 조사 취업유지율 78.5%)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 연구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와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과 여성과학기술인단체 간 국내외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상호교류·협력 및 소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다.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해 4개 권역의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사업(R-WeSET2.0)'을 추진, 지자체 및 인근 지역의 대학, 산업계 등과 연계한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활용을 위한 지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2년도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사업(R-WeSET 2.0)을 통하여 총 23,483명의 여중고생 및 여대학생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으며 이에 대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와 이공계에 대한 인식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연구기관과 이공계대학,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연구기관('21년 기준 4,723개)을 대상으로 매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7]를 실시하고 있다.

3. 여성농어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4.1. 공포, 10.2. 시행)했고,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공동경영주 개념을 도입하였으며('16.3.24.),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의 배우자가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하기 위해 경영주인 농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종전 절차를 없애 경영주인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18.1.29.).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117만명이 되는 등 작년 대비 2.3만명 증가하였다.

7) 조사문항 :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 , 채용, 이·퇴직, 보직·승진, 연구개발 활동, 일·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등

|표 4-④-9| 연도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단위 : 천명, %)

연도	전체	여성	비율	경영주	여성	비율	공동경영주	여성	비율	경영주 외	여성	비율
2015년	2,583	1,224	47.4	1,590	396	24.9	0	0	-	992	828	83.5
2016년	2,547	1,195	46.9	1,618	416	25.7	13	12	92.3	914	767	83.9
2017년	2,466	1,140	46.2	1,645	435	26.4	23	20	87.0	798	685	85.8
2018년	2,443	1,123	46.0	1,659	448	27.0	27	24	88.9	758	650	85.8
2019년	2,447	1,120	45.8	1,686	466	27.6	36	32	88.9	725	622	85.8
2020년	2,478	1,132	45.7	1,730	491	27.4	47	41	87.2	701	600	85.6
2021년	2,508	1,148	45.8	1,763	512	29.0	92	81	88.0	653	555	85.0
2022년	2,555	1,171	45.8	1,811	539	29.8	187	164	89.3	556	468	84.2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매년 10월 15일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농사비법경진대회, 여성농업인단체활동, 청년여성농업인토크쇼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높여왔다. 2022년에는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시행(2021.11.30. 개정, 2022.6.1. 시행)으로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강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용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정책 활용 컨설팅을 지원하는 영농여건 교육을 실시하여 '22년에는 1,680개 마을, 11,760명이 참여하여 전년대비 교육 참여도가 증가하였다.

※ ('20) 357개 마을, 2,622명 → ('21) 969개 마을, 9,189명 → ('22) 1,680개 마을, 11,760명

여성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2년에는 농촌사회 양성평등 동영상교육 콘텐츠(농촌사회 성평등의 이해)를 개발하여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을 통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농촌지역 여성인재양성교육(54명),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내 여성특화과정 운영 : 기본공통(3개 과정 306명), 유형특화(귀농 : 50개 과정 1,253명, 귀촌 : 57개 과정 1,431명)

또한 매년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로 농작업 환경의 과학화와 자동화를 통해 영농을 효율화하고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표 4-④-10| 연도별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실적

(단위 : 종)

계	2012년 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39	104	5	5	7	6	4	4	4	4	5	5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2년에는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경량·자동화 여성친화형 농기계 5종을 추가 개발하였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기계임대사업(147개소)을 통해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있다.

다.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촌정착 지원을 통한 후계인력 육성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진전된 농촌사회에서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우수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계별 농업교육(871명) 및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570명)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남편, 시부모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784명)을 운영하였다.

|표 4-④-11| 연도별 결혼이민여성 대상 주요교육과정 및 참여인원

(단위 : 명)

과 정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885	822	722	1,215	774	871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780	747	676	569	615	570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1,013	1,008	1,003	1,277	1,092	784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라.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

여성농업인의 보육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 공동아이돌봄센터(98개소)와 이동식 놀이교실(13개소), 농번기 아이돌봄방(71개소) 등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을 지원하였다.

※ (공동아이돌봄센터) : ('19) 37개소 → ('20) 54개소 → ('21) 97개소 → ('22) 98개소
※ (이동식 놀이교실) : ('19) 6개소 → ('20) 7개소 → ('21) 10개소 → ('22) 13개소
※ (농번기 아이돌봄방) : ('19) 14개소 → ('20) 23개소 → ('21) 76개소 → ('22) 71개소

마. 여성농업인센터 및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및 문화·교육활동 지원, 자녀의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학습 등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센터(2022년 기준, 전국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비를 보조하여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한기에 교양강좌 및 문화 활동, 농촌체험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 여성농업인센터 현황('22) : 경기(3), 강원(2), 충남(9), 전북(6), 전남(4), 경북(1), 경남(6), 제주(9)

또한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농어촌 여성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특화된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9개소)를 운영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자의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창업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22) : 강원·충남(각 3개소), 충북·전북·제주(각 1개소)

바. 지자체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강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체계적인 인력육성·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19.6.)하였다. 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였고, 인력육성·보건복지·성평등 관련 정책추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인력을 신설하여 지원정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활성화 및 농촌지역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여성농업인 시상, 문화활동 지원, 리더십 교육 등 여성농업인 단체들을 지원하였다.

※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 지자체 : ('20) 123개 → ('21) 127개 → ('22) 130개소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인력 설치 지자체 : ('20) 4개소·5명 → ('21) 8개소·21명 → ('22) 7개소·28명

사. 여성어업인 현황 및 제도개선

어촌 내 어가인구가 지속적 감소추세에 있고, 어촌 6차 산업화 추진으로 수산물 가공 및 판매, 어촌관광 등 여성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 부각 되고 있다. 이에 어촌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여성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여성어업인 비중(%) : ('80) 48.8→('90) 49.8→('00) 49.5→('15) 49.8→('18) 50.3 →
('19) 50.9 →('20) 48.8 →('21) 49.8 →('22) 49.8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2년 3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5차('22~'26)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5개 전략 13개 과제)」을 수립하여 매년 여성어업인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년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19.2)하여 여성배우자도 어업경영체 경영주로 공동등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업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동경영주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능한 여성인력 확보를 위해 어업인후계자 선정 시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를 평가기준에 포함시키고, 선정인원의 20%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8조 등에 따라 '08년부터 여성어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2년에 총 79백만원 예산을 지원하였다. 어촌사회를 선도할 여성인재 양성 및 어촌리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촌지역 개발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차세대 리더교육, 지역별 특화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의 전문성 및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어업인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6년 12월에는 최초의 전국단위 여성어업인 사단법인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설립을 허가하여 여성어업인 스스로 어촌사회의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성의 수산정책 수립 참여 확대 및 여성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18년부터 여성어업인 포럼을 최초 개최하여 여성어업인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어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정례회의화 조항 신설, 여성어업인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운영세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정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2년에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앞장서는 여성어업인'을 주제로 제1차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을 농어업 분야 중 최초로 개최하고, 여성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에 기여한 여성어업인 12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수산업과 어촌에서의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자.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어촌지역 취약어가 등 사고나 질병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유지하도록 '15년부터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어가의 일·가정 양립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18년부터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2년에 어업도우미는 200백만원, 가사도우미는 7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도 어업도우미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신·출산의 경우, 가사도우미 지원기간을 2배 확대하는 등 여성의 모성권 보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 직업성 질환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총 3개소 운영하며 직업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질환·재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부터 직업 질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22년부터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제 5 절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1. 일자리에서 성차별 관행 개선

여성인력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가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 affirmative action)는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제도로,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동종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을 지도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3.12월)으로 AA 여성고용 기준을 동종 업종 평균 60%에서 70%로 상향하였으며, 또한 시행규칙 개정('14.10월)으로 산업별 고용특성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여성고용 기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업종 분류를 종전 26개에서 30개로 세분화하였다. '14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4. 1월)으로 AA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개정('14.12월)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 명단 공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였다.

2018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확대되고('18년 300인 이상 기관, '19년 전체 기관 적용), 2019년부터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부터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여 기업 스스로 임금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A 대상은 2,547개사(공공 353개사, 지방공사·공단 156개사, 민간 2,038개사)이며, 2022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38.05%, 관리자 비율은 21.75%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에 비해 각각 7.28%p, 11.53%p 증가했다.

'22.5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회 연속하여 여성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 33개사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표 4-⑤-1| 202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적용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비율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	1,000인 이상 사업장	1,000인 미만 사업장	전년 대비	평균	1,000인 이상 사업장	1,000인 미만 사업장	전년 대비
38.05%	39.46%	37.22%	0.27%p	21.75%	23.67%	20.62%	0.45%p

또한, 고용평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모든 조항이 '19.1월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2.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직장 내 성희롱 방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이외의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이르기까지 고용 과정에서 성(性)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또는 형사 처벌에 이르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성차별 금지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종 예방 및 지도·점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2년도에는 총 14,000건의 모집·채용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성차별 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8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경고 577건, 시정 233건을 조치하였다.

|표 4-⑤-2|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건)

연 도	모니터링 건수	위반 건수	조치건수		
			사법처리	경고	시정
2015년	5,207	454	-	351	103
2016년	8,615	1,052	2	858	192
2017년	7,096	534	-	468	66
2018년	6,615	284	-	212	72
2019년	11,000	561	-	441	120
2020년	12,000	677	1	494	182
2021년	13,000	915	-	712	203
2022년	14,000	811	1	577	233

또한 모성보호 위반 의심 사업장 및 신고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차별적 고용관행 등을 포함하여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한 결과 총 996개소 점검 결과 953개소 4,362건의 법위반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표 4-⑤-3|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건수)

연도	점검사업장 수	위반사업장 수	위반 건수
2015년	506	394	1,150
2016년	535	436	1,162
2017년	555	492	1,698
2018년	659	555	2,129
2019년	700	683	3,085
2020년	400	368	1,268
2021년	868	814	3,198
2022년	996	953	4,36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18.5월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비밀누설 금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 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해자에게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성희롱 피해는 사후적으로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어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왔다. 그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이해가 높아졌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이 낮은 반면 성희롱 발생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풀을 구성하여 성희롱 발생 개연성은 높지만 여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에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2년도에는 443개 사업장에 11,963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표준강의안, 성희롱 예방 홍보 리플릿,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영세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HAPTER
5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1절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77
1.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활성화 177
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187
3.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협의체 운영 201

제2절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활동 강화 203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203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 신고의무 204
3. 청소년 성보호 예방 활동 207

제3절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13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 213
2. 성매매 예방 및 국민 의식 개선 215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217

제4절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실효성 강화 및 인식제고 222
1. 여성·아동 폭력예방 내실화 222
2.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교육 224
3.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226

제 1 절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활성화

가.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제도개선 추진

’13년 6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함께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예방교육 대상 확대 등 예방 측면이 강화되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조력인, 증인지원관 등 형사절차 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는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14년에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실시 및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의무화 등 예방교육 부실기관에 대한 이행 실효성 강화 수단을 마련하였다. ’16년에는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조직 내 성폭력 방지를 강화하였다. 특히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내 자체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하여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17년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

하여 3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비용(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젠더폭력 관련 포괄적·근본적 법 마련을 위한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를 통해 개별법 상 존재하던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령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체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유형의 젠더폭력을 예방·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하였다.

’18년에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의 근거와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한편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미투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입법 실현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방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성폭력 예방 관련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년에는 다양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여성가족부·주무부처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조직 내 성희롱 방지조치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자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신설·강화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의무화 하고,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시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과 함께 개정하여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여성가족부로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다.

’21년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으로 확대하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하여 삭제지원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5-①-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법 명	주 요 내 용
형법	•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성인 남성 포함)
	• 친고죄 조항 삭제
	• 구강성교 등 유사강간죄 신설
	•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피감호자 간음죄 법정형 상향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 강간, 유사강간 등 예비음모죄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 '동거하는 친족' 포함
	• 장애인,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
	• 공중화장실 등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 친고죄 조항 삭제
	• 음주·약물로 인한 감경 임의적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확대 ※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전체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
	•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 ※ 2013.6.19.부터 양성, 2013.12.19.부터 수사·재판과정 참여
	• 법원에 증인지원시설, 증인지원관 설치·운영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피감호자 추행죄 법정형 상향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법정형 상향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의 공개·누설죄 법정형 상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민간기업 사용자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 보호시설'을 추가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규정
	•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
	• 시정명령 대상에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상담소, 보호시설 추가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예방조치 의무화

법 명	주 요 내 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 신고 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 의무화
	•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화
	• 성폭력 사건 발생시 여성가족부로의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요사건에 대한 현점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 발생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양성평등 기본법	• 성희롱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부실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 제출하도록 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주무부처로 확대 등
	• 성희롱 사건 발생시 여성가족부로의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요사건에 대한 현점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97년 가정폭력 예방·처벌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특히 '11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급 임시 조치권'을 신설하였고, '12년에는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권'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13년에는 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 출동을 의무화 하고 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권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였다.

'14년에는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거나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할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신변보호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15년에는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피해자의 임시보호 기능을 추가하였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문화 확산을 위해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신설하였다.

’16년에는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조직 내 성폭력 방지를 강화하였으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시 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에 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17년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퇴소 후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18년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연장하였다.

’20년에는 그동안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한정되었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 입소를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입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추가되었고, 응급조치에 현행범인의 체포, 피해자보호명령에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가 추가되는 등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다.

나.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대책 추진

정부는 ’07년 제주 초등생 성폭력 살인사건, ’12년 고정석 사건 등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사건 발생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럼에도 '13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들이 바라는 여성정책이란' 설문 조사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국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정과제로 나타났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13년 6월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	관련 법률 시행(6. 19.)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6. 21.)
신속한 대응	-	• 112 시스템 스마트화 • 경찰서내에 성폭력 전담수사대 신설(~2015)
예방교육 실질화	•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콘텐츠 개발 • 성인권 교과서 개발(2015) · 보급 • 공무원 임용 · 승진 교육 과정에 여성폭력 관련 교육 의무화(2014 상반기)
재범 방지	• 신상정보 공개범위 확대	• 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구축 (2014 시행)
	•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 •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	• 긴급경보 시 보호관찰관 · 경찰관 동시 출동 •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2016) •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치료보호제도 도입 추진(2014~)
처벌 강화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 • 공소시효 배제 확대 • (성인)강간 객체 확대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집행유예 배제 •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강화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피해자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진술조력인/증인지원관 제도 도입 • 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 피해자 의료 · 법률 지원 확대 •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통합지원센터 배치
안전한 환경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형량 강화	• 돌봄서비스 연계 • CCTV · 통합관제센터 확대 • 온라인음란물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 • 유해물 감시 강화

|그림 5-①-1|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되었다. '14년에는 상기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1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차례의 이행점검 회의를 통해 대책 이행 현황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군인, 교원,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이슈화되고, 가해자에 대한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식 행태가 지적되면서 '15년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 공직사회 성폭력 근절을 집중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공직사회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16년에는 몰래카메라 이용·촬영, 랜덤채팅앱 이용 성매매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포함한 '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 회의를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표 5-①-2| 2016년 성폭력 근절 추진대책

'16년 성폭력 근절 추진대책	세부 내용
• '4대악 근절 대책' 2016년 추진계획(1.28)	성폭력,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지속 이행점검
•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6.1)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동기없는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환경 개선, 처벌 강화, 재범방지 대책 마련 등에 초점
•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6.22)	안전시설 확보나 성폭력 예방이 미흡할 수 있는 도서벽지에 초점
•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대책'(6.22)	여성폭력 근절의 근본 해결을 위해 성차별적 의식 개선 등 포함 종합 접근

또한 강남역 살인 사건, 도서벽지 성폭력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즉각 대응하여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대책」등 별도 대책을 추진하였다.

안전시설 확보나 성폭력 예방이 미흡할 수 있는 도서벽지에 초점을 맞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교원 등) 대상 스마트 워치 보급, 경찰인력 미배치 도서지역에 비상벨 설치, 안전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등 안전한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차별적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접근이 반영된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대책」을 통해 방송·언론 심의기준 강화, 성폭력 등 사건 보도 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언론인 세미나 개최 등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과제로 추진하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17년에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인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월)을 수립하였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이행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대책과 관련한 6개 입법과제*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였다.

※ 성폭력방지법('18.3.13. 공포, '18.9.14. 시행), 공중위생관리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성폭력처벌법('18.12.18. 공포, '18.12.18. 시행), 전기통신사업법('18.12.24. 공포, '19.6.25. 시행), 정보통신망법('18.12.24. 공포, '19.3.25. 시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19.4.23. 공포, '19.4.23. 시행)

이어 '20년에는 n번방 '텔레그램 사건' 등 다양화·조직화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20.4월)을 마련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추진하였다.

※ 청소년성보호법('20.6.2. 공포·시행), 성폭력처벌법('20.5.19. 공포·시행), 형법('20.5.19. 공포·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6.9. 공포, '20.12.10. 시행), 정보통신망법('20.6.9. 공포, '20.12.10. 시행) 등

또한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방지 종합 대책」('13.6월)을 발표하였다. '16년에는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및 아동학대 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을 위해 '16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임신 출산기·영유아기·중고생·대학생·군 장병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가정의 날(5월 15일)'이 있는 주(週)를 '부모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취약가정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8년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가정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보완해야 할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수립·발표('18.11월)하였다. 이 대책에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신속한 격리를 위하여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상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행범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즉시 체포하도록 하는 등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임시조치 집행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9년부터 가정폭력 상담소가 피해자 지원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상담소를 확대하고 상담소·보호시설 상담 인력(194명)도 증원하였다.

※ 국비지원 상담소 확대 : ('18) 103개소 → ('19~22) 128개소(↑25개소))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시 주거지원 및 필요물품 구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신규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주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기반 확충을 위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9개소를 신설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였다. '22년에는 남성 폭력피해자 전담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각지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가.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번호 「1366」을 사용하여 365일·24시간 운영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 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전국에 1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 자녀를 365일 24시간 임시보호하기 위해 18개 센터에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다.

|표 5-①-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시설현황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	2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366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 긴급 피난조치, 전문상담기관·의료·법률·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5-①-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스토킹[1]	디지털 성범죄[1]	기타[2]
’18년	352,269	189,057	27,683	3,890	13,289	-	-	118,350
’19년	353,947	206,885	20,771	4,146	12,935	1,294	3,692	104,224
’20년	316,618	180,111	19,795	3,712	10,265	1,175	6,223	95,337
’21년	313,868	171,352	19,691	3,048	9,824	2,710	7,053	100,190
’22년	289,848	157,829	15,783	2,363	10,142	6,766	9,018	87,947

1)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 ’19.1.1.부터 단독 상담유형으로 추출(~’18.12.31. 성폭력 유형에 포함)

2) 기타 : 가족문제, 심리·정서, 기관 정보 단순문의 등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해바라기센터)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3가지 유형이 있다. ’04년 6월, 국내 최초로 아동성폭력 전담기구인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연세의료원)가 설치된 후 ’05년 8월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학교 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서울 경찰병원에 설치되었다. ’10년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통합된 모델인 해바라기여성·아동 센터를 부산에 최초 설치하였다. ’13년에는 원스톱지원센터가 경기 서부(한도병원, 현재 단원병원), 인천 북부(인천성모병원), 부산(부산의료원) 등 3곳에 신규 설치되고, 수원의 경기원스톱지원센터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전환되었다. ’14년에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경기북서부(고양 명지병원)에 신규 설치되고, 대전 원스톱지원센터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전환되었다.

’15년에는 서울북부(삼육서울병원), 경북서부(김천제일병원)의 2곳에 신규 설치되었고 ’16년에는 서울중부(국립중앙의료원) 1개소가 신규 설치되었다. ’17년에는 전북서부(원광대병원) 1개소가 신규 개소되었다. ’18년에는 강원남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개소가 신규 개소되었고, ’19년에는 전남(영광기독병원) 1개소가 신규 개소되었다. ’20년에는 경기중부(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1개소, ’22년에는 서울북부(서울의료원) 1개소가 신규 개소되었다. ’22년 말 기준 39개소의 해바라기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15년부터 다양한 명칭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하였고,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대상의 동행서비스 지원 범위를 ‘치료’ 동행에서 ‘치료·수사·교육·문화 등 동행’으로 확대하였다.

※ 해바라기아동센터 → 해바라기센터(아동), 원스톱지원센터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해바라기센터(통합)

특히 ’15년에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최초로 상담, 의료, 법률구조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5-①-5| 2022년 해바라기센터 운영현황

구 분	해바라기센터(아동형) (7)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16)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6)
서울(5)	연세의료원	경찰병원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부산(2)		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
대구(2)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인천(3)	가천대 길병원	인천의료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광주(2)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대전(1)			충남대병원
울산(1)			울산병원

구 분	해바라기센터(아동형) (7)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16)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6)
경기(6)	분당차병원	의정부의료원	아주대병원(거점)
		단원병원	명지병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강원(3)			강원대병원
			강릉동인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2)	건국대 충주병원	청주의료원	
충남(1)			단국대병원
전북(3)	전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전남(2)		성가롤로병원	영광기독병원
경북(3)		안동의료원	포항성모병원
		김천제일병원	
경남(2)		마산의료원	경상대병원
제주(1)			한라병원

'22년 전국 해바라기센터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전체 서비스 지원 건수는 398,980건, 총 센터 이용 피해자 수는 24,909명이다.

|표 5-①-6|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전체 피해자)

구분 / 연도	피해 유형(명)					지원 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심리	동행 서비스	사회적 지원 등
2017년	27,225	19,423	4,817	171	2,814	361,457	114,927	87,213	56,380	34,619	5,119	63,199
2018년	27,450	20,449	4,147	182	2,672	398,690	125,347	100,929	58,227	35,866	5,902	72,419
2019년	26,585	19,456	4,058	197	2,874	413,177	125,459	112,659	62,120	34,787	5,221	72,931
2020년	23,806	17,207	3,782	203	2,614	380,141	116,758	101,193	57,734	32,712	4,557	67,187
2021년	27,434	17,999	5,184	172	4,079	418,032	129,199	106,742	70,429	33,029	5,359	73,274
2022년	24,909	17,178	4,036	154	3,541	398,980	126,734	103,585	60,185	33,249	4,795	71,432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표 5-①-7|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이용현황

연 도	성 별	성폭력피해자 접수(명)				
		합계	13세 미만	19세 미만	19세 이상	미상
2017년	남	1,117	617	223	118	159
	여	18,152	2,917	4,240	8,913	2,082
	모름	154	15	8	2	129
	전체	19,423	3,549	4,471	9,033	2,370
2018년	남	1,187	569	247	186	185
	여	19,046	2,953	4,309	9,319	2,465
	모름	216	16	11	4	185
	전체	20,449	3,538	4,567	9,509	2,835
2019년	남	1,166	603	234	177	152
	여	18,112	3,191	3,833	8,743	2,345
	모름	178	7	7	6	158
	전체	19,456	3,801	4,074	8,926	2,655
2020년	남	927	438	185	194	110
	여	16,107	2,684	3,405	7,859	2,159
	모름	173	6	5	6	156
	전체	17,207	3,128	3,595	8,059	2,425
2021년	남	1,019	430	199	239	151
	여	16,809	2,873	3,596	7,909	2,431
	모름	171	10	6	1	154
	전체	17,999	3,313	3,801	8,149	2,736
2022년	남	1,118	502	190	268	158
	여	15,929	2,702	3,560	7,448	2,219
	모름	131	2	4	3	122
	전체	17,178	3,206	3,754	7,719	2,499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표 5-①-8|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지원 실적

연 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실적(건)						
	합 계	상 담	의 료	수사법률	심 리	동행서비스	사회적지원 등
2017년	310,687	93,486	77,752	45,435	34,130	4,860	55,024
2018년	350,466	105,585	92,383	48,042	35,178	5,670	63,608
2019년	361,951	105,513	104,746	48,260	34,003	5,055	64,374
2020년	333,691	98,570	95,484	43,275	32,185	4,446	59,731
2021년	350,282	104,872	102,142	42,286	32,585	5,321	63,076
2022년	343,976	105,906	99,571	38,876	31,599	4,733	63,291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1) 가정폭력 발생 및 상담 현황

’22년도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의 전체 상담 건수는 454,704건이며,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은291,546건이다.

|표 5-①-9|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단위 : 개소, 건)

연 도	가정폭력상담소 수	상 담 실 적		
		계	가정폭력	기 타
2017년	208	317,936	171,975	145,961
2018년	203	394,192	219,459	174,733
2019년	208	421,916	238,601	183,315
2020년	215	396,951	230,578	166,373
2021년	214	428,911	266,529	162,382
2022년	213	454,704	291,546	163,158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①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22년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범죄 건수는 44,555건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으며, 검거인원은 51,937명이었다.

|표 5-①-10|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단위 : 건, 명)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인원
			구속	불구속	
2017년	38,583	45,264	384	11,368	15,979
2018년	41,905	43,576	355	11,423	14,689
2019년	50,277	59,472	490	14,932	21,228
2020년	44,459	52,431	330	12,770	19,379
2021년	46,041	53,985	410	15,954	24,867
2022년(잠정)	44,555	51,937	-	-	-

※ 출처 : 경찰청

2) 성폭력 상담 현황

'22년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상담은 292,945건이며 이 중 성폭력 관련 상담은 175,651건이었다. 전년 대비 전체 상담 건수는 3.2%(9,029건) 증가하였다.

|표 5-①-11|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 현황

(단위 : 개소, 건)

연 도	성폭력상담소 수	상 담 실 적		
		계	성 폭 력	기 타
2017년	167	180,572	111,123	69,449
2018년	170	241,343	154,378	86,965
2019년	168	276,122	148,311	127,811
2020년	169	258,410	153,221	105,189
2021년	163	283,916	175,748	108,168
2022년	168	292,945	175,651	117,294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3)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심신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 외에도 보호시설로의 연계, 의료, 법률구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2년에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군 성폭력 특화 상담소를 신규 국비지원함으로써 ’22년말 현재 국비를 지원받는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가 128개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30개소 포함), 성폭력상담소가 105개소로 총 233개소이다. 또한 ’16년부터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18년부터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숙식 제공, 심신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자립 및 자활 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회복을 돕고 있으며, ’19년 부산 1개소, ’20년 인천 1개소, ’21년 광주와 제주 1개소를 신규 개소하였다. ’22년말 현재 정부 지원 시설은 99개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4개소)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자립 지원을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 치료, 학업 및 자활지원 등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특별지원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퇴소자가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6개소도 운영 중이다.

|표 5-①-12|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 상담소	계	202	232	232	232	233
	가정폭력	98 (30)	128 (30)	128 (30)	128 (30)	128 (30)
	성폭력	104	104	104	104	105
지원 보호시설	계	96	97	99	99	99
	가정폭력	65	65	65	65	65
	성폭력	31	32	34	34	34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개소수임

또한 취약계층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22년 말 현재 장애인 상담소는 27개소(성폭력피해상담소 23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통합상담소 3개소), 장애인 보호시설은 12개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교통비 및 종사자 인건비(상담소 1명, 보호시설 2명)를 추가 지원하는 등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한편 피해자 보호시설 여건상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는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0세 이상 남아 동반 피해자가 쉽게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 시설을 '11년 8개소 선정하였고, 지속 확충하여 '22년 현재 총 23개소를 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08년부터 성폭력·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주거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이는 보호시설 퇴소와 동시에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에 처한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공간의 지원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임대주택 지원으로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하여 피해여성들을 보호·지원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피해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완전한 자립에 이르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일련의 지원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피해여성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으로,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3인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단독가구로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관리비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필요시 2년 간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역별로 구성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 10호당 「자립상담원」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자립상담원은 일선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의료와 소송 지원,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등 피해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2년 말 기준 임대주택 356호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표 5-①-13| 주거지원시설 운영 현황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급물량	246호	275호	294호	314호	335호	344호	354호	356호

마. 성폭력·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

1)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10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제도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와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 분석 및 매뉴얼 개발 연구」에 이어 '11년에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기존매뉴얼의 취약부분 보완 및 정책 입안과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해자의 교정·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8년도까지 여성가족부가 운영했던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19년도부터 범죄 가해자 교정업무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로 이관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19년도에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중 법무부의 보호관찰소 관할 '수강명령' 보호처분,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법무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법원의 상담위탁 대상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자 수는 6,299명, 2022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자 수는 7,985명이다.

|표 5-①-14|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여성가족부)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폭력	9,341	9,344	10,021	7,878	6,942	6,299	7,985
성폭력	1,449	1,662	1,465	-	-	-	-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9년도부터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교정업무는 소관부처인 법무부로 이관

2021년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자 수는 2,213명, 2022년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자 수는 2,783명이다.

|표 5-①-15|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법무부)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폭력	2,316	2,229	2,226	2,306	1,804	2,213	2,783

※ 출처 : 법무부 2023 교정통계연보 기준

2)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에서는 '06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심신 회복 등을 위한 정서·심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 시 동반한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표 5-①-1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명, 건)

연도별	계		피해자		동반아동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2017년	4,709	12,799	3,362	9,829	1,347	2,970
2018년	4,126	15,511	2,981	12,412	1,145	3,099
2019년	4,326	14,363	3,160	11,454	1,166	2,909
2020년	4,117	11,645	3,479	9,911	638	1,734
2021년	3,950	10,677	3,230	8,937	720	1,740
2022년	4,468	13,601	3,732	11,257	736	2,344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표 5-①-17|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현황

(단위 : 명, 건)

연도별	계		피해자		동반아동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2017년	4,709	12,799	3,362	9,829	1,347	2,970
2018년	4,126	15,511	2,981	12,412	1,145	3,099
2019년	4,326	14,363	3,160	11,454	1,166	2,909
2020년	4,117	11,645	3,479	9,911	638	1,734
2021년	3,950	10,677	3,230	8,937	720	1,740
2022년	4,468	13,601	3,732	11,257	736	2,344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또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시·군·구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11년부터는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8년부터는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18.1.1.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입소 중 피해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 진료비(1인당 50만원 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사례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적정성 검토의견을 첨부(외상치료 비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외)하여 지원토록 하는 등 의료비 지원 절차를 개선하였다.

3)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확대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 방어·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03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가사 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시작으로 '22년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10년도부터는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으로 구조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22년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건수는 11,433건이다.

|표 5-①-18|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500	10,110	10,514	11,010	11,433
성폭력	1,134	1,477	1,585	1,435	2,442
가정폭력	7,366	8,633	8,929	9,491	8,503
스토킹·데이트폭력	-	-	-	84	488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8.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양상은 기존 강간 등의 성폭력과 다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피해자 지원기관이 필요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의 경우 유포된 불법촬영물이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18년 4월 30일에 개소하여 피해자에게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2년까지 총 17,762명의 피해자에게 총 728,639건의 지원을 했다. ’19년에는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 운영을 강화하였고, ’20년에는 피해촬영물 신속삭제를 위해 24시간 상담 지원체계를 도입하였다.

|표 5-①-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

('18.4.30~'22.12.31, 누적건수)

총 지원건수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연계	의료 지원 연계
728,639	58,689	666,144	3,381	425

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역사회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피해지원기관 7개소를 지정해 디지털 성범죄 전문상담사를 배치(각 2명)하여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2년도에는 1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를 통해 심층 상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한 불법영상물 등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피해 지원과 치유 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협의체 운영

변형된 형태의 다양한 폭력이 사회문제로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부처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젠더폭력 방지 TF' 운영, 스토킹처벌법 입법 추진을 위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 운영, 경찰청-여성가족부 실무협의회 정례 개최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하여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되어 스토킹범죄가 명확히 규정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2년에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취학 지원, 지원시설의 설치 및 업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벌칙 등을 규정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2년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계 등 분야별로 확산된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민관협의체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이슈·현안을 논의하고 추진과제에 대해서 점검 및 독려하였다.

* 교육부 등 15개 중앙부처 및 사회단체, 전문가 18명으로 구성(위원장 여가부장관)되어 '18년 3월부터 '19년까지 8차례 개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이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협의체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위원회 3회, 실무위원회 3회, 전문위원회 3회를 개최하여 여성폭력방지 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치 이행현황 등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등 15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위원장 여가부장관)

제 2 절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활동 강화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성가족부는 ’10년부터 성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유치원, 학교 등에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웹사이트 www.sexoffender.go.kr, 모바일 앱)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을 위해 이름·주소·읍면동 등 여러 검색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위치를 지도 기반으로 알려주는 ‘실거주푸시알림’으로 알려주는 ‘내 주변 성범죄자 찾기’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20.11월 최초 시행)는 그 동안 집행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고지 방식을 카카오톡·네이버앱 동시 고지로 변경(’22.1월) 하였고, ’21년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7.5%에서 ’22년 32.2%로 4.7% 상승하였다.

또한, 모바일고지 열람 시 개인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인증서 방식에서 PIN번호 인증으로 절차를 간소화('22.6월)하였으며, 공개·공지 항목 중 실제거주지 주소를 도로명으로만 제공하여 그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로 법정동명을 함께 고지('22.12월)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고지 열람률과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바일고지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 신고의무

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6.6.30.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청소년보호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쉼터·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체육시설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08년 2월부터 성매매피해상담소·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10년 1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년 4월부터 개인과외교습자, '12년 8월부터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가정방문 학습지교사, '13년 6월부터 경비업법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활동기획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소·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등이 추가되었다. '16년 11월에 취업(예정)자가 다수일 경우 일괄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 본인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

교사 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하였다. 또한, 인터넷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구축(경찰청)하여 '15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8년 7월부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와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기관·시설이 추가 되었으며, '18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이, '20년 5월 27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국제학교가, '23년 10월 12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성교육전문기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이 추가 되었다.

취업제한기간은 최초 도입 당시에는 5년이었으나 '08년 2월 4일부터 10년으로 확대되었고, 적용 대상 성범죄는 제도 도입 시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10년 4월 15일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 시행으로 '18년 7월부터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 이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있으며, 종전('18.7.16. 이전)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3년 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1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21.1.1. 시행)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업무 등 3개 업무 19개 기관의 57개 국가 위임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자치사무로 전환되었다.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와 취업자(또는 사실상 노무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즉시 해임하거나 기관폐쇄, 인·허가 취소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초·중·고, 대학),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체육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고의무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고의무자 교육	15,550	19,021	19,612	19,929	9,003	8,550	14,780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및 대면 교육 어려움으로 교육 참여자 수 감소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3. 청소년 성보호 예방 활동

가. 성매매 피해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20.5.19, 시행 '20.11.20)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전국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대상아동·청소년을 위한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을 종료하고, 2021년부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8개소(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를 설치하고 피해자 긴급지원, 상담

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학업지원, 진로취업지원, 자활자립지원, 타기관 연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지원은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와 주거를 포함한 생계비를 지원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한다.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1:1 상담, 피해자 가족상담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법률지원은 경찰·검찰 조사 동행, 재판 동행, 민사소송지원 등이다. 학업지원은 피해자가 성매매로 재유입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학원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장애인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은 법 개정 이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된 두 번째 해로 826명의 피해자에게 상담·법률 지원 등 21,371건의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용자 만족도는 91.1점에 이르렀다.

○ 피해자 현황('22년)

(단위 : 명, %)

계	10세 이상 20세 미만				기타
	10~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826 (100.0%)	53 (6.2%)	393 (45.6%)	314 (36.4%)	82 (9.5%)	20 (2.3%)

○ 피해자 지원건수('22년)

(단위: 건, %)

계	긴급 지원	상담	심리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학업 지원	자활·자립	연계 지원	사후 지원
21,371 (100%)	696 (3.3%)	14,576 (68.2%)	1,399 (6.5%)	1,253 (5.8%)	2,586 (12.1%)	247 (1.2%)	311 (1.5%)	254 (1.2%)	49 (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500시간 이내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교육이 병과 되며 보호관찰소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등의 집행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일부 위탁하여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재범방지교육을 통해 성범죄자의 피해자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왜곡된 성인식 등을 바로 잡아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표 5-②-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육실적	88집단 (969명)	88집단 (1,002명)	88집단 (1,018명)	88집단 (1,039명)	88집단 (965명)	88집단 (1083명)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익명의 불특정 다수 간의 대화가 가능한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성매매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채팅상담과 온라인상 청소년 성매매 예방 홍보를 실시하여 쉼터 연계 및 교육프로그램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상담인원 : ('19) 4,284명 → ('20) 3,611명 → ('21) 4,396명 → ('22) 4,174명

특히 '22년에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매매 권유·유인 정보 796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내부 신고 365건을 실시하여 청소년 성매매 방지에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포상금)에 따라 '12년 3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발견이 힘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선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14년 1월에는 신청인이 사건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는 방식에서, 여성가족부가 사건 결과를 확인하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후 포상금 지급 신청 건수는 대폭 증가하며 간소화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 ('12~'13) 포상금 신청건수(0건) → ('22) 포상금 신청건수(36건)

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22년 기준 전국 57개소(16개 시·도)를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전문교육기관(고정형/이동형)으로,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현황(전체) : ('07) 21개소 → ('13) 50개소 → ('14) 54개소 → ('20) 58개소 → ('22) 57개소

특히 '11년도부터는 이동형성문화센터를 운영하여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기타 안전인프라가 부족한 고위험 노출지역 중심으로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현황(이동형) : ('11) 1개소 → ('13) 7개소 → ('16) 10개소 → ('20) 11개소 → ('21) 10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학부모 대상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의 참여인원은 '22년 1,829천명이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95.1점으로 목표치 93.8점을 상회하였다.

※ 참여인원 : ('18) 2,297천명 → ('19) 2,475천명 → ('20) 1,031천명* → ('21) 1,640천명* → ('22) 1,829천명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및 대면 교육 어려움으로 교육 참여자 수 감소

※ 만족도 : ('18) 93점 → ('19) 94점 → ('20) 94.5점 → ('21) 95.3점 → ('22) 95.1점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노후화된 교구와 교재의 교체를 지원하고, 교육 접근성 및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기타 성범죄 노출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다.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11년 2개 시·도(경기, 충남)에서 정책연구학교(중학교 2, 고등학교 2) 대상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12년에는 4개 시·도(경기, 충남, 전북, 경북)에서, '16년부터는 8개 시·도(서울, 부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서 초·중·고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학교 성 인권 실시지역 : ('11) 2개 시·도 → ('14) 7개 시·도 → ('16) 8개 시·도

또한,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12년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22년에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로 장애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회차를 신규로 개발하였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12년 4개 시·도(인천, 대전, 경기, 경남)로 시작하여, '15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 장애 성 인권 실시지역 : ('12) 4개 시·도 → ('14) 14개 시·도 → ('15) 17개 시·도

'22년 기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참여인원은 14,428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참여인원은 2,884명으로,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성 인권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 학교 성 인권 교육실적 : ('20) 14,466명 → ('21) 14,614명 → ('22) 14,428명
※ 장애 성 인권 교육실적 : ('20) 2,853명 → ('21) 2,702명 → ('22) 2,884명

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 개정('20.12월 개정, '21.6월 시행)에 따라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23) 추진을 위한 예비연구를 '22년 실시하여 조사 방향 및 조사 설계·세부 문항 구성 등을 검토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통해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및 피해 실태 현황 파악 등 연구 결과를 법률 개정 및 정책 수립 시 통계자료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 3 절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

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분과 운영

정부는 '03년 6월 성매매방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자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듬해 4월에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정례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 설치되어 있던 「성매매방지기획단」을 '04년 11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으로 전환하고, '10년 5월 국무조정실에서 여성부로 이관하였다.

추진점검단 회의는 '04년 12월 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9년 12월 제56차 회의까지 예방, 보호, 집행 등 3대 분야별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각 부처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20년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19.12월 시행)을 계기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분과로 개편하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22년 9월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성매매 방지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성착취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 유해정보 차단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방지분과 주요 논의과제

- (법·제도개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길들이기(그루밍) 대응 강화, 수사 실효성 강화 등
- (유해정보 차단 및 단속 강화) 관계부처 합동단속·처벌 강화,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에 무작위(랜덤채팅) 앱 포함 등
-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노력)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담서비스 확대,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 개발

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

성매매방지 피해자 지원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성매매방지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 표 5-③-1 | 연도별 성매매방지법령 주요개정사항

연 도	개 정 내 용
2010년	•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평가 규정 신설(법) • 지원시설 등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 규정 신설(법)
2012년	• 유흥종사자를 두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항과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업무 및 연락처 등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법)
2013년	• 사회적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시설 이용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 학교 등에 제출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서식 개정(규칙)
2014년	• 성매매예방교육 사후점검 강화, 성매매추방주간,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보호비용 지원 등 전면개정(법·시행령·시행규칙)
2015년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연 도	개 정 내 용
2016년	• 상담소등 폐지·폐쇄 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화(법)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및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구 게시 의무화(법) •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 상담소등 휴지·폐지 또는 폐쇄 시 해당 시설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 규정, 상담소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교육과목 조정 및 이수시간 축소(시행규칙)
2017년	•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탄력적 대응과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성매매 실태조사 항목의 포괄적 조정(시행규칙)
2018년	•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함(법) • 성매매경고문구를 게시해야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을 명시(법)

2. 성매매 예방 및 국민 의식 개선

가.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성매매 관련 법 집행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과 함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근원적 요소이며, 이를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08년도에는 교육실시 의무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였다.

나. 성매매 방지 국민 의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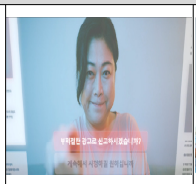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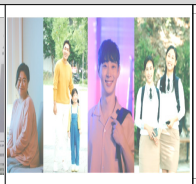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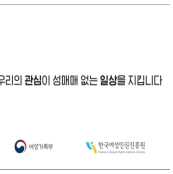
'22년 제8회 성매매 추방주간(9.19.~9.25.)을 맞이하여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라는 표어 아래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불법전단, 문자메시지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불편함, 무관심을 일깨우는데 노력하자는 취지로 새로운 공익광고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공중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2022년 성매매추방주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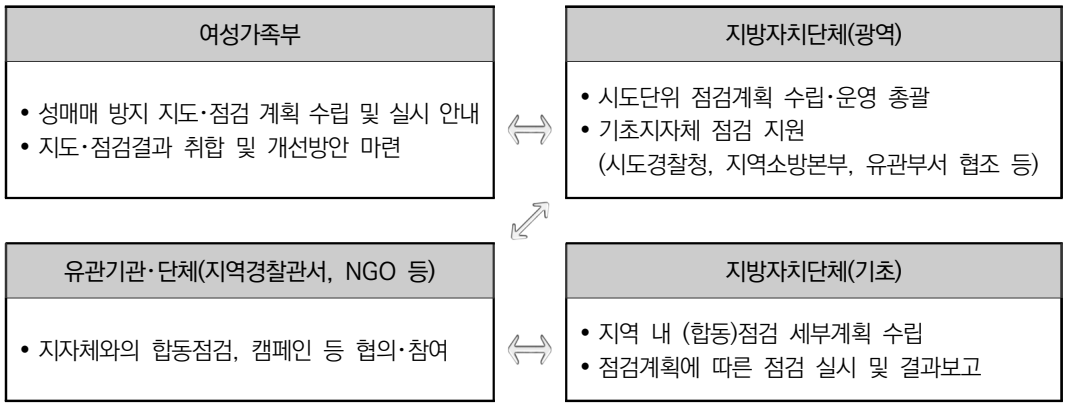
- **(법적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홍보기간)** '22. 9 ~ 10월(2개월간) * 성매매추방주간 : 매년 9.19~25(1주간)
- **(주최/주관)**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추진방향)** 성매매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메시지* 홍보

 * 슬로건('22년) :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
- **(주요내용)** 관계부처 회의(9.22), 공익CF제작·송출(20·40초), 포스터 제작 배포 등

포스터	공익CF, 토론회			
				
	불편하지만 쉽게 외면한	무관심이 관심이 되는 순간	성매매 고리는 끊어집니다.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

다. 지자체 주관 성매매 방지 등 지도점검

자치경찰제 시행('21.7월) 계기로 지자체 주관으로 유흥업소 등 점검을 통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실시하였는데, 총 141개 시군구에서 자치경찰,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집결지, 유흥주점, 마사지 업소 등 총 12,030개소를 현장 점검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일반시민 1,000명으로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성매매 유인 광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 고발 등을 실시하였다.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22년에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참여자지원금 단가를 인상(시간당 7,320원→7,780원)하고, 자활지원센터를 1개소 신규 개소하여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자 상담, 긴급구조 활동, 의료·법률지원 및 지원시설에의 연계 기능을 하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31개소가 운영되었고, '22년 기준 59,931건의 상담을 수행하였다.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숙식, 상담, 의료·법률서비스, 직업교육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39개소가 운영되었다. '22년 기준 지원시설 및 그룹홈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하며 보호와 자립·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성매매 피해자는 921명이었다. 자활 기반을 갖춘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주거를 제공하며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5-③-2| 2022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	6	2	2	1	1	1	1	5	1	1	1	1	3	1	3	1

※ 출처 :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표 5-③-3| 2022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

(단위 : 건)

계	내방·방문	음성통화	온라인	기 타
59,931	18,543	27,597	12,949	842

※ 출처 :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표 5-③-4|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	24	5	3	2	1	1	1	1	2	1	1	1	1	1	1	1	1
청소년	14	5	2	1	–	1	1	–	–	–	–	–	–	1	–	3	–
외국인	1	–	–	–	–	–	–	–	1	–	–	–	–	–	–	–	–
그룹홈	11	3	2	1	–	1	–	–	1	–	–	1	1	–	–	1	–

※ 출처 :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표 5-③-5|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 현황

(단위 : 명)

소 계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그룹홈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921	469	330	77	45

※ 출처 :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전국 13개소의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성매매에서 벗어나 전업을 준비하는 탈성매매 여성이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탈성매매 여성은 사회적·정서적·경제적인 지지 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신분 노출의 두려움 등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활지원센터에서는 공동작업장 및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탈성매매 여성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보호된 일자리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탈성매매 의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5-③-6| 2022년 자활지원센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	2	1	1	1	1	1	-	3	-	-	-	1	1	-	-	1

※ 출처 :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표 5-③-7| 2022년 자활지원센터 운영실적

(단위 : 명, 건)

지원인원 (실인원)	자활참여자지원사업		적성검사·취업·기술훈련		지원성과	
	참여인원 (연인원)	지원건수	참여인원 (연인원)	지원건수	취업인원	진학인원
782	377	2,316	2,457	21,434	420	20

※ 출처 :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이처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는 성매매 피해자의 구조 및 보호 강화와 함께 효율적인 자활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체계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추진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04년 처음 시작되었다.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 상담 후 피해자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있다.

동 지원 사업은 성매매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선불금 등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진학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2년에는 의료지원 15,356건, 법률지원 13,722건, 직업훈련 및 진학교육 14,799건 등을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지원하였다.

(단위 : 건)

연 도	계	의 료	법 률	직업훈련·진학교육
2018년	53,334	17,004	16,625	19,705
2019년	55,558	18,955	17,435	19,168
2020년	48,950	16,427	17,327	15,196
2021년	49,516	17,470	18,603	13,983
2022년	43,877	15,356	13,722	14,799

※ 출처 :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다.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04년 성매매 여성의 탈업소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된 집결지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은 자활지원사업을 거쳐 '11년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18년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으로 재편되어 시행되고 있다.

'04년 11월 부산(완월동)과 인천(숭의동)의 2개 집결지에서 시작하여, '22년에는 13개 집결지에서 상담 및 의료·법률 등을 지원하였다.

|표 5-③-8| 2022년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현황

(단위 : 개소, '22.12.31.기준)

지 역	집결지명	상담소명	열린터 운영	비 고
계	13지역	13개소	10개소	
서울	영등포 역전	다시함께상담센터	○	
	천호동	소냐의 집	○	
	성북구	여성인권센터 보다	○	'18 신규
부산	완월동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미남촌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	'21 신규
대전	중앙동	느티나무	-	'18 신규
경기	수원 매산로	어깨동무	○	
	성남 중동	경원사회복지회 with us	-	
	파주 대능리 용주골	여성인권센터 쉬고	○	
전북	평택 삼리	평택시 여성인권상담센터 '품'	○	'22 신규
경북	전주 선화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22 신규
경남	포항 중앙대학	새날	○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활동가들은 집결지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이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아웃리치와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2년 현장 활동가들은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19,84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942건의 의료지원과 1,145건의 법률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2,314건의 직업훈련과정을 지원하였다.

제 4 절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실효성 강화 및 인식제고

1. 여성·아동 폭력예방 내실화

가. 공공기관 폭력예방 의무교육 강화

여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으로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1999년 「(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초로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 순차적으로 의무화 교육으로 도입되었다. 교육 대상 또한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폭력예방교육을 받는 기관은 총 6만 여개 기관에 이른다.

예방교육 대상기관은 교육이수실적을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일부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또한 실적점검 결과 교육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특별교육, 언론공표, 개선계획서 제출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9.8%이고 기관장 교육 참여율은 99.8%, 전체 직원 참여율은 92.9%로 폭력예방 의무교육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또한 ’21년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고위직의 교육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22년부터 고위직 별도 교육 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 기관장을 공표하는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내실화 하고 있다. 더불어 폭력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2020년부터 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나.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콘텐츠 개발·보급

’13년 이후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아동·여성의 안전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역량 있는 전문강사를 확대 양성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22년 3,130명 교육하였다.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등 분야별 강사를 성평등 관점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통합교육 전문강사를 지속 확대하여 ’22년(890명)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활동 인원(’21년 위촉 인원 포함)이 ’14년(81명) 대비 9.1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밖에 경찰청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45명(’20~’22년 양성)의 경찰 직무 기반 전문강사를 배출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강사의 역량을 검증하고 강화하기 위해 강의에 대한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동료강사 모니터링 등을 실시(262회, 334명)하였으며, 보수교육(23회), 강사역량 강화과정(10회) 개최 등을 통해 2차 피해,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스토킹, 백래시 등 최근 사회 현안을 공유하였다. 또한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별도교육 의무화에 따라 관련 교육 콘텐츠 전달 등 정책적 수요에 대한 선제적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교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대상이 국가 및 지자체 등 기관에 소속된 자('99)에서 중·고등학교 학생('04), 원아 및 보육원생('12)까지 확대됨에 따라, 효과적인 교육 및 교육내실화를 위해 대상별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대상별, 내용별, 생애주기별, 기관별(대학, 산업직군 등), 형태별(교수안, 교재, PPT,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특히, '22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젠더기반 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14종)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등 효과적인 콘텐츠 전달체계를 마련하였고, 고위직, 신규 임용자(사이버교육) 및 예방교육 담당자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2년 기준으로 개발, 발굴, 지원된 폭력예방교육 추천 콘텐츠는 202종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http:// shp.mogef.go.kr)을 통해 공개 제공되고 있다.

2.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교육

가.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

'21년 17,847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교육 실시율 99.9%, 직원 참여율 93.1%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관별 고충전담창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고충상담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고충상담원

교육을 받고 있다. 고충상담원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조언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실천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개발·보급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관점의 전문적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14년)」을 개발·배포, 민간 사업장·공공부문·대학교의 세 가지 유형별로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의 역할을 제시한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매뉴얼」('15년)을 개발하여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 등 1,400여개 기관에 보급하였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조를 통하여 피해자·업무담당자·관련자·관리자 등의 입장에서 성희롱 신고, 피해자 보호, 사건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17년 1월 보급하였다.

특히 '18년 '미투운동' 확산으로 그간 은폐되었던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범정부적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었다. 이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국가기관 등에 제작·배포하였다.

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직장 내 여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건처리 절차 등을 최초로 규정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2021년에 개발하였다.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준비된 것이며,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유형을 제시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2차 피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등 유의사항도 포함되어 기관에서 실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1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2차피해방지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미제정 기관에 지속 독려하였으며, '22년에는 공직유관단체에 지침 제정을 권고하여 공공부문 내 여성폭력 2차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였다.

3.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가.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에 따라 성폭력, 2020년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통합하여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였다.

2020년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에서는 '사라지는 성폭력, 살아나는 인권존중'을 주제로 하여 여성폭력추방주간 포스터 공유, 퀴즈 이벤트 등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 정책 토론회, 아동·여성폭력방지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여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였다.

2021년에는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를 표어로 하여 우리 모두가 여성폭력 예방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기념식 및 여성폭력 대응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2년에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함께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기념식 및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여성폭력방지 유공자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다.

나. 가정폭력 예방 홍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안내서」('12년), 「가정폭력 현장사례집 및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지원 안내 리플렛」('13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국정만화」('14년), 「보라데이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15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집」('16년) 등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영상 송출 등 가정폭력 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14년 8월부터는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로 지정하여 '가정폭력 =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각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다. '15년에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신설하였다. '16년에는 제1회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계기로 전국에서 가정폭력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가정폭력 예방 홍보 영상 송출 및 라디오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정폭력 방지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17년에는 전국에서 가정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가정폭력 예방 홍보 영상 송출 및 라디오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18년에는 폭언, 경제적 억압 등 정서적 폭력도 가정폭력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가정폭력을 주제로 하는 토크콘서트, 특별전시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19년에는 가정폭력 예방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1366 홍보투어’, 가정폭력 예방 길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다.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내용을 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카카오 모멘트, 지하철 및 버스 광고판에 송출하였다. 아울러, 라디오 홍보 및 셀럽 영상 캠페인, 가정폭력 유형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온라인 이벤트 등을 전개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다. ’21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 영상을 유튜브, 카카오 모멘트 등에 송출하였으며, ’22년에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수도권 버스 옥외광고, 유튜브 등에 송출하였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HAPTER
6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

제1절 결혼이민자 지원 231
1.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231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239

제2절 여성장애인 지원 242
1.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242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43

제3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245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 245
2. 생활안정 지원 강화 246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정책 만족도 249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등 수행 250

제4절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255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립 지원 255
2. 한부모 자립 지원 259
3.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262
4. 북한이탈여성 지원 264

제5절 여성의 건강·안전 지원 강화 267
1.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267
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270

제 1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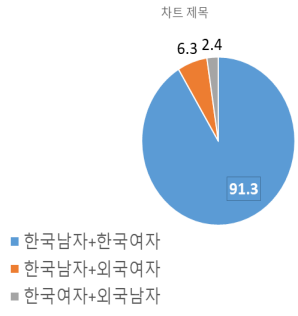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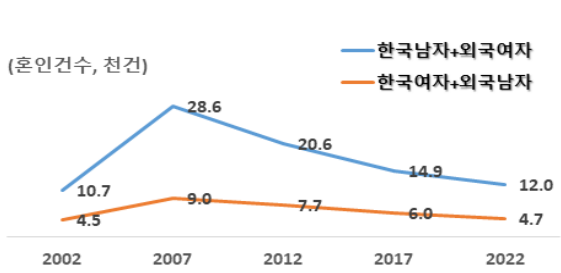
결혼이민자 지원

1.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가. 다문화가족 규모와 전망

다문화가족은 전체 38.5만 가구(가구원 112만명)로 전체 가구대비 1.8%(가구원 2.2%)를 차지하며, 결혼이민자의 수는 17.4만명, 귀화자가 21만명 수준이다. 국제결혼 감소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전체 결혼이민자·귀화자 집단에서 중·장기 정착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 10년 이상 장기 정착비율 : '15년 48% → '18년 60.6% → '21년 68.8%

총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 2022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추이, 2002~2022
	

※ 출처 : 통계청, 「2022년 혼인·이혼통계」

|그림 6-①-1| 2022년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결혼이민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1년 11월 현재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귀화자)는 38.5만명에 달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결혼 이민자가 7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신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다.

|표 6-①-1| 2021년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국적	합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	기타	기타
합계	385,512	124,213	73,244	87,305	21,187	14,170	9,163	7,316	4,165	44,749	32,256

※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21. 11월 기준)

나.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사업 현황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확대

’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정보 제공, 원만한 가족 관계 유지에 필요한 상담 등의 서비스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기반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 지체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06년 21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이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22년 기준 전국에 230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6-①-2| 2022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30	26	14	8	9	5	5	5	1	31	18	12	15	14	22	24	19	2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정기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및 언어소통 지원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문제[8]를 꼽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 습득은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동시에 가족생활, 사회활동 등 한국생활 전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한국어 교육이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을 위해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2년 한 해 동안 전국 231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599,261명의 결혼이민자 등이 참여했고, 방문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 2,531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밖에 한국생활 초기에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들은 가족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이나 병원진료·공공기관 이용 등을 위해 통·번역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2년에는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12명의 통번역 전담인력이 배정되어 9개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표 6-①-3| 2022년 언어권별 통번역 전문인력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 명)

계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네팔어
312	177	74	19	10	12	8	9	1	2

※ 출처 : 2022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

8) 결혼이민자·귀회자의 22.9%는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문제를 지목함(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21)

|표 6-①-4| 통번역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일상생활	의 료	법 률	교 육	기 타
2018년	437,474	77,837	14,844	31,440	129,758	183,595
2019년	473,364	90,210	16,864	32,764	138,708	194,818
2020년	430,976	100,239	13,385	24,859	122,735	169,758
2021년	483,093	100,537	25,116	24,071	143,766	189,603
2022년	512,814	108,459	16,709	33,245	154,537	199,864

※ 출처 : 2022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이와 함께 '11년부터 '다누리콜센터'를 개설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등이 손쉽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3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결혼이민자 가족생활 지원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낯선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나 시부모 등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언어·문화차이로 인한 장애에 직면한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14년부터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맞춤형 지원 및 이혼, 별거 등 위기가족 사례관리를 위해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2년에는 사례관리사 208명을 배치하여 심층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가족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2년에는 전국 230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41,49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와 함께 자녀의 발달 단계별 부모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형태의 부모교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2년에는 2,913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학습 및 생활지도, 정서 지원 등을 위한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7,746명에게 제공하였으며 300명의 다문화 언어발달 지도사를 통해 7,367명에게 언어발달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180명의 이중언어 코치를 통해 17,921명에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 10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착 장기화에 대응하여 정착 단계별 자립지원 패키지를 '16년 78개소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22년에는 207개소에서 운영하였다. 결혼이민자에게 미래설계, 일·가정·사회 역량 강화 컨설팅, 취업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 및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DB를 구축하여 이중언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 분야에 참여·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구성하여 결혼이민자가 직접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자녀 세대, 특히 학령기 자녀 증가에 대응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207개소에서 추진하여 가족관계 개선과 사회성 발달, 진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등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어 습득과 가족관계의 안정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먼저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이 최근에 온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자조모임과 같은 자발적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역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조모임은 '22년 15,208명(연 인원)이 참여하여 결혼이민자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9]에 머물러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미취업 상태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 직장문화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취업훈련정보 제공, 일자리 발굴 및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에는 16,013명(연 인원)이 참가하였다. 이밖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와 적극 연계하여 직업훈련 과정 희망자 모집 및 연계,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5)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 1577-1366) 운영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 개정('13.8월)에 따라, 기존의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을 '14년 4월에 통합하여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의 번호로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하였다.

법정 기관명	운영 기관명	전화명	대표번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다누리콜센터	다누리콜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중앙센터(서울) 1개소를 비롯하여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수원, 전북 전주, 경북 구미 6개소 지역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출신 상담원을 75명을 포함한 총 99명이 전화·방문·내방·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연중 무휴), 13개 언어로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게

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비율이 14.3%, 200~300만원 미만이 24.8% 차지(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021년)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의 제공, 폭력피해 및 부부·가족 갈등 상담과 긴급 지원을 수행한다.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의 '22년도 총 상담 건수는 208,656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담 내용은 생활정보, 체류·국적·취업·노동, 이혼문제·법률지원, 부부·가족 갈등 상담, 폭력피해 순이었다.

|표 6-①-5|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연도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9,887	110,516	116,039	124,401	128,779	132,115	134,849	161,466	194,802	208,65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68,524									
다누리콜센터	21,363									

※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표 6-①-6| 2022년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상담실적

○ 상담 방법별 현황

(단위 : 건)

계	전 화		방 문	출 장	번역, 사이버, 기타
	양자통화	3자통화			
208,656	128,010	39,360	558	126	40,602

※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이용자 출신국별 현황

(단위 : 건)

계	베트남	중국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208,656	53,614	31,952	8,103	16,053	14,088	22,958
우즈베키스탄	**태국**	**라오스**	**네팔**	**일본**	**한국**	**기타**
3,644	18,348	333	3,068	6,041	5,530	24,924

※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상담 내용별 현황

(1통화로 여러 건 상담 있음. 단위 : 건)

계	이혼문제 법률지원	부부·가족 갈등상담	체류·국적·취업·노동	폭력피해	생활정보	쉼터 안내	기타
209,666	16,409	13,108	18,680	12,686	147,585	1,049	2

※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표 6-①-7|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업 내용	대 상	주요 내용
방문 한국어교육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적 한국어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집합)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제공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향상교육 ※ 가족교육, 배우자·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임신·출산·영아기~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자녀의 양육 관련 교육·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만 3세~만 12세의 다문화가족자녀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2세 초과하여도 포함)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독서, 숙제 지도, 정서발달 지원 등)
개인·가족상담·사례관리 (센터 내방· 방문·전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자존감 향상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만 12세 이하 언어평가 및 언어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2세 초과하여도 포함)	다문화가족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발달 지원을 위하여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실시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일상생활 속에서 이중언어를 자연스레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코칭 등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근거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07년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4개소의 운영 지원을 시작으로 ’21년 현재 전국 총 28개소를 운영지원 하고 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는 당초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동법률 개정(’20.6.9)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입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쉼터에서는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표 6-①-8|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지원 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지원	수사·법적지원	자립	출국	가해자	동반아동 지원
2018년	77,652	17,164	22,092	10,777	3,606	7,113	79	1,111	15,710
2019년	69,004	18,803	16,146	3,490	10,572	3,839	77	905	15,172
2020년	62,695	19,140	12,325	7,670	3,405	2,295	49	767	17,044
2021년	72,546	19,266	13,892	10,108	3,360	3,468	106	689	21,657
2022년	76,220	20,581	12,681	10,420	2,711	4,622	92	647	24,466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0년부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14년 1개소, ’17년 1개소를 확대하여 ’20년 현재 총 3개소(서울 2개소, 충남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10년에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서울에 설치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한국사회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6-①-9|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지원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심리정서·사회적응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	자립지원	동반아동지원
2018년	2,980	958	860	70	225	137	730
2019년	6,282	1,499	1,269	208	423	194	2,689
2020년	9,712	1,970	1,589	129	459	142	5,423
2021년	10,443	3,190	2,463	96	589	557	3,548
2022년	9,253	2,174	1,449	206	619	801	4,004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표 6-①-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지원 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자활지원	직업훈련	의료지원	법률지원	동반아동	자립 및 사후관리
2018년	5,835	2,712	347	351	48	1,769	608
2019년	6,221	2,628	350	464	57	1,993	729
2020년	5,812	2,893	346	500	23	1,352	698
2021년	5,829	3,010	356	521	43	1,304	595
2022년	6,021	2,880	293	388	32	1,733	695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개정('18.6.13 시행)으로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화 상담소 운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9년부터 신규로 이주여성 상담소 5개소(인천, 대구, 충북, 전남, 제주)를 설치하고 '20년에 4개소(서울, 강원, 충남, 전북)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6-①-11 이주여성 상담소 상담실적

(단위 : 건)

연도	계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 폭력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2019년	5,332	985	170	85	3	7	963	449	5	151	42	2,472
2020년	9,613	2,785	567	6	26	214	864	436	-	592	11	4,112
2021년	24,691	9,920	1,305	10	101	114	2,734	1,059	4	1,482	372	7,590
2022년	33,515	10,347	1,549	30	134	52	4,390	926	1	3,536	55	12,495

제 2 절

여성장애인 지원

1.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욕구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를 근거하여 ’06년부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제2항을 근거로 ’10년부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사업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지원사업’, 그리고 ‘여성장애인 특화교육지원사업’으로 구성하여 지원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우선으로 기초학습과 직업교육을 지원하였다. 소관부처가 다른 양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 방지를 위해 ’15년에 통합 운영토록 결정되어 ’16년부터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양 사업의 통합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역량강화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원 등의 세부 사업들을 통해 여성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장애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장애여성들에게 필요 욕구(또는 수요)에 따라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존감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표 6-②-1|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추진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수행기관	42개소	43개소	43개소
이 용 자	76천명	106천명	88천명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정액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절 차	주 체	내 용
신청 · 접수	읍 · 면 · 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		
대상자 자격확인	읍 · 면 · 동	○ 등록장애정보 확인(행복e음을 통한 확인) ○ 지원대상 여부 확인(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
⇩		
결정 및 지급	시 · 군 · 구	○ 결정 ○ 개별 계좌 입금(e호조)

|그림 6-②-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절차

’15년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 범위를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였고, 16년 12월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항목에 추가하였고 온라인으로도 신청(’17. 11월~)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고, ’19년 11월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표 6-②-2|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추진실적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인원	1,100	1,006	1,021

제 3 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경우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신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한 사람은 ’18년에 1명 등록·결정된 바 있다.

|표 6-③-1|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 명)

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40	239	1	-	-	-	-

※ 출처 : 여성가족부

2. 생활안정 지원 강화

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생활안정지원금(월지원금, 특별지원), 간병인 지원, 건강치료비 및 맞춤형 지원을 하고, 피해자 사망 시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한 사람은 240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10명이다.

|표 6-③-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생존자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 명)

계	생 존			사 망
	소 계	국 내	국 외	
240	10	10	-	230

※ 출처 : 여성가족부

나.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확대

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은 특별

지원금과 월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특별지원금은 최초 등록 시 일정액(4천 300만원)을 지급하며, 월 지원금은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동 등을 '22년에 162만 6천원으로 '21년 154만 8천원 보다 7만 8천원(5.0%)이 증가하였다.

|표 6-③-3|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현황(1인당)

(2022.12.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특별지원금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월 지원금	1,337	1,404	1,474	1,548	1,626

※ 출처 : 여성가족부

다.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의 확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이거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병인 지원 대상자로 보며,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 간병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결정된 지급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과 달리 간병비 지급금액은 정부의 재정 사정과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있다.

’22년 간병비 예산은 1인당 단가는 월 289만 8천원으로 ’21년 월 162만 1천원보다 127만 7천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78.8% 증가하였다.

|표 6-③-4| 최근 5년간 간병비 지원 현황(1인당)

(2022.12.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간병비	1,120	1,360	1,519	1,621	2,898

※ 출처 : 여성가족부

라. 건강치료 지원 및 맞춤형 지원

여성가족부는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건강치료 지원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 집행 투명성 제고와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건강치료 지원 사업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부담 치료비와 약제비, 의약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2년 건강치료 지원 예산은 1인당 연 1,681만원으로 ’21년 1,100만원 보다 581만원 증가하였다.

|표 6-③-5| 최근 5년간 건강치료 지원 현황(1인당)

(2022.12.31. 기준, 단위 :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360	9,828	10,320	11,005	16,807

※ 출처 : 여성가족부

맞춤형 지원 사업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정기 방문, 수시 연락하여 거주 실태 및 건강 상황, 불편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일상생활 지원, 환경 개선 지원, 장제비 지원 등 대상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지원하고 있다. '22년 지원예산은 1인당 연 967만원으로 '21년 1,048만원 보다 81만원 감소하였다.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정책 만족도

가. 생활실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실태조사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및 주거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한다.

'22년 조사 대상자는 총 11명이다. '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연령은 만 93.3세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11명 모두 가족(혈연, 친인척, 양자 등 포함)이 있으며, 이들 중 4명(36.4%)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무료양로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4명(36.4%)은 가족과 동거, 3명(27.3%)은 혼자 살고 있다. 주거형태는 4명(36.4%)은 민간단체 무료양로시설에 거주, 3명(27.3%)은 영구임대아파트, 2명(18.2%)은 지자체 등에서 무료 임대로 제공하는 곳, 1명(9.1%)은 자택, 1명(9.1%)은 월세로 살고 있다.

|표 6-③-6|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연령별 현황

(2022.10.25. 기준, 단위 : 세)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연령(만)	91.5	91.5	92.3	92.9	93.3

※ 출처 :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 여성가족부

나. 정책만족도

여성가족부의 지원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보호자와 당사자가 모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고 각각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만족도는 5.0점 만점 중 3.7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표 6-③-7| 최근 5년간 여성가족부 지원 전반에 대한 만족도

(2022.12.31. 기준, 단위 : 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만족도	4.2	4.4	3.6	3.7	3.7

※ 출처 :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 여성가족부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등 수행

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적·세계적 이슈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여성인권·전시(戰時)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 운영 및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수행하였다.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억·기념사업

여성가족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영상 기념식으로 진행, 특별홈페이지를 통한 응원메시지 보내기, 온라인 갤러리, 라이브 인증 등 다각적인 이벤트를 기획하여 대국민 실시간 온라인 참여를 제고하였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께서도 자택 또는 시설에서 기념식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보호자, 사례관리자(지자체) 등을 통해 참여를 지원하였다.

기념식				에필로그
(주제영상) “진실,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되다”	(기념사) 장관	(헌시) 배우 이유진 낭독	(청소년 합창) 아산중, 역사어린이 합창단 등	피해자 일상영상 & 응원메시지
				

|그림 6-③-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낯섦과 익숙함 : 오드 애드 디디」 특별전을 개최(’22.10.19. ~12.31), 그동안 평면적으로 전달되었던 피해자의 삶과 증언을 시간과 공간, 최신 기술(AI, VR)의 접목을 통해 입체적으로 구현하였다.

특별전시는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현장전시, 3개국어(한, 영, 일)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 및 서울·광주에서의 부대전시(사진·영상전)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과 해외 관람객들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사실과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로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홍보 포스터	전시장 전경	온라인(VR) 전시

|그림 6-③-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

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차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콘텐츠 개발사업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군·일본정부 문서 등 자료구축을 위한 번역사업, 학술 콜로키움 개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연구서* 발간, 연구소 웹진 「결」 운영, 인터렉티브 증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아카이브 814'(www.archive814.or.kr)와 자료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누구든지 활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일본군의 동티모르 점령과 '위안부' 제도', '일본군 전범이 말하는 '위안부' 문제', '일본 국회 회의록으로 보는 '위안부' 문제'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청소년이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작품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 진행된

제9회 공모전은 미술·디자인, 음악·영상 2개 분야로 나누어 작품을 접수하고 온라인 시상식('22.11.28)을 통해 국무총리상, 사회부총리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등 총 24명에게 시상하였다.

2022년에는 총 1,051점의 공모작이 접수되었으며, 영상·음악분야 국무총리상은 공연 '리피티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은 공연 희망 아리랑', 미술·디자인 분야 국무총리상은 손그림 '아물지 않는 상처', 구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은 손그림 '과거와 현재'가 수상하였다.

미술·디자인 분야		영상·음악분야	
			
(국무총리상) 손그림 -아물지 않는 상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손그림 -과거와 현재-	(국무총리상) 공연 -리피티드 (repeated)-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공연 -희망 아리랑-

|그림 6-③-3| 2022년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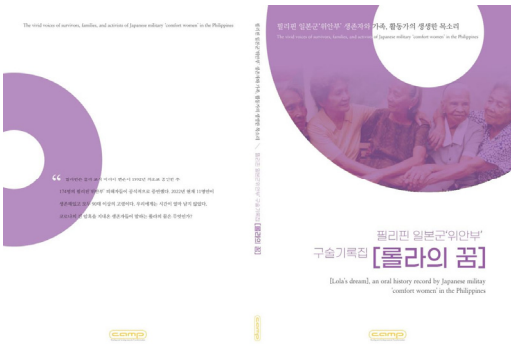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다년간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축적한 지역별 시민단체 총 3개소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단체별로 국제적 연대를 위한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10주년 특별전, 필리핀 일본군'위안부'기록집 『로라의 꿈』 제작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글렌데일시‘위안부’의 날 11주년 특별전





『롤라의 꿈』표지

필리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차 인터뷰

|그림 6-③-4|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

또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가치와 역사적 의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 온라인 국제학술행사,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회의 개최 등의 민간 홍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록물의 역사적 보존은 물론 국내,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보편 가치인 여성인권과 평화의 차원에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 4 절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립 지원

가. 한부모가족 현황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의 변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가족 해체 등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은 매년 10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표 6-④-1| 이혼 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혼 건수(천 건)		109.2	107.3	106.0	108.7	110.8	106.5	101.7
	증감(천 건)	-6.4	-1.8	-1.3	2.7	2.1	-4.3	-4.8
	증감률(%)	-5.5	-1.7	-1.2	2.5	2.0	-3.9	-4.5
조이혼율*		2.1	2.1	2.1	2.1	2.2	2.1	2.0
유배우 이혼율**		4.4	4.3	4.4	4.5	4.5	4.4	4.2

* 인구 1천 명당 건, ** 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천 명당 건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표 6-④-2|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 천가구, %)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가구	19,111	19,838	20,168	20,500	20,891	21,485	22,023
한부모가구	1,608	1,540	1,533	1,539	1,529	1,533	1,510
비율(%)	8.4	7.8	7.6	7.5	7.3	7.1	6.9

※ 출처 : 통계청, “2015~2021 인구총조사”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245.3만원으로 전체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의 절반 수준이며, 순자산액은 10,947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자산의 1/4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가구 평균소득「2021 가계금융·복지조사」416.9만원, 전체가구 평균순자산「2021 가계금융·복지조사」4억 1,452만원

이에 여성가족부는 생계부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주거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표 6-④-3| 2022년 정부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 분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국민기초 수급대상
			소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계	세대	190,421	30,852	30,652	200	159,569
	인원	474,194	108,415	108,215	200	365,779
모자가족	세대	149,888	22,968	22,785	183	126,920
	인원	374,447	80,927	80,744	183	293,520
부자가족	세대	37,209	7,343	7,334	9	29,866
	인원	92,611	26,107	26,098	9	66,504
조손가족	세대	1,307	73	73	0	1,234
	인원	3,054	410	410	0	2,644
청소년모자가족	세대	1,845	397	389	8	1,448
	인원	3,729	820	812	8	2,909
청소년부자가족	세대	172	71	71	0	101
	인원	353	151	151	0	202

※ 출처 : 행복e음 복지정보통계시스템(DW)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정형보고자료(2022. 12월말 기준)

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92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21년 3인 가족 기준 2,071,654원)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왔다.('22. 10월 중위 58% 이하 → '23. 1월 중위 60% 이하)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연령과 금액, 대상 등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12년부터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등의 신규급여를 도입, 추진하여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동양육비는 '07년까지 만 6세 미만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08년 만 8세, '09년 만 10세, '10년 만 12세, '17년 만 13세에 이어 '18년 만 14세 미만, '19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였다. '12년까지 8년 간 동결 지원되었던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13년부터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였으며 '15년에는 월 10만원, '17년 월 12만원, '18년 월 13만원, '19년부터는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중·고등학생에게 연 5만원의 학용품비 및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모·부가 양육하는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에게는 월 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6-④-4| 연도별 아동양육비 등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아동양육비	66,584	74,829	32,259	133,277	135,817	188,361	203,816
추가아동양육비	2,422	2,465	2,145	2,076	1,821	22,247	24,374
학용품비	30,573	23,267	16,755	12,332	10,831	9,176	9,291
생계비	276	270	251	145	118	90	112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12년부터 국가의 복지급여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을 의무화하였다. 지원기준 연령 초과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 전체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연령초과(만 18세 이상, 취학 시 만 22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구원을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4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이 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중인 경우 군복무 기간을 아동 연령에 가산하도록 하여 의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경우 채권 압류 등으로부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급여 수급계좌의 이용 근거를 마련(’14.7.22.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대상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21.4.21. 시행).

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기간 주거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07년 100개소에서 ’22년 121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2년에는 개보수 30개소, 기자재 구입 19개소, 임차보증금 지원 1개소, 증개축 2개소에 대하여 시설기능보강을 지원하였다. ’10년에 시설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치료 지원을 통해 가족생활의 안정과 조기 자립을 도모하고자 시설 입소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도입하였으며, ’22년에는 13,423건의 상담 및 치료 등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13년에는 자립준비금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하여 시설 입소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1년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한부모가족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시설 입소를 통한 주거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14년도에 미혼모자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듬해 미혼한부모가족 및 부자가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6년에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을 미혼한부모 및 부자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 확대하였다. '14년 6개 시·도에 57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22년까지 9년간 지원한 결과, 2022년 말 현재 전국 14개 시·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에 245호로 확대되었다.

|표 6-④-5|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23	122	125	123	124	124	122	121
모자가족 복지시설	48	48	48	47	47	47	46	46
부자가족 복지시설	4	4	4	4	3	3	3	3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59	59	62	61	64	65	64	63
일시지원시설	12	11	11	11	10	9	9	9

2. 한부모 자립 지원

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 일반적으로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 생계, 가사 부담 외에 학업 중단, 취업훈련 부족 등에 대한 어려움과 미혼으로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부정적 환경으로 건강한 성장 저해와 빈곤의 대물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년부터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1년 2인가구 1,852,847원)인 가구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학업단절 방지를 위해 연간 154만원 이내의 검정 고시비,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자립 활동 시 월 10만원의 자립 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 형성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14.7.22. 시행).

자립촉진수당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까지 지원대상을 확대(’18.1월 시행)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복지기준’ 고시 개정(’18.12월)을 통해 ’19년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20년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21.4.21.시행).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22.10월)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2년 2인가구 2,119,055원)로 상향하였다.

전국 62개소의 미혼모자복지시설을 통해 주거지원 및 출산 등 의료지원, 일정기간 자녀양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 미혼모·부자 가족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17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동 기관에서는 친자검사 및 의료지원과 분유·기저귀 등 현물지원,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정서적 지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6-④-6| 2022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구분 \ 지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	자립촉진 수당
지원액	월 35만원	연 154만원 이내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비고	-	-	학업 또는 취업활동자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22년 7월부터 청소년한 부모에게 필요한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수준 강화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15년 1월부터는 미혼모 가구가 생계 지원 등을 받고자 기초수급권자 자격을 신청할 경우,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 상태인 미혼모 가구에 대하여는 직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를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19년부터는 30세 미만 한부모가 기초수급권자 자격을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을 30세 이상 한부모까지 확대하였다.

나. 미혼모 등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강화

한부모가족은 사회의 오랜 편견과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내 약 3만 여명*의 미혼모·부는 편견과 낙인으로, 일상에서 차별과 불편을 겪고 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미혼모·부(27,245명) 중 미혼모 20,572명(75.5%), 미혼부 6,673명(24.5%)
* 한부모가족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 16% 내외('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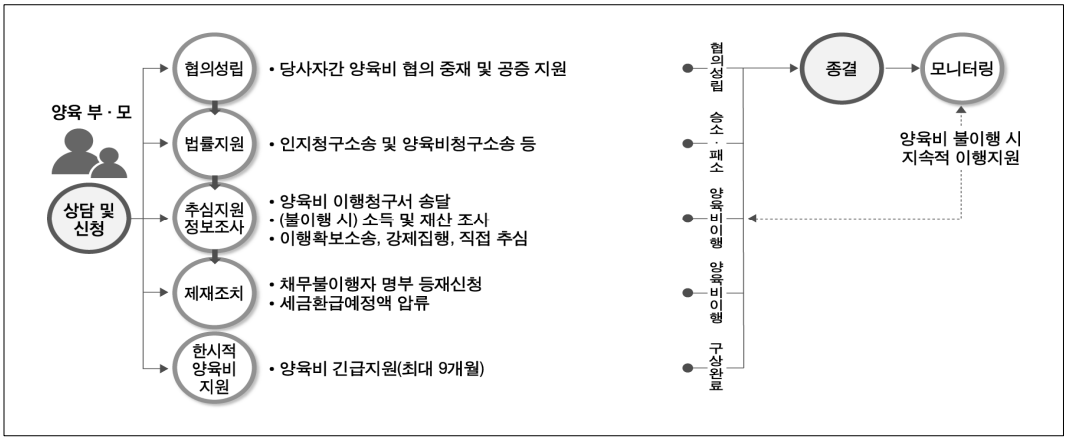
여성가족부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을 통해 2018년 처음으로 '한부모가족의 날(5. 10.)'을 제정하고, 한부모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불편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교육부와 협의하여 청소년 한부모 위탁교육기관 확대 및 선택권 확대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낙인효과 없이(비밀보장)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 사업담당 공무원 대상 일상 속 차별 및 인식개선 교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한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3.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78.7%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양육비 채권)가 없었고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는 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법정으로 결정된 양육비 채권금액보다 낮아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안정적인 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이 많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조치 등 한부모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14년 3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15년 3월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15년 3월 25일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양육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6-④-1| 양육비이행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

|표 6-④-7|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양육비 상담·신청	•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 •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한 신청서 접수
양육비 협의	• 당사자간 양육비 협의 중재 • 공정증서 작성 등 지원과 양육비이행지원 절차 안내
소득·재산 조사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소득·재산 파악
소송지원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 • 양육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
양육비 이행강제	•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채권 추심 지원 신청접수 •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 진행 및 추심
제재 조치 및 모니터링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의 세금환급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양육비채권자의 실지급상황 점검(모니터링) 후 미지급 상황 계속시 재추심 연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2년 한 해 동안 전화·온라인·방문 등을 통해 2만 8,630건의 상담을 제공했고, 양육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거나 합의를 이끌어낸 2,273건 가운데 1,343건, 약 283억 원의 양육비가 실제로 이행됐으며, 양육비 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누적 양육비 이행금액 1,395억 원을 달성했다.

또한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실시하여 '22년 1년간 한부모가족 468가구, 778명의 자녀들에게 1,560백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였다.

한편 자녀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양육비는 꼭 지급하여야 한다는 양육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 인식 개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및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4. 북한이탈여성 지원

'99년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상당수는 탈북 후 중국, 대만 등 제3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떠돌면서 감금, 폭행, 강제노동,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때 경험한 폭력으로 인해 북한이탈여성들은 신체적 질병 및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한국사회의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여성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표 6-④-8| 북한이탈여성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남 성	168	202	72	40	35
여 성	969	845	157	23	32
합 계	1,137	1,047	229	63	67
여성비율	85%	80.7%	68.6%	36.5%	47.8%

※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여성가족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매년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증진을 위한 내용과 함께 우리 사회의 남녀관계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09년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한 후 '10년부터는 북한이탈남성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11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하나센터까지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다. '12년부터는 북한이탈청소년 관련 대안학교를 통해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평등 및 교육 감수성이 높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나원·하나센터·청소년학교의 대면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교육 횟수를 줄이고 교육 내실화를 위한 강의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리플릿,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표 6-④-9| 연도별 교육 운영 실적

구 분		계	하나원 (여성)	하나원 (남성)	하나센터 교육	청소년학교
2018년	횟수(회)	104	13	11	58	20
	인원(명)	1,599	809	116	198	476
2019년	횟수(회)	101	14	13	67	7
	인원(명)	1,692	881	157	354	300
2020년	횟수(회)	41	7	10	21	3
	인원(명)	473	190	107	132	44
2021년	횟수(회)	42	4	3	26	9
	인원(명)	473	35	126	159	88
2022년	횟수(회)	46	6	6	18	11
	인원(명)	317	22	21	88	155

국내로 입국된 북한이탈여성 중 20~30대 탈북여성들의 대다수가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증언들을 볼 때, 이들의 피해 결과와 트라우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치유와 상담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여성들이 탈북 이후 경험한 성폭력·가정폭력·인신매매 등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 전담센터를 지정하여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하여 '13년 8개소에서 '14년 2개소가 추가되어 총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결합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문제를 잘 이해하고 상담 할 수 있도록 '12년부터 북한이탈여성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담원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동료상담원을 양성하고 있다.

|표 6-④-10| 연도별 동료상담원 양성 교육 현황

연 도	교육내용	교육수료인원(명)	교육시간(시간)
2017년	성폭력 동료상담원 교육	28	100
2018년	가정폭력 동료상담원 교육	28	100
2019년	가정폭력동료상담원교육	24	100
2020년	가정폭력동료상담원교육	25	100
2022년	가정폭력동료상담원교육	25	100

제 5 절

여성의 건강·안전 지원 강화

1.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가. 50인 미만 사업장 여성근로자 종사 현황

'22년 말 기준 전체사업장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14,898,502명 중 여성이 6,580,091명으로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성이 48.3%를 차지하고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 39.8%에 비해 8.5%p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표 6-⑤-1| 사업장 규모별 여성근로자 점유율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근로자수	계	총계	13,432,497	13,864,138	14,111,690	14,550,033	14,898,502
		남	7,714,821 (57.4%)	7,874,174 (56.8%)	7,962,147 (56.4%)	8,157,629 (56.1%)	8,318,411 (55.8%)
		여	5,717,676 (42.6%)	5,989,964 (43.2%)	6,149,543 (43.6%)	6,392,404 (43.9%)	6,580,091 (44.2%)
	50인 미만	소계	6,850,525	7,078,884	7,217,219	7,520,621	7,676,347
		남	3,646,136 (53.2%)	3,711,110 (52.4%)	3,769,326 (52.2%)	3,898,189 (51.8%)	3,967,773 (51.7%)
		여	3,204,389 (46.8%)	3,367,774 (47.6%)	3,447,893 (47.8%)	3,622,412 (48.2%)	3,708,574 (48.3%)
	50인 이상	소계	6,581,972	6,785,254	6,894,471	7,029,432	7,222,155
		남	4,068,685 (61.8%)	4,163,064 (61.4%)	4,192,821 (60.8%)	4,259,440 (60.6%)	4,350,638 (60.2%)
		여	2,513,287 (38.2%)	2,622,190 (38.6%)	2,701,650 (39.2%)	2,769,992 (39.4%)	2,871,517 (39.8%)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연도 12월말 기준)

나.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여성근로자의 직업건강서비스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여성근로자 등 사업장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 기초직업건강서비스[10]를 제공하여 업무상질병예방 및 건강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전국에 23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다.

|표 6-⑤-2|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23개소) 설치 현황

연 번	지 역	센터명	운영기관	설치년도
1	경기 시흥시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년
2	인천광역시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	
3	광주광역시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사)직업건강협회	
4	대구광역시	대구 근로자건강센터	(사)직업건강협회	2012년
5	경남 창원시	경남 근로자건강센터	㈜터직업환경의학센터	
6	서울특별시	서울 근로자건강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년
7	경기 성남시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8	울산광역시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9	경기 부천시	부천 근로자건강센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충남 천안시	충남 근로자건강센터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1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2014년
12	경북 구미시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	구미강동병원	
13	부산광역시	부산 근로자건강센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4	전남 여수시	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	
15	대전광역시	대전 근로자건강센터	(사)직업건강협회	

10) 의사, 간호사, 상담심리사 등 전문가를 통한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연 번	지 역	센터명	운영기관	설치년도
16	서울특별시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년
17	경북 경산시	경산 근로자건강센터	(사)직업건강협회	
18	전북 전주시	전주 근로자건강센터	(사)직업건강협회	
19	강원 원주시	강원 근로자건강센터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20	제주 제주시	제주 근로자건강센터	제주 한라병원	
21	경기 양주시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년
22	충북 청주시	충북 근로자건강센터	(사)대한산업보건협회	2020년
23	전남 영암군	전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또한 ’22년 기준으로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한 여성근로자는 전체 이용 근로자(97,306명)의 30.4%(29,533명)로 집계되었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감정노동, 고객응대, 돌봄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관련 피해사고로 인한 직업트라우마 예방·관리를 위하여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전국 1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가. 분만 취약지역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자 분만 취약지역의 도출 기준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30% 미만)과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접근성(1시간 이내)을 고려하여 총 30개의 A등급 분만취약지, 17개의 B등급 분만취약지, C등급 61개의 분만취약지를 도출하였다.

'22년도에는 총 51개 지역 분만산부인과에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 지원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06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였고, '12년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근거 법령을 마련하였다. '13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5년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도입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들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평가 결과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19.3.5.일부터 공개하도록 하였다.

높은 현장 수요에 비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소득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21년에는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였다.

* ('21) 이용자 125,675명, 제공인력 18,757명, 제공기관 1,083개소 →
 ('22) 이용자 132,917명, 제공인력 19,261명, 제공기관 1,103개소

|표 6-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조정

구분	2009~2014년	2015년	2016~2018년	2019년	2020년	2021~2022년
기본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 지원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등 지원 가능	각 시도별 대상 및 소득기준 통일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분만 취약지 산모)	기존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추가	기존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추가	기존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추가	예외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요건 없음

한편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크고, 임신 중 접종 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도 보호 효과가 있어 2019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임신주수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라. 산후조리원 이용자 권리 보호

'97년부터 자유업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이 감염·안전 사고 발생으로 이에 대한 국가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2006년 「모자보건법」상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산후조리원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전문인력·시설을 갖추어 신고

토록 하고, 종사자 건강검진 및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감염(의심)자 발생 시 이송 및 이송보고 등의 준수의무를 두고 있다. '15년에는 모자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으며,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및 환불기준을 공개토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였다.

산후조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 '15년 10월에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16년에는 그 후속 조치로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였으며,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주기 단축(2년 → 1년) 및 건강진단 항목에 잠복결핵을 추가하였다. 이 밖에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토록 하였다. '18년 제1차 산후조리실태조사에 이어 '21년 제2차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계청과 함께 시행하였으며, 특히 비용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용자의 정책적 요구를 확인하였다.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년 1월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질병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 등 근무 제한조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를 산후조리업자에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 모자보건법령을 개정·공포하여, '20년 1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여 '20년부터 산후조리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21년에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온라인 교육용 컨텐츠(8종)을 개발하였다.

감염·안전 등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제도 도입 근거 법령을 '15년 12월 마련했으며, 현장의 평가수용도 향상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19년부터 매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1년에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21년에는 「산후조리원 표준서비스 기준 마련 연구」을 통해 적정한 산후조리원 서비스 수준 및 이용 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20년에는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 및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고,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종사자 교육에 활용하였다.

또한 '21년부터 매주 코로나19 방역사항 점검을 하도록 하였으며, 산후조리원 종사자 백신 접종 독려, 종사자 및 이용자 행동 수칙 배포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기여하였다.

'22년에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이용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마. 여성(분만,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안전한 분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취약지의 분만 산부인과 51개소의 지역을 지원하였고,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통합적 치료를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총 20개소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19)6개소 → ('20)10개소 → ('21)14개소로 확대 지정·운영하고 지역센터별 여성장애인 건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여성장애인단체, 산부인과 학회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여성

장애인 산모교실, 건강클리닉, 당사자 교육(14개 센터), 의료인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19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장애 여성이 궁금해 하는 임신·출산·육아 정보 등을 Q&A 형태로 개발한 임신·출산 매뉴얼 “40주의 우주”를 발간하였으며, 42개국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 등 생애 전반의 건강에 대한 정보와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을 번역·출간하였다. ’21년에는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였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기관의 보건의료종사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매뉴얼’ 발간도 하였다.

’21년에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를 도입하여 8개소를 지정하고 시설·인력·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2년에는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을 포함하여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이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2022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2023년 8월 인쇄
2023년 8월 발행

발행인 : **김 현 숙**
발행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149
FAX / 02-2100-6482

인쇄처 : 중앙기획
전화 / 02-736-2866~7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748-10